

발간등록번호

11-1541000-001180-01

국내 농수축산물 민간표준 실태 및 SPS 위원회 논의동향

Study on Domestic Private Standards and Consideration of SPS Committee

2011.12

주관연구기관 : 한양여자대학

농림수산식품부

제 출 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귀 하

이 보고서를 “국내 농수축산물 민간표준 실태 및 SPS 위원회 논의동향“과제의 연구결과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1.12.26.

주관연구기관명 : 한양여자대학

주관연구책임자 : 신성균

연 구 원 : 권순형

연 구 원 : 김상연

연 구 원 : 이종경

연 구 원 : 윤장호

<목 차>

제 I 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3
2. 연구 내용	6

제 II 장 우리나라 현황

1. 민간표준	9
1.1 대상 업체 선정 및 조사 방법	9
1.2 업소 형태별 민간표준	10
1.3 외국의 민간표준	21
1.4 기타 민간표준	27
2. 법령에 의한 표준	28
2.1 축산법	28
2.2 농산물품질관리법	29
2.3 수산물품질관리법	35
2.4 축산물위생관리법 및 식품위생법	36
3. 민간표준과 정부 규정의 비교	39
3.1 민간표준과 정부 기준 비교	39
3.2 민간표준의 영향	41
4. 농식품의 수출입	43

제 III 장 민간표준의 국제 동향

1. 표준 등의 정의	45
1.1 WTO협정	45
1.2 국제표준화기구의 정의	49
1.3 기타 국제기구 정의	55
1.4 국가별 정의	61
1.5 사전적 정의	66
2. WTO SPS위원회 논의	68
2.1 개요	68
2.2 회의별 논의	69
2.3 각국의 및 국제기구 입장	78

제 IV 장 시사점 및 대응방안

1. 시사점	101
2. 대응방안	103
2.1 WTO SPS위원회에서의 대응방안	103
2.2 민간 표준의 정의	103
2.3 WTO SPS위원회에서의 논의 대응방안	106

참고 자료	109
-------------	-----

첨부 1. 농림축산물의 수출입 현황	113
---------------------------	-----

<표 목차>

표 1 각종 수입 농산물의 규격 항목	10
표 2 각종 국내 농산물의 규격 항목	11
표 3 각종 국내 수산물의 규격 항목	11
표 4 각종 축산물의 규격 항목	12
표 5 수산물 규격	12
표 6 유럽연합 회원국의 민간표준 사례	21
표 7 유통단계별 유럽의 민간표준	22
표 8 각종 농산물의 등급규격 항목	30
표 9 수산물의 품질인증 품목	35
표 10 수산물의 표준 항목(등급 규격)	35
표 11 농산물 민간표준과 정부기준 내역 비교	40
표 12 우리나라의 정부기준과 차이가 있는 민간표준 현황 요약	41
표 13 민간표준의 장단점	42
표 14 개발도상국 입장에서 민간표준이 야기하는 문제점	42
표 15 농식품의 3년간 수출입 동향	43
표 16 5년간 수출상위 품목의 수출대비 수입액 비율	43
표 17 5년간 수입상위 품목의 수출대비 수입액 비율	44
표 18 Codex 표준과 중요 민간 식품안전표준간의 주요 사안 비교	56
표 19 표준의 형식	57
표 20 표준 제정단계와 기능	57
표 21 식품품질 표시에서의 민간과 공공표준의 역할	60
표 22 표준의 패러다임 비교	61
표 23 표준과 기술규정의 비교	64
표 24 민간표준에 대하여 SPS위원회에서의 논의 요약	69
표 25 각 국가별 민간표준 관련 작업에 대한 입장	69
표 26 민간표준에 대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입장	78

<그림 목차>

그림 1 유럽연합의 식품안전체제 모식도	23
그림 2 표준규격의 제·개정 절차	32

제 I 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WTO 출범 이후 구성된 WTO/SPS 위원회는 SPS협정이 실질적으로 이행되도록 그간 모니터링절차, 일관성·투명성·지역화 등의 이행지침을 마련함.
 - SPS위원회는 현재 분쟁 전 단계에서 회원국간 협의를 촉진하기 위한 임시 협의/협상절차 및 정부가 아닌 민간차원에서 제정·운용하는 표준에 대한 대처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음.

- SPS 협정(제13조)은 회원국이 자국 영토내의 비정부기구(non-governmental entities)가 협정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이용 가능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WTO SPS위원회는 SPS협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연 3회 개최하고 있으며, 주요 의제 중 회원국간에 SPS협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논의하는 특정무역우려사안(Specific Trade Concern)이 있음.

- '05.6월 제33차 WTO/SPS 정례회의에서 민간표준(private standard) 문제가 처음 제기됨¹⁾.
 - 세인트빈센트(Saint Vincent and the Grenadines)는 EurepGAP 인증 프로그램이 영국으로의 바나나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주장함.
 - 이에 대해 동 회의에서 유럽연합 대표는 EurepGAP이 민간표준임을 밝히면서 민간과 협의할 것을 권고함.
 - 유럽에서 농수축산물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수입자가 EurepGAP 인증을 요구함에 따라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 지속적인 논의가 진행됨.

- EurepGAP(Euro-Retailer Produce Working Group Good Agricultural Practices) 인증²⁾
 - 1997년 유럽소매인연합에 속한 소매인들이 제품안전, 환경과 노동 기준에 대한 소비자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시작하여 2007년 Global GAP로 명칭 변경함.
 - 농산물 인증(certification)에 대한 자발적(voluntary) 기준으로,
 - 사료나 종자, 재배방식부터 농장을 떠날 때까지 전 과정을 검증할 뿐만 아니라 작업자의 건강, 복지, 오염 관리 등이 포함됨.
 - 통합농장보증기준(integrated farm assurance standard), 배합사료제조기준(compound feed manufacturer standard), 식물종자기준(plant propagation

material standard) 및 사회적 관행에 대한 위험평가(risk assessment on social practice) 등으로 이루어짐.

○ 이러한 논의에 대하여 '07.1. WTO 사무국은 민간표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담은 '민간표준과 SPS협정'에 관한 문건 작성 배포(G/SPS/GEN/746)³⁾.

- 민간표준의 개발 배경으로 다음의 사안을 지적함.
 - 식품안전에 대한 높은 관심과 규제기관에 대한 신뢰문제
 - 식품위해 방지노력을 보여야 하는 기업의 의무
 - 공급선의 세계화
 - 슈퍼마켓 및 식품기업의 국제적 확장
- 민간표준은 개별기업(individual firm schemes), 국내협회(collective national schemes) 및 국제기구(collective international schemes)에 의하여 정해진 것으로 보고 약 400여종 확인을 보고함.
- 민간표준의 특징으로
 - 법률적 강제사안은 아니나 민간표준 준수여부는 공급자 선택사항이나, 산업계내에서 동향이 되었을 때 공급자의 선택은 제한됨.
 - 민간표준의 자발적 준수여부가 부합 또는 시장에서의 퇴출을 결정하게 되어 '공식적(official)' 요건과의 차이가 불분명해짐.
 - 소수의 식품 소매상이 식품판매의 높은 비율을 차지할 때, 개별 또는 연합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공급자의 선택은 심각하게 축소될 수 있음
 - 소매상의 표준은 공급체인에 있는 모든 산업계의 사실상(de facto)의 표준으로 적용될 수도 있음
 - 자율적 표준의 부합 여부는 표준에의 부합 또는 시장으로부터의 퇴출
 - 이러한 경우, 자율적인 민간표준과 강제적인 "공식적" 또는 "공공"의 요건(requirement)간의 차이는 불분명해짐.
- 민간표준의 장단점
 - 장점: 교역 창출, 식품안전 위해 가능성이 경감될 수 있음.
 - 단점: 개발도상국 공급자가 민간표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어려움
- 민간 표준과 관련된 우려사항

민간표준의 내용에 관한 우려	민간표준의 준수와 관련된 우려
시장내 또는 시장간에 여러 민간표준 존재	제3자 인증 비용(개발도상국의 중소기업과 농장)
민간표준과 공식 SPS 조치의 구분이 불분명	일부 민간표준에서 특정인증기구만을 이용하는 조건
국제표준제정기구와 민간표준과의 관계	동등성 결핍으로 반복된 인증검사
일부 가공, 생산 방법(PPM)에 대한 과학적 정당성	개발도상국이 발행한 인증서 불인정

- 민간표준과 SPS 협정에 대하여
 - 민간표준이 WTO/SPS 협정의 범위에 포함되는 SPS 조치인지 결정된 바 없음.

- 민간표준에 부합되는지를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증조건이 제8조 및 부속서 C(통제, 검사 및 승인)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결정된 바 없음.
- 제13조에서 회원국은 '비정부기구(non-governmental entities)가 이 협정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명확치 않은 부분이 존재함.
- ISO 22000을 바탕으로 국가기준을 개발한 경우 민간표준과 공식표준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있음.
- EurepGAP 기준은 식품안전 뿐만 아니라 작업자 건강, 안전, 복지, 쓰레기 및 오염 관리 사항도 포함하여 민간표준은 WTO 협정문과 관련되어 있을 수 있음.
- SPS 위원회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안으로 다음을 지적함.
 - SPS 협정하의 국제기준 제정 기구와 민간표준 제정기구의 관계
 - 비정부단체에 의한 부합(compliance)을 보증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
 - 타 WTO협정·위원회와 민간표준과의 관계
 - 동등성과 민간표준
- '08.10월 WTO/SPS 위원회에서 SPS 관련 민간표준에 관한 작업반 구성 결정.
 - 특별작업반은 이와 관련 설문서 송부, 설문에 대한 답변서 검토 및 향후 조치를 포함한 보고서 작성 3단계 연구 실시함4).
- '09.6월 작업반은 답변서를 취합·정리하여 보고(G/SPS/GEN/932)⁵⁾.
 - 22개 회원국에서 제출한 40개의 답변서 내용을 정리
 - 민간표준으로 영향받는 수출 품목: 신선 과일·채소, 소고기, 닭고기
 - 주요 수출 시장: 호주, 캐나다, EU, 미국, 일본 등
 - 민간표준을 요구하는 기업형태: 주로 슈퍼, 하이퍼마켓(테스코, 월마트 등)
 - 적용되는 민간표준: GLOBALGAP, HACCP, ISO 9000 등
 - 민간표준 내용: 식품안전 관련 사항(2/3이상), 동식물 위생, 사회문제 등
 - 관련 국제기구: Codex, OIE가 많이 언급됨
 - 국제기준과 동등한지 여부: 더 낮은 MRL 적용 등 2/3이상이 민간표준이 더 엄격 하다고 답변
 - 무역에의 영향: 민간표준 준수가 수출 전제조건으로 인식되어, 이를 준수할 수 없는 농가나 제조업체는 시장접근기회를 상실함.
- '09.10월 사무국에서 SPS위원회 및/또는 회원국이 취할 작업(action)에 관한 문건 작성 배포(G/SPS/W/247).
 - ① 민간 SPS 기준의 정의 마련
 - ② 타 국제기구와의 협력,

- ③ TBT 위원회와 공동작업반 구성
 - ④ 민간표준과 관련된 기구와 정기회의
 - ⑤ 국제기구간 민간표준 관련 진전사항 교류
 - ⑥ 민간표준관련 투명성 그리고/또는 모니터링 체계 개발
 - ⑦ SPS 협정이 민간표준에 적용되는지 검토
 - ⑧ SPS 협정 제13조 이행 지침 개발
 - ⑨ Code of Good Practice 개발
 - ⑩ 민간표준 기구와 정기회의
 - ⑪ 회원국이 민간표준 기구와 의견 교환하는 지침 마련
- '10.6, 10월 SPS위원회에서 사무국의 문건에 대한 논의 결과 '11.3월 SPS 정례회의에서 우선 수행할 5가지 작업을 채택함(G/SPS/55).
 - ① 민간 SPS 기준의 정의 마련 및 논의 한정
 - ② 타 국제기구에게 민간표준 검토사항 통보
 - ③ 타 WTO 위원회 논의사항 제공
 - ④ 민간표준과 관련된 기구와 의견교환 권고
 - ⑤ 국제기구와의 협력 가능성 모색
 - 그러나, 구체적인 논의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제기됨.
 - 아직 민간표준에 대한 국내 실태 및 교역에 미치는 영향 등이 조사된 바 없으며,
 - SPS 위원회에서 고려중인 민간표준과 관련된 특정무역현안을 논의 여부와 이행에 관한 지침 또는 투명성 메커니즘을 개발 여부 등은 국내외 교역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이에 따라 SPS 관련 민간표준의 국내 실태 및 교역에 미치는 영향, 국제기구 및 회원국의 논의 동향 등을 파악하여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2. 연구 내용

- 국내 농수축산물 민간표준 실태 파악
 - 국내 대형유통업체에서 국내산 및 수입산 농수축산물에 적용하는 민간표준의 실태 파악, 분석
- 외국 농수축산물 민간표준 실태 파악
 - 국내산 농수축산물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적용되는 외국의 민간표준 자료 분석

- 민간표준과 공식(official)표준의 비교
 - 민간표준의 상세기준 파악 분석
 - 민간표준과 관련된 공식표준과의 비교 분석

- 민간표준의 영향 분석
 - 민간표준 적용에 따른 교역 또는 유통에의 영향 분석

- 민간표준 관련 국제 논의 동향 분석
 - SPS 위원회 등 국제기구에서의 민간표준 관련 논의 동향 분석 및 대응방안 제안
 - 국내 민간표준 마련 기구와의 의견교환 방법 제안

제Ⅱ장 우리나라 현황

1. 민간표준

1.1 대상 업체 선정 및 조사 방법

- 대상 업체 선정은 기존 소매 업체와 도매 업체를 중심으로 나누고 소매 업체는 백화점, 대형 할인 마트중 대표적인 업체 두 개씩을 선정하여 방문 또는 전화조사 하였으며, 도매 업체는 대형 도매 센터에 입점해 있는 농수축산물의 대표업체를 선정하여 방문조사하고 특히 농산물의 경우 생산업체 조합에서 수출기준을 조사하였고 aT센터에 있는 여러 수출입 단체를 방문하여 조사함.

- 백화점
 -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AK백화점에 전화로 문의하여 1개 백화점과 자문회의를 갖고 1개 백화점은 전화로만 자료를 제공. 나머지는 대외비로 밝히기를 꺼림.

- 대형 할인 마트 및 유통업체
 - E마트, 홈플러스(Tesco합작), 코스트코, 훼밀리마트, GS25와 전화로 자료 요청하여, 3개 업체와 자문회의를 갖고 나머지 업체는 전화로 통화하였으나 법률에 의한 기준만으로 기준을 정하고 있다고만 함.

- 대형 도매 센터
 -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 센터와 황성 축협에 전화로 문의하여 대표업체로 서울청과주식회사, 대아청과주식회사, 수협중앙회, 강동수산주식회사, 황성 축협에 자료 요청하여 총 5개 업체와 6차례 자문회의를 갖고 4군데서 자료를 얻고 1군데는 농산물품질관리원의 기준을 따른다 함.

- 수출입 단체 및 관련단체
 - aT센터내 관련 단체를 전화로 문의하여 선정된 aT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농수식품무역협회, 한국수산무역협회, 한국농림식품수출입조합에 방문하여 7회의 자문회의를 가지고 자료를 입수함.
 - 인천 검역소내 식품검사소를 방문하여 2회 자문회의를 갖고 자료를 얻었으나 대부분 법률에 의한 식품검사에 포함됨.

1.2 업소 형태별 민간표준

1.2.1 백화점

- 대부분 신선유통식품은 1등급을 사용함. 자세한 내용은 대외비로 밝히기를 꺼림.
- 수입육류는 수입유통 이력제에 의해 관리되고 있음.
 - 호주산 육우의 경우 마블링 정도에 따라 등급 No.1~No.9의 육류가 포장육 형태로 수입되고 있으며, 숫자가 높을수록 마블링이 좋아 고가에 판매되나 국내에선 일반적으로 No.2~No.3 등급이 수입되어 유통되고 있음
 - 수입소의 가격은 목초로 사육하다, 수출전 곡물로 사육하는 일수에 따라 100일, 200일, 300일로 나누어 길게 곡물을 먹인 소가 풀냄새가 없어 좋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음.
 - 수입소 자체가 벌크로 수입되지 않고 포장상태로 들어오므로 일반적인 품종과 판매자의 브랜드에 의존하고 있음.
- 국내산 육류의 경우는 한우는 국가등급판정 1등급이상 판정 되어진 육우나 돼지를 사용하며 돈육이나 계육은 국산만을 이용하고 있음
 - 대부분 유명 우수 브랜드나 유통업체에서 구입하여 판매함.
 - 한우도 마찬가지로 횡성이나 대관령등지의 우수 브랜드나 지역 도협회와 계약을 맺고 친환경 또는 특화되어 인지도 높은 브랜드에서 구입하여 판매하며 일반적으로 자체 수의사가 규정상 안전 센터에서 위생검사만을 실시하고 있음.

1.2.2 대형할인마트(대형유통업체)

- 품목별 규정 항목은 다음과 같음.
 - 수입과일

표 1 각종 수입 농산물의 규격 항목

품 목	항 목	비 고
바나나	부패, 표시사항/포장파손, 냉해/품온, 중량, 신선도, 변색, 상해과, 병/해충 및 생리장해, 열과, 미/과숙과	
체리	부패, 표시사항/포장파손, 냉해/품온, 중량, 과형, 신선도, 변색, 상해과, 병/해충 및 생리장해, 열과, 미/과숙과	
메론	부패, 표시사항/포장파손, 냉해/품온, 중량, 과형, 변색, 무른과, 상해과, 병/해충 및 생리장해, 열과	
파인애플	부패, 표시사항/포장파손, 냉해/품온, 중량, 과형, 변색, 무른과, 상해과, 병/해충 및 생리장해, 열과, 미/과숙과	
오렌지	부패, 표시사항/포장파손, 냉해/품온, 중량, 과형, 변색, 무른과, 상해과, 병/해충 및 생리장해, 열과	
망고	부패, 표시사항/포장파손, 냉해/품온, 중량, 과형, 신선도, 변색, 무른과, 상해과, 병/해충 및 생리장해, 열과, 미/과숙과	

- 국내과일

표 2 각종 국내 농산물의 규격 항목

품 목	항 목	비 고
과실류		
사과	부패, 표시사항/포장파손, 냉해/품온, 중량, 과형, 신선도, 변색, 무른과, 상해과, 병/해충 및 생리장해, 열과, 미/과숙과	
배	부패/짓무름, 표시사항/포장파손, 냉해/품온, 중량, 과형, 신선도, 변색, 무른과, 상해과, 병/해충 및 생리장해, 열과, 미/과숙과	
수박	부패/짓무름, 표시사항/포장파손, 냉해/품온, 중량, 과형, 신선도, 변색, 무른과, 상해과, 병/해충 및 생리장해, 열과, 미/과숙과	
머스크메론	부패, 표시사항/포장파손, 냉해/품온, 중량, 과형, 신선도, 변색, 무른과, 상해과, 병/해충 및 생리장해, 열과, 미/과숙과	
딸기	부패, 표시사항/포장파손, 냉해/품온, 중량, 과형, 신선도, 변색, 상해과, 병/해충, 미/과숙과	
참다래	부패, 표시사항/포장파손, 냉해/품온, 중량, 과형, 신선도, 변색, 무른과, 상해과, 병/해충 및 생리장해, 열과, 미/과숙과	
홍시	부패/짓무름, 표시사항/포장파손, 냉해/품온, 중량, 과형, 신선도, 변색, 무른과, 상해과, 병/해충 및 생리장해, 열과, 미/과숙과	
복숭아	부패, 표시사항/포장파손, 냉해, 중량, 과형, 신선도, 변색, 무른과, 상해과, 병/해충 및 생리장해, 열과, 미/과숙과	
채소류		
감자	부패/짓무름, 표시사항/포장파손, 냉해/품온, 중량/규격, 과형, 신선도, 변색, 무른과, 상처/상해, 병충해/생리장애, 발아/개화, 이물질	
고추	부패/짓무름, 표시사항/포장파손, 냉해/품온, 중량/규격, 과형, 신선도, 변색, 무른과, 상처/상해, 병충해/생리장애, 발아/개화, 이물질	
호박	부패/짓무름, 표시사항/포장파손, 냉해/품온, 중량/규격, 과형, 신선도, 변색, 무른과, 상처/상해, 병충해/생리장애, 발아/개화, 이물질	
고구마	부패/짓무름, 표시사항/포장파손, 냉해/품온, 중량/규격, 과형, 신선도, 변색, 무른과, 상처/상해, 병충해/생리장애, 발아/개화, 이물질	
당근	부패/짓무름, 표시사항/포장파손, 냉해/품온, 중량/규격, 과형, 신선도, 변색, 무른과, 상처/상해, 병충해/생리장애, 발아/개화, 이물질	
대파	부패/짓무름, 표시사항/포장파손, 냉해/품온, 중량/규격, 과형, 신선도, 변색, 무른과, 상처/상해, 병충해/생리장애, 발아/개화, 이물질	
브로콜리	부패/짓무름, 냉해/품온, 중량/규격, 신선도, 변색, 무른과, 병충해/생리장애, 발아/개화, 이물질	
팽이버섯	부패/짓무름, 표시사항/포장파손, 냉해/품온, 중량/규격, 과형, 신선도, 변색, 상처/상해, 병충해/생리장애, 이물질	
배추	부패/짓무름, 표시사항/포장파손, 냉해/품온, 중량/규격, 신선도, 변색, 상처/상해, 병충해/생리장애, 발아/개화, 이물질	
시금치	부패/짓무름, 표시사항/포장파손, 냉해/품온, 중량/규격, 신선도, 변색, 무른과, 상처/상해, 병충해/생리장애, 이물질	
양파	부패/짓무름, 표시사항/포장파손, 냉해/품온, 중량/규격, 과형, 신선도, 변색, 무른과, 상처/상해, 병충해/생리장애, 발아/개화, 이물질	

- 수산물

표 3 각종 국내 수산물의 규격 항목

품 목	항 목	비 고
굴	포장상태, 이물질, 입고기준일, 표시사항, 관능(변색), 손상, 빙장/냉동, 무름, 중량, 이취	
냉동낙지	건조상태(곰팡이), 포장상태, 이물질, 입고기준일, 표시사항, 관능(변색), 손상, 빙장/냉동, 드립, 무름, 중량, 이취	
홍합살	건조상태(곰팡이), 포장상태, 이물질, 입고기준일, 표시사항, 관능(변색), 손상, 빙장/냉	

품 목	항 목	비 고
	동, 드립, 무름, 중량, 이취, 특이사항	
갈치	건조상태(공팡이), 포장상태, 이물질, 입고기준일, 표시사항, 관능(변색), 손상, 빙장/냉동, 드립, 무름, 중량, 이취	
바지락	포장상태, 이물질, 입고기준일, 표시사항, 관능(변색), 손상, 빙장/냉동, 중량, 이취	
피홍합	포장상태, 이물질, 입고기준일, 표시사항, 관능(변색), 손상, 빙장/냉동, 중량, 이취	
삼치	건조상태(공팡이), 포장상태, 이물질, 입고기준일, 표시사항, 관능(변색), 손상, 빙장/냉동, 드립, 무름, 중량, 이취	

- 축산물

표 4 각종 축산물의 규격 항목

품 목	항 목	비 고
삼겹살	품온, 포장상태, 입고기준일, 상품파손, 표시사항, 성에, 이물질, 드립, 중량/규격, 변색, 이취, 작업상태, 원산지	
등갈비-돈육	품온, 포장상태, 입고기준일, 상품파손, 표시사항, 성에, 이물질, 드립, 중량/규격, 변색, 이취, 작업상태, 원산지	
수입육-차돌백이	품온, 포장상태, 입고기준일, 상품파손, 표시사항, 성에, 이물질, 드립, 중량/규격, 변색, 이취, 작업상태, 원산지	
안심-우육	품온, 포장상태, 입고기준일, 상품파손, 표시사항, 성에, 이물질, 드립, 중량/규격, 변색, 이취, 작업상태, 원산지	
계육	품온, 포장상태, 입고기준일, 상품파손, 표시사항, 성에, 이물질, 드립, 중량/규격, 변색, 이취, 작업상태	

1.2.3 농수산물 도매시장

○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품목별 규정 요건은 다음과 같음.

- 농산물

과실류(수입)

- 바나나; 4~6발/13kg
- 오렌지; 56과, 72과, 88과/15kg
- 파인애플; 5수, 6수, 7수/12kg
- 포도; XL--9송이, L--9송이
- 키위(그린키위); 99과, 100과/10kg
- 레몬; 115과/15kg, 140과/18kg
- 자몽; 115과/15kg, 140과/18kg
- 체리; 30~40/5kg
- 망고; 10, 12, 14/5kg
- 아보카도; 48/10kg

야채류

- 배추; 3포기 포장단위, 43~48/7~8kg/여름, 48~52/10kg/가을
- 무; 9~11개, 12~15개/18~20kg(8개 이하, 15개 이상 덜 좋다)
- 양배추; 43~45/8kg(우수)

- 수산물(수협에서 조사된 수산물 규격 -수입, 국내산)

표 5 수산물 규격

구분 ¹⁾	어종명	원산지	규격	단위 ²⁾	비 고(박스당 미수)
활어	참돔	국내, 일본	미당 중량	가구	미당중량, 중량이 클수록 가격↑
활어	감성돔	국내, 중국	미당 중량	가구	미당중량, 중량이 클수록 가격↑
활어	납치(광어)	국내, 제주	미당 중량	가구	미당중량, 중량이 클수록 가격↑
활어	놀래기	국내, 중국	미당 중량	가구	미당중량, 중량이 클수록 가격↑
활어	농어	중국	미당 중량	가구	미당중량, 중량이 클수록 가격↑
활어	능성어	국내, 중국	미당 중량	가구	미당중량, 중량이 클수록 가격↑
활어	잠성어	국내, 중국	미당 중량	가구	미당중량, 중량이 클수록 가격↑
활어	볼락(우럭)	국내	미당 중량	가구	미당중량, 중량이 클수록 가격↑
활어	다금바리	국내	미당 중량	가구	미당중량, 중량이 클수록 가격↑
활어	도다리	국내	미당 중량	가구	미당중량, 중량이 클수록 가격↑
활어	민물돔	국내	미당 중량	가구	미당중량, 중량이 클수록 가격↑
활어	방어	국내	미당 중량	가구	미당중량, 중량이 클수록 가격↑
활어	송어	국내	미당 중량	가구	미당중량, 중량이 클수록 가격↑
활어	전어	국내	kg	가구	kg
활어	뱅장어	국내	kg	가구	kg 당 미수
활어	붕장어	국내	kg	가구	kg
활어	오징어	국내	kg	가구	미당중량, 중량이 클수록 가격↑
활어	우렁쉥이	국내, 일본	kg	자루	
활어	전복	완도, 고흥	10kg	가구	
활어	낙지	국내, 중국	3kg	자루	
활어	꾸꾸미	중국	3kg	자루	
선어	가자미	목포, 강원, 일본	4, 10kg	S/P	
선어	간재미	국내, 중국, 일본	4, 10kg	S/P	
선어	갈치	국내	4,5kg	S/P	
선어	고등어	경남 부산	12kg	S/P	대품 22미 이하, 중품 35미 이하
선어	꽁치	강원, 일본	10kg	S/P	미수
선어	대구	서산, 일본	10kg	S/P	
선어	명태	일본	12kg	S/P	
선어	방어	국내		S/P	
선어	병어	목포, 신안	5,10kg	C/S,S/P	
선어	삼치	목포, 경남	8kg	S/P	
선어	아귀	목포, 무안	10kg	C/S,S/P	
선어	오징어	강원, 서해안	6,8kg	S/P	
선어	은어(도루묵)	강원	3kg	C/S,S/P	
선어	임연수어(새치)	강원		S/P	
선어	참조기	목포, 제주	10kg	C/S,S/P	
냉동	가리비	중국, 베트남	3~4kg	C/T	
냉동	가오리	러시아, 미국, 아르헨티나 등	10,12,15,18kg	C/T	
냉동	가자미	미국, 러시아, 중국	7~9, 15,18kg	지대	L, M, S, 드레스
냉동	갈치	국내, 원양, 중국, 인도	8~10, 24kg	C/T	300/400, 400/500, 250/300, 500/700 등
냉동	절단계	중국	6kg	C/T	2L, L, M
냉동	고등어	국내, 중국, 노르웨이 등	10,20,22,25kg	C/T	수입: 300/400,500/700,400/600, 국내: 대, 중
냉동	골뱅이	국내, 캐나다	14kg	C/T	
냉동	꽁치	원양, 대만	10, 9.5kg	C/T	대만: 특, 1번, 2번; 원양: 3L, 2L, L
냉동	낙지	중국	5,10kg	C/T	3/4미, 5/6미
냉동	날치알	수입, 원양	15~16kg	C/T	
냉동	노가리	러시아	10kg	C/T	
냉동	눈볼대(적어)	원양, 러시아	10, 18~24kg	지대	
냉동	다랑어	원양산		C/T	
냉동	대구	미국, 러시아	18~22kg	지대	L, M, S
냉동	도루묵	북한	20kg	C/T	

구분 ¹⁾	어종명	원산지	규격	단위 ²⁾	비 고(박스당 미수)
냉동	명태	원양, 러시아	21.5kg	지대	3통 50미, 4통 18미, 5통 24미, 6통 26~28미, 7통 30~32미, 8통 34~36미, 9통 38~40미
냉동	명태알	중국, 미국, 러시아	23kg	C/T	
냉동	명태포	러시아	10, 7.5kg	C/T	
냉동	문어	중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6, 10~15kg	C/T	
냉동	병어	국내, 중국	10,15,1618kg	C/T	
냉동	부세	중국	4.2kg	C/T	200/300, 300,400, 400/500
냉동	삼치	국내	10, 20kg	C/T	2단 20kg, 3단 20kg, 2단 10kg
냉동	꽃게	중국, 국내	6~7, 10~12kg	C/T	L, M, S
냉동	아귀	중국	10, 20kg	C/T	3000g, 8미, 5/6미, 3/4미
냉동	연어	중국, 칠레, 노르웨이	10kg	C/T	
냉동	오징어	국내, 원양, 뉴질랜드 등	6,8,18	PN, BT, SP	선동 8kg 대품 20미, 중품 32미, 육동 6kg
냉동	임연수어	미국, 러시아	18	지대	L, M, S
냉동	꾸꾸미	중국, 베트남, 인도	4.2kg	C/T	6미, 8미
냉동	참조기	중국	4~5kg	C/T	60/80, 80/100, 100/150, 150/200
냉동	홍어	브라질, 아르헨티나	20kg	C/T	
냉동	청어	국내, 노르웨이	7, 10kg	C/T	
냉동	논우렁이	국내, 중국	7, 8kg	C/T	
패류	가리비	중국	10kg	망	
패류	가우락	군산, 목포	20kg	망	
패류	갑오징어	군산, 여수, 목포,마산	5kg	S/P	
패류	개불	군산	6kg	S/P	
패류	개조개	중국, 군산, 삼천포	20kg	망	
패류	게	군산, 서산, 여수	5kg	자루	
패류	게지	여수, 군산	5kg	S/P	
패류	고동	순천, 부안, 통영	5,8,10kg	S/P, 망	
패류	굴	남해, 고흥, 여수, 삼천포	0.8~5kg	S/P	실중량 검수
패류	봉지굴	남해, 고흥, 여수, 삼천포	5kg	S/P	
패류	각굴	남해, 고흥, 여수, 삼천포	5,10kg	S/P	
패류	바지락	부안, 서산, 남해, 통영	15,20kg	망	
패류	포장바지락	남해, 삼천포, 마산, 중국	3~4kg	S/P	
패류	간백새우	여수, 중국, 군산	10kg	S/P	
패류	간적새우	여수, 중국, 군산	8kg	S/P	
패류	간키조개	군산, 여수, 남해	5kg	S/P	
패류	간해락	인천	1.2kg	S/P	
패류	꼰뚜기	군산, 부안, 여수, 목포	1.5kg	S/P	
패류	낙지	중국, 군산, 여수	3kg	S/P	
패류	동백하새우	목포	6kg	C/S	
패류	동죽	부안, 군산, 여수, 중국	20	망	
패류	맛	순천, 남해, 중국	7~10kg	S/P	
패류	매생이	고흥, 완도, 보성, 강진	10kg	S/P	
패류	모시조개	인천, 서산, 부안	20kg	망	
패류	문어바지락	남해, 삼천포, 서산, 군산, 여수	5kg	S/P	
패류	미더덕	통영, 마산	1.2~1.5kg	S/P	
패류	비단조개	속초, 장항, 군산	10,20kg	자루,망	
패류	뼈틀이	서산, 장항, 군산	9kg	S/P	
패류	새고막(새고막)	서산, 고흥, 여수, 순천, 일본	7,15,20kg	자루,망	
패류	참고막(참고막)	순천, 고흥, 일본	10,15,18,20kg	자루,망	
패류	소라	서산, 고흥, 여수, 순천, 중국	10kg	자루	
패류	꽃게	인천, 서산, 부안, 중국	10kg	망	
패류	오만둥이	여수, 통영, 마산	1.2~2.6kg	S/P	실 중량검수

구분 ¹⁾	어종명	원산지	규격	단위 ²⁾	비 고(박스당 미수)
패류	우렁쉥이	통영, 마산	5kg	S/P	
패류	우렁이	부안, 군산	6kg	S/P	
패류	재첩	순천, 군산, 부안, 중국	20, 30kg	망	
패류	죽합	남해	4kg	S/P	
패류	중하	서산, 신안, 목포	5kg	S/P	
패류	쭈꾸미	부안, 군산, 여수, 중국	3kg	S/P	
패류	참게	인천, 군산	3~7.5kg	자루, 망, S/P	
패류	키조개	장항, 군산, 여수	5kg	S/P	
패류	키조개꼭지	장항, 군산, 여수	5kg	S/P	
패류	키조개날개	장항, 군산, 여수	5kg	S/P	
패류	파래	여수, 보성, 마산	5kg	S/P	
패류	피조개	여수, 순천, 마산, 남해	5kg	S/P	
패류	해삼	마산, 여수, 통영	5kg	S/P	
패류	홍합	여수, 서산, 통영, 마산	10, 20kg	자루, 망	
패류	간홍합	여수, 서산, 통영, 마산	1.8~2kg	S/P	
담수어	동자개(빠가사리)	국내, 중국	kg	가구	
담수어	메기	국내	kg	가구	
담수어	미꾸라지	중국, 국내	kg	가구	
담수어	뱀장어	국내	kg	가구	kg당 미수
담수어	붕어	국내, 중국	kg	가구	
담수어	빙어	국내	kg	S/P	
담수어	새우	국내	kg	S/P	
담수어	잉어	국내, 중국	kg	가구	
담수어	자라	중국, 태국	kg	가구	

1) 활어: 수족관이나 기포를 사용하여 보관 유통, 선어: 빙장(얼음)을 처리하여 유통

2) 단위: '가구': 바구니등 물을 담아 유통하는 용기, 'C/S': 나무상자, 'S/P': 스티로폼 상자, 'C/T': 종이상자

1.2.4 품목별 수출협의회

○ 국내산 육류

- 해외 수출은 과거에 돈육이 수출되었으나 2002년 구제역이후 전면 중단되었으며 단지 훈제 돼지나 살균된 가공형태만으로 수출되고 있음.
- 또한 계육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삼계탕등의 가공형태로만 수출되고 있음.
- 단지 축산부산물인 소, 돼지 내장등이 필리핀이나 태국등지로 수출되고 있음.

○ 수산물

- 활어로 수출하는 것은 양식수산물로 광어양식협회에서 규격이 없이 주로 kg 단위로 수출하고 있으며, 주 판매는 일본으로 1.1kg이 미국으로 2kg 으로 수출하다 현재는 1.1kg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계약에 따름.
- 활어자체보다는 주 수입국인 미국, 칠레, 유럽등지에서 가공을 요구하기 때문에 수출품 규격은 없는 상태임.
- 굴은 통영을 중심으로 수협에서 수출하고 있으며, 완도등지에서 김협회에서 1 등급의 김을 수출하고 있음.
- 수산물의 경우 협의회가 활성화 되어있지 않아 민간 기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지 검역소에서 유해성분등에 대한 검사만 이루어지고 있음

- 고등어의 경우 200~300g 정도가 중동이나 베트남 등으로 수출되고 있음.
 - 수입 수산물은 명태 등이 수입되고 있으나 분위기상 수입업자의 이미지가 좋지 않아 대부분 민간기준은 전무한 상태임.
- 농산물의 경우 몇 차례 국가 브랜드 사업을 진행했던 터라 여러 품목별 협의회가 조성이 되어있으며, 수출기준에 대한 자체 품질기준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있음.

○ 과실류 수출품 품질기준

1) 배

가. 기본원칙

- 대상품종; 신고배, 황금배 동일적용
- 품질구분; (1) 수출합격품 - 최우수품(특품), 우수품(상품)으로 구분
(2) 수출불합격품 - 내수판매용(보통), 등외품으로 구분

나. 품질기준

구분	최 우수(특품)	우수(상품)	보통(내수판매용)
무게기준	특대, 대 이상일 것	중-소과(특대, 대에서 품질미달품 포함)	중-소과(소과 이하 포함)
속도	완속과 대비 90%	좌 동	완속과 또는 미속과
당도	11.5 브릭스 이상(포장작업시 당도)	10.5 -11.5 브릭스	10.5 브릭스 이하
모양	좌우 대칭 편원형이며 맨드라미가 미려한 것 (숫배 제외)	최우수 대비 70%정도 이상의 것	최우수 대비 70%정도 이하의 것 (기형과, 숫배 포함)
색택	푸른기가 없고 밝고 맑은 품종 고유의 색택(황갈색 또는 연갈색)	최우수 대비 70%정도 이상의 것	최우수 대비 70%정도 이하의 것
흠집정도	과피에 상처나 변색이 없는 것	최우수 대비 70%정도 이상의 것	최우수 대비 70%정도 이하의 것
수축현상	과피가 마르지 않은 배 (바람드리배가 아닐 것)	좌동	좌동
기타(1)	지베렐린 사용 않은 것	지베렐린과 포함	지베렐린과 포함
기타(2)	봉지재배	봉지재배	봉지재배

※ 등외품(신선과실로 판매 불가능한 등급)

상처과(기계에 의한 손상, 압상, 파열 등), 벌레구멍이 있는 것, 바람들이 배, 냉해를 입은 배, 심한 동녹과, 열과, 부패과, 병해충과(흑반병, 흑성병, 가루각지벌레, 응애 등), 생리장해과(흑변, 얼룩이 등)

다. 무게기준

구분	특대	대	중	소	비고
신고배	750g 이상	600 - 750	500 - 600	375 - 500	
황금배	600g 이상	500 - 600	375 - 500	300 - 375	

라. 포장단위

구분	포장단위	특대	대	중	소	극소
신고배	5kg	6과 이하	7-8	9-10	11-12	13과 이상
	10kg	14과 이하	15-18	19-22	23-26	27과 이상
	15kg	20과 이하	21-25	26-30	31-35	36-40
황금배	5kg	11과 이하	12-14	15-18	19과 이상	
	10kg	22과 이하	23-28	29-36	37과 이상	
	15kg	33과 이하	34-42	43-54	55과 이상	

<p>※ 참고사항</p> <p>1. 당도</p> <p>(1) 당도를 12 브릭스로 하면 약간 무리한 것이므로 1단계로 11.5도로 하고 경과를 보아 12도로 상향 조정 (휘모리 배는 11.5 브릭스 이상)</p> <p>(2) 당도는 선과 포장작업시 당도임(현지 도착 및 판매 소비시에는 약 1도 상승)</p> <p>(3) 박스에 당도표시를 하지 않고 내부적으로만 관리(일본, 미국의 경우에도 당도표시는 하지 않음)</p> <p>2. 무게(크기)문제</p> <p>(1) 시장성에 맞게 적용폭을 넓혀주어야 하나(유럽 등 서양인은 소과 선호) 초기에는 품종 특성에 따라 최고의 맛을 내는 크기만 우선 적용함</p> <p>(2) 현재는 박스당 무게와 개수를 동시에 맞추기 때문에 박스당 1-2개는 크기가 다를 수 있음</p> <p>3. 차후 검토사항</p> <p>(1) 최우수에 중과를 포함하거나 무게기준을 제외하는 방안</p> <p>(2) 산미기준을 첨가하는 방안</p> <p>(3) 품질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수출국별로 기준으로 정하는 방안</p>

2) 사과

가. 기본원칙

- 대상품종: 후지
- 품질구분: (1) 수출합격품 - 최우수품(특품), 우수품(상품)으로 구분
- (2) 수출불합격품 - 내수판매용(보통), 등외품으로 구분

나. 품질기준

구분	최우수(특품)	우수(상품)	보통(내수판매용)
무게기준	특대, 대 이상일 것	중-소과(특대, 대에서 품질 미달 품 포함)	중-소과(소과 이하 포함)
속도	완속과 대비 90%	좌동	완속과 또는 미속과
당도	12 브릭스 이상(포장작업시 당도)	11 -12 브릭스	11 브릭스 이하
모양	좌우 대칭의 정형과(비탈진 것 제외), 맨드라미가 미려한 것(기형과 제외)	최우수 대비 70%정도 이상의 것	최우수 대비 70%정도 이하의 것 (기형과 포함)
색택	품종 고유의 색택(맑고 진한 핑)	최우수 대비 70%정도 이상의 것	최우수 대비 70%정도 이하의 것

	크색)이 면적기준 80% 이상일 것. 줄무늬 80% 이상일 것		
흙집정도	과피에 상처나 변색이 없는 것	최우수 대비 70%정도 이상의 것	최우수 대비 70%정도 이하의 것
수축현상	과피가 마르지 않은 것(바람드리 사과가 아닐 것)	좌동	좌동
기타(1)	지베렐린과 제외	지베렐린과 포함	지베렐린과 포함
기타(2)	봉지재배	봉지재배	봉지재배 관계없음

다. 무게기준

구분	특대	대	중	소	특소
후지사과	375g 이상	300-375	250-300	215-250	215 이하

라. 포장단위

구분	특대	대	중	중	소	소
10kg	27과 이하	28-32과	33-36과	37-40과	41-45	46-50

<p>※ 참고사항</p> <p>1. 무게 문제</p> <p>(1) 수출품 기준을 36과/10kg 정도로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나 매년 작황이 차이가 있으므로 32과/10kg로 정하고 탄력적으로 운영</p> <p>(2) 시장성에 맞게 적용을 넓혀주어야 하나(서양인 소과 선호) 초기에는 품종 특성에 따라 최고의 맛을 내는 크기만 우선 적용함</p> <p>(3) 박스당 무게와 개수를 동시에 맞추기 때문에 박스당 1-2개는 크기가 다를 수 있음</p> <p>2. 당도 문제</p> <p>(1) 당도를 12브릭스로 하면 매년 작황에 따라 약간 무리한 경우도 있을 수 있음</p> <p>(2) 당도는 선과 포장작업 시 당도임(현지 도착 및 판매 소비시에는 약 1도 상승)</p> <p>(3) 박스에 당도표시를 하지 않고 내부적으로만 관리(일본, 미국의 경우에도 당도표시는 않함)</p> <p>3. 차후 검토사항</p> <p>(1) 최우수에 중과를 포함하거나 무게기준을 제외하는 방안</p> <p>(2) 산미기준을 추가하는 방안</p> <p>(3) 품질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수출국별로 기준으로 정하는 방안</p>

3) 단감

가. 기본원칙

- 대상품종: 부유

- 품질구분: (1) 수출합격품 - 최우수품(특품), 우수품(상품)으로 구분

(2) 수출불합격품 - 내수판매용(보통), 등외품으로 구분

나. 품질기준

구분	최우수(특품)	우수(상품)	보통(내수판매용)
무게기준	특대, 대, 중 이상일 것	중-소과(특대, 대에서 품질 미달품 포함)	중-소과(소과 이하 포함)

속도	완속과 대비 80% 탄력이 떨어지는 것 제외	좌 동	완속과 또는 미속과
당도	13 브릭스 이상(포장 작업시 당도)	11 -12 브릭스	11 브릭스 이하
모양	좌우 대칭의 단감 고유의 편원형과, 맨드라미가 미려한 것(기형과 제외) 꼭지 와 과육사이의 틈이 적은 것	최우수대비 70%정도 이하의 것	최우수대비 70%정도 이하의 것 (기형과 포함)
색택	품종 고유의 색택(맑은 선홍색 또는 황색)이 면적기준 80% 이상일 것.	최우수대비 70%정도 이하의 것	최우수대비 70%정도 이하의 것
흠집정도	과피에 상처나 반점, 변색이 없는 것 (3% 이하 허용)	최우수대비 70%정도 이하의 것	최우수대비 70%정도 이하의 것
수축현상	과피가 마르지 않은 것 (바람드리 단감이 아닐 것)	좌동	좌동
기타(1)	지베렐린과 제외	지베렐린과 포함	지베렐린과 포함
기타(2)	꼭지벌레가 없으며, 노린재 흠집자국이 없는 것. 동해 피해과 제외	좌동	좌동

다. 무게기준

구 분	특대(2L)	대(L)	중(M)	소(S)	소(2S)	소(3S)
부유	250g이상	212-249	189-211	167-188	149-166	135-148

라. 포장단위

구 분	특대(2L)	대(L)	중(M)	소(S)	소(2S)	소(3S)
10Kg	40과 이하	41-47	48-53	54-60	61-67	68-74

<p>※ 참고사항</p> <p>1. 무게 문제</p> <p>(1) 대만, 홍콩은 특대를 요구하고 주시장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기타 동남아시아장은 소과를 요구(선호)함.</p> <p>(2) 현재는 박스당 무게와 개수를 동시에 맞추기 때문에 박스당 1-2개는 크기가 다를 수 있음.</p> <p>2. 당도 문제</p> <p>(1) 수출당도를 13 브릭스로 하면 매년 작황에 따라 약간 무리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기준은 13 브릭스로 정하고 전국적으로 특수한 경우에는 재조정</p> <p>(2) 박스에 당도표시를 하지 않고 내부적으로만 관리</p> <p>3. 차후 검토사항</p> <p>(1) 소과도 포함하거나 무게기준을 제외하는 방안</p> <p>(2) 품질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수출국별로 기준으로 정하는 방안</p>
--

4) 감귤

가. 기본원칙

- 적용대상: 노지감귤, 하우스 감귤
- 품질구분: 특품, 상품, 보통품으로 구분

나. 품질기준

구 분	특 품	상 품	보 통
무게기준	대. 중. 소 인 것 무게구분표상 무게가 다른 것이 5% 이하일 것	대. 중. 소 인 것 무게구분표상 무게가 다른 것이 10% 이하일 것	특대와 특소 포함
당 도	하우스 : 12°BX이상 노지 : 10°BX이상	하우스: 11°BX이상 노지: 9°BX이상	[특, 상]에 미달되는 것
산 도	1% 미만	1-2%	[특, 상]에 미달되는 것
색 택	품종 고유의 색택이 90% 이상일 것	품종 고유의 색택이 80% 이상 일 것	품종 고유의 색택이 60% 이상일 것
모 양	껍질이 얇고 탄력이 있으며, 수축 현상이 나타나지 않은 것	얇고 탄력은 다소 약하나 수축 현상이 나타나지 않은 것	[특, 상]에 미달되는 것
기타조건	결점과가 날개비율로 5%이하 일 것	결점과가 날개비율로 10% 이 하일 것	[특, 상]에 미달되는 것

다. 날개규격

호칭(no.)	1	2	3	4	5	6	7	8	9
구 분	특소	소	중			대		특대	
개당무게(g)	56	60	67	81	88	97	107	125	139
크기(mm)	51	54	56	58	60	62	66	70	77

라. 수출포장규격

거래단위	포장재종류	외치수(mm)		
		길이	너비	높이
3kg	골판지(산물용)	350	250	90
5kg	골판지(산물용)	366	260	120
10kg	골판지(산물용)	440	330	160
	골판지(속포장용)	440	330	180
15kg	골판지(산물용)	440	330	225
	골판지(속포장용)	440	330	250
16.3kg	골판지	475	325	250

- ※ 참고사항
1. 안전성과 관련된 부분이 어려움. 1,000 여개의 수출 농가를 관리하는 인적자원이 부족함(구체적 인 안전성관리 방안이 필요함)
 2. 철저한 품질관리를 기반으로 함(대 미국, 일본 수출의 경우 수입국산과의 경쟁을 위하여는 품질 차이가 확연하지 않으면 수출이 어려운 상태임)
 3. 한국산 감귤의 경우 산미가 높은 편이므로 산도 기준을 반드시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당·산도 측정 시스템 설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 현재는 비파괴 당도기 및 산도측정 장비 부족으로 샘플링 채취 물량에 한해 당도 및 산도의 측정이 이루어지고 있음(전량 당도 및 산도 측정은 어려움)
 4. 감귤 역시 기후에 따라 생산량 및 품질이 결정되므로 매년 동일한 품질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채소류 수출품 품질기준

1) 버섯

- 팽이버섯

갓 모 양	퍼지지 않은 것
갓 크 기	최대 지름 1cm 이하
색 택	품종 고유의 색택을 나타내는 것
흠집정도	상처 및 갓 부러짐이 없을 것

- 새송이버섯

저장능력	유통기한이 최소 30일 이상 유지 가능해야 함
저장온도	0도 ~ 5도
모 양	반듯하고 볼링핀 형태(갓 모양: 가지런하고 둥근형)
색 택	몸통색깔은 순백색이며, 갓 색깔은 밤색유지하고 색택이 선명할 것 (품종 고유의 색깔을 유지할 것)
흠집정도	상처 및 갓 부러짐이 없을 것

2) 인삼

뿌리삼	홍 삼	- 6년근, 양삼, 30지 - 4년근, 양삼, 30지
	대 극 삼	- 1등급, 60편
인삼제품	농 축 액	- 농축액 100%, 30g
	절 편	- 당침절편 (20g×10개)

1.3 외국의 민간표준

1.3.1 유럽연합

- 유럽연합은 민간표준이 발달한 국가로서 민간표준은 정부의 공적관리와 상호 보완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 유럽연합 회원국의 민간표준 사례⁶⁾

표 6 유럽연합 회원국의 민간표준 사례

민간표준 범위	적용 국가	민간표준 사례	적용 내용
식품체인 포괄 (육류)	네덜란드	IKB(Integrale Keten Beheersing)	생산과 육가공 단계의 기준 요구 소매 매장에 해당 없음
	영국	ABM(Assured British Meat)	
	벨기에	Certus	
	독일	Q&S(Qualität und Sicherheit)	
공급체인의 한 단계에만 적용	EU	EurepGAP	농산물의 농장바깥 나오기 전까지 안전성 관리 및 환경 보전이나 동물 복지 포괄
	영국	BRC Global Standard	포장센터 운영 관련(관리와 최소가공 포함)
	오스트리아	SQF 3000	소매매장에서의 품질관리
자체 체계	영국	테스코 “Tesco's Nature's Choice”	농장안에서 적용되는 품질기준

	영국 막스앤스팬서	M & S "Farm to Fork"	생산과 포장관련 품질규정
	프랑스	Casino "Terre de Saveur"	대형슈퍼마켓의 품질 보증
	프랑스	Auchan "Filiere Agriculture Raisonnee"	대형슈퍼마켓의 품질 보증
	프랑스	Carrefour "Filiere Qualite"	대형슈퍼마켓의 품질 보증
사회적 책임	미국	Social Accountability 8000	노동환경조건
	영국	Ethical Trading Initiative	윤리경영, 근로 조건
	미국 시작	Marine Stewardship Initiative	친환경 인증 및 해양 환경 자원

출처: EC, Private Food Standards and their Impacts on Developing Countr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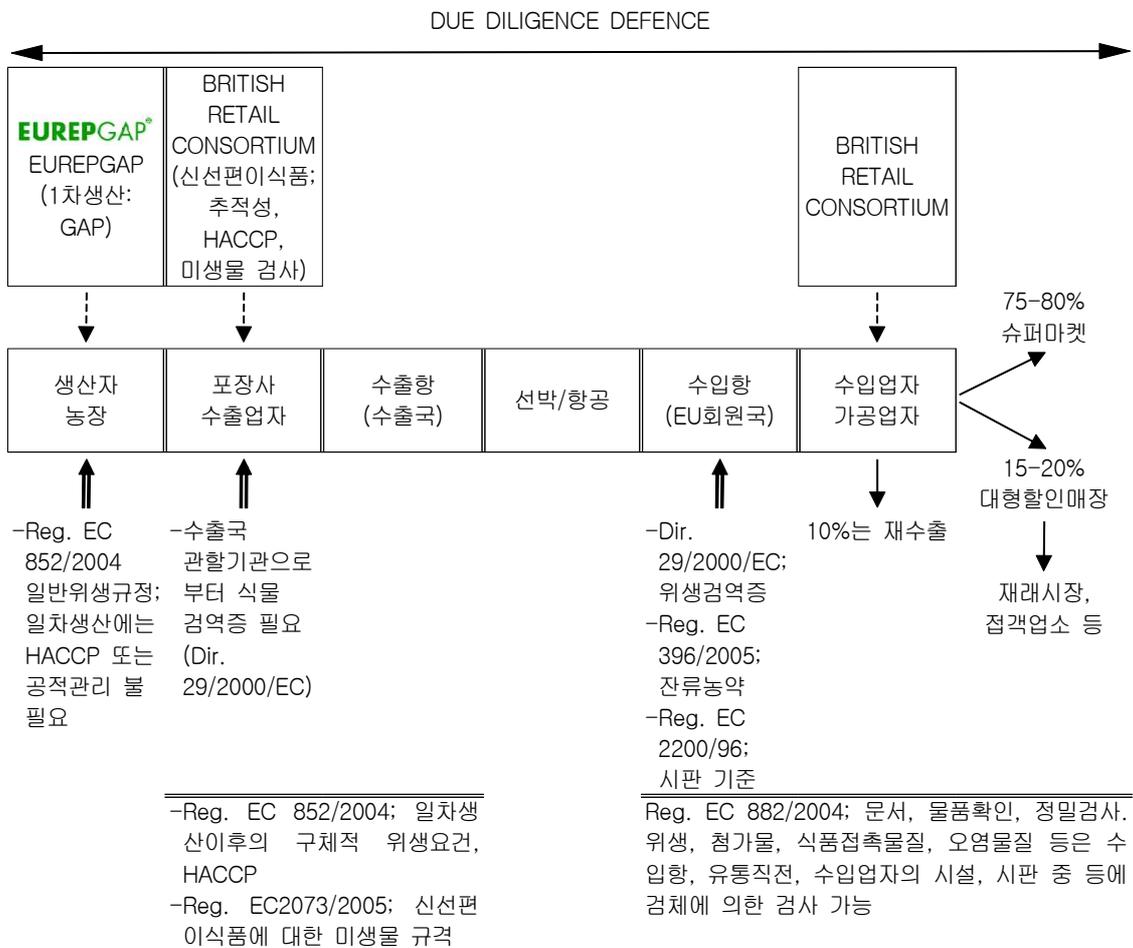
○ 유럽연합 회원국의 식품유통단계에 따른 민간표준의 적용은 다음과 같음

표 7 유통단계별 유럽의 민간표준

		농장 단계	농장 후	
		생산자/농장(1차생산)	제조가공·포장	소매상·슈퍼마켓
국가	 QS - Ihr Prüfsystem für Lebensmittel	독일(Qualität und Sicherheit)		
		프랑스(Label Rouge)		
		벨기에(Certus)		
		영국(Assured British Meat)		
		덴마크(DS)		
		네덜란드(Integrale Keten Behersing)		
산업계표준				
				
	ISO	ISO HACCP	ISO HACCP	
개별 기업(슈퍼마켓)				
	MARKS & SPENCER	MARKS & SPENCER		

출처: EC, Private Food Standards and their Impacts on Developing Countries

- 유럽연합의 식품안전 체제(민간표준 포함)
 - 위생규격의 경우는 법률적인 기준을 따르며, 이를 만족하기 위한 절차 및 기타의 요건은 구체적으로 방법을 정하고 있음.
 - 상호보완적으로 법률은 필요한 요건만을 요구하고, 민간표준에서 법적요건을 만족하기 위한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음.
 - 이는 유럽연합의 법령은 최종제품의 위생에 관한 기준·규격은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비하여, 절차를 포함하는 공정에 대한 요구사항은 개념만을 정하고 방법은 영업자가 자기의 상황에 맞추어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출처; EC, Private Food Standards and their Impacts on Developing Countries

그림 1 유럽연합의 식품안전체제 모식도

1.3.2 품목별 해외 시장 시장별 민간표준

- 배
 - (1) 품질기준

- 미국(뉴욕, 헌츠포인트 도매시장)

사향 \ 등급	U.S. Extra No.1	U.S. No. 1	U.S. No. 2
색택	너무 익지 않음, 상태 좋음, 변색되지 않음, 햇볕에 타지 않음	너무 익지 않음, 상태 좋음, 변색되지 않음, 햇볕에 타지 않음	너무 익지 않음, 상태 좋음, 변색 없음, 햇볕에 타지 않음
모양	고른 대칭 모양, 기계에 의한 손상 없음	적당한 모양, 썩지 않음, 기계에 의한 손상 없음	심각한 찌그러짐 없음, 기계에 의한 손상 없음
흠집정도	상처 없음, 냉동에 의한 상처 없음, 벌레구멍 없음, 결핍으로 인한 손상 없음, 곤충 없음	냉동으로 인한 손상 없음, 벌레구멍 없음, 질병 없음, 곤충 없음	냉동으로 인한 손상 없음, 벌레구멍 없음, 곤충 없음
비고			주로 가공용

- 네덜란드, 프랑스, 이태리 등 EU 국가(각국별 도매시장, 유통업체)

원산지	품명	등급규격	중량/개	당도	선호도	색택	모양	흠집	비고
유럽	불임참조	품종별 위주	250g/개 내외	13-15	◎	사진참조 (투박)	포주박	없음	
중국	"	A,B	350g/개 내외	11-13	△	사진참조	원형	없음	황금배 종류
남반구	"	품종별 위주	250g/개 내외	13-15	○	사진참조	포주박	없음	유럽산 품종
한국산	황금신고	대. 중	대 800g/개 중 400g/개 내외	10-12	○	-	-	없음	수출용 품질 등 유사

- 싱가포르(파시르판장 도매시장)

원산지	품명	등급규격	중량/개	선호도	색택	모양 (형상)	흠집 정도	비고
호주	배·패캄	B등급	±125g	○	청색	표주박형	흠집 없음	중품100%
중국	배·20세기	A등급	±357g	◎	연한황색	둥근원형	흠집 없음	상품100%
중국	배·황금	A등급	±500g	◎	연한황색	둥근원형	흠집 없음	상품100%
중국	배·신고	A등급	±1,000g	○	진한갈색	원형	흠집 없음	상품100%
한국	배·신고	A등급	±1,250g	◎	진한갈색	원형	흠집 없음	상품100%

(2) 포장규격

- 미국(뉴욕, 월밤, 슈퍼마켓, 그레잇넥점)

원산지	품목	포장단위	사이즈 (cm) 가로x세로x높이	재질	모양	비고
미국	사과	5 lb	-	비닐봉지	자유형	
		10 lb	-	비닐봉지	자유형	
		40 lb	50x30x13	골판지	직사각형박스	
미국	배	45 lb	50x30x13	골판지	직사각형박스	

※ 겨울 뉴욕지역의 도매 및 소매시장에서 유통되는 사과와 배는 모두 미국산이며, 소매시장에서는 사과의 비닐팩 포장을 제외하고 대부분 날개로 판매되며 소매시장에서의 진열도 박스 단위보다는 벌크로 쌓아놓는 추세임.

- 네덜란드, 프랑스, 이태리 등 EU 국가(각국별 도매시장, 유통업체)

원산지	포장단위	사이즈(mm) (가로×세로×높이)	재 질	모 양	비 고
공히	5kg(1단), 7.5kg(1단), 10kg(2단), * 1kg(2단)은 한국산만 있음	한국과 동일	골판지 (유통업체 자체 작업용은 프라스틱 용기)	직사각형 박스	-유럽산은 난자 無 -한국산은 난자 有 (운송)

- 싱가포르(파시르판장 도매시장)

원산지	품 목	포장단위	사이즈(mm) (가로×세로×높이)	재 질	모 양	비 고
호주	배 (페캄)	10kg	435×300×240	골판지	직사각형 박스	난자 무 비닐봉비속지
중국	배 (20세기)	10kg	474×340×200	골판지	직사각형 박스	난자 유
중국	배 (황금배)	10kg	500×330×210	골판지	직사각형 박스	난자 유
중국	배 (신고배)	5kg	445×340×165	골판지	직사각형 박스	난자 유
한국	배 (신고배)	7.5kg	500×350×145	골판지	직사각형 박스	난자 유

2) 사과

(1) 품질기준

- 일본(오사카, 중앙도매시장)

등급 사항	特秀	秀	優	良
색 택	각 품종별 特秀급에서 정한 착색비율에 적합하며 품종고유의 熟色이 가장 優秀한 것	각 품종별 秀급에서 정한 착색 비율에 적합하며 그 밖의 품종에 있어서는 품종고유의 熟色이 優秀한 것	각 품종별 優급에서 정한 착색 비율에 적합하며 그 밖의 품종에 있어서는 품종고유의 熟色이 優良한 것	각 품종별 良급에서 정한 착색 비율에 적합하며 그 밖의 품종에 있어서는 품종고유의 熟色이 良好한 것
선 별	크기 구분에서 어느 한 기준에 해당되어야 하며 크기가 다른 것이 혼합되어 있지 않은 것	좌동	좌동	좌동
重缺點果	혼합되어 있지 않은 것	좌동	좌동	좌동
輕缺點果	없는 것	대부분 없는 것	대체로 없는 것	별로 없는 것

- 미국(뉴욕, 헌츠포인트 도매시장)

등급	U.S. Extra Fancy	U.S. Fancy	U.S. No. 1	U.S. Utility
사항				
색택	50% 홍조 너무 익지않음 변색되지 않음, 적갈색화되지 않음, 햇별에 타지 않음, 반점병이 없음.	33% 홍조, 너무 익지않음, 상대줄음, 변색되지 않음, 적갈색화되지않음, 햇별에 타지 않음	25% 홍조, 햇별에 타지 않음	너무 익지 않음, 썩지 않음, 변색되지 않음, 적갈색화 되지않음, 햇별에 타지 않음.
모양	고르게 대칭 모양, 돌출된 곳이 없음, 썩지 않음	적절한 모양, 돌출된 곳 없음, 썩지않음	적절한 모양, 돌출된 곳 없음.	모양이 심각하게 고르지 않지 않음.
흠집정도	흠집 없음, 영양부족 흠집 없음, 상처 없음, 병·곤충 없음, 부드러운 표면에 의한 손상 없음, 약간 거침, 줄기에 갈라진 틈이 없음. 냉동에 의한 상처 없음. 눈에 보이지 않은 응애 없음.	냉동에 의한 상처 없음, 흠집 없음, 상처 없음, 줄기에 갈라진 틈 없음, 병, 곤충 없음, 눈에 보이지 않는 응애 없음.	냉동에 의한 상처 없음, 흠집 없음, 상처 없음, 줄기에 갈라진 틈 없음, 병, 곤충 없음	냉동에 의한 상처 없음, 심각한 흠집 없음, 질병, 곤충 없음
비고				주로 가공용

(2) 포장규격

- 일본(오사카, 동부도매시장)

원산지	품목	포장단위	사이즈(mm) (가로×세로×높이)	재질	모양	비고
아오모리	쓰가루	10kg	427×355×200(JA 쓰가루)	골판지	직사각형 박스	난자 유

- 미국(뉴욕, 월밤, 슈퍼마켓, 그레이트넥점)

원산지	품목	포장단위	사이즈(cm) 가로×세로×높이	재질	모양	비고
미국	사과	5 lb	-	비닐봉지	자유형	
		10 lb	-	비닐봉지	자유형	
		40 lb	50x30x13	골판지	직사각형박스	
미국	배	45 lb	50x30x13	골판지	직사각형박스	

3) 단감

(1) 품질기준

- 싱가포르(파시르판장 도매시장)

원산지	품명	등급규격	포장단위 (box)	개수 (box)	중량/개	선호도	색택	모양(형상)	흠집정도	비고
이스라엘	샤론	A등급 (上)	0.9-1.1kg (소포장)	9	104-122g	◎	황색	둥근사각형	흠집 없음	상품 100%
뉴질랜드	부유	A등급 (上)	4kg (단보루)	14	285g	○	황색	둥근원형	흠집 없음	상품 100%

* 현재는 이스라엘산 유통 중임.

(2) 포장규격

- 싱가포르(파시르판장 도매시장)

원산지	품 목	포장단위	사이즈(mm) (가로×세로×높이)	재 질	모 양	비 고
이스라엘	샤론	0.9- 1kg (소포장)	200×200×70	골판지	정사각형 박스	난자 무
뉴질랜드	부유	4kg (단보루상자)	435×350×80	골판지	직사각형 박스	난자 유

* 현재 유통 중인 품목은 이스라엘산뿐임.

1.4 기타 민간표준

- LOHAS, 유기농, 한국농물협회, 소시모(소비자시민모임), 명품(농협중앙회),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 품질인증(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HACCP(국립수의과학검역원)등 국내 식품 품질 인증 단체에 전화 통화하여 품질평가 기준을 조사하였으며 모두 법률로 정한 국가 품질 규격을 기준으로 평가하였으며 자체적 규격을 정하지는 않음.
- EurepGAP(현재는 GlobalGAP)
 - 영국의 슈퍼마켓은 신선농산물의 비중에서 많은 부분이 수입농산물에 의존하고 있기에 GAP와 관련하여 ‘유럽의 기준’을 만들고 통합 관리의 필요성을 느껴 1997년 ‘Euro-Retail Produce Working Group(Eurep)’을 구성하고 1999년에 단일한 프로토콜인 EurepGAP을 확립
 - EurepGAP에는 유럽의 12개 국가에서 30여 개의 대형 소매업체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 회원업체 취급 신선농산물은 서유럽 시장 물량의 85%에 달함.
 - EurepGAP은 식품안전성, 동물 복지, 그리고 환경보전 측면까지 포괄함.
 - EurepGAP의 세 가지 기준설정 원칙
 - 유럽연합의 법률적 규정을 기준으로 하며
 - 일부 유럽연합 회원국은 EU규정보다 더 엄격한 의무사항을 정해놓을 수 있는데 이 경우 EurepGAP은 공급자가 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도와줄 수 있음.
 - EurepGAP은 생산국의 법규도 준수할 것을 요구함.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칠레와 같은 수출국가의 국내 규정은 EU 회원국 중 가장 엄격한 기준을 가진 국가의 요구도 충족시킬 만큼 기준이 엄하며 EurepGAP인증기관은 수출 원산지 국가의 법률 준수 여부도 점검.

○ GFSI

- 민간표준의 명칭은 다르지만 요구사항이 비슷하고 개별 기업이 각각 다른 검사를 요구하는 경우 각각의 검사에 비용이 요구되어 2000년 세계 50여개 소매업체들이 'Global Food Safety Initiative(GFSI)'를 설립함.
 - 참여하는 소매업체들이 취급하는 식품 소매 매출액은 전 세계 매출액의 65%에 달함.
- GFSI의 중요 요소는 식품안전성 관리, GMP, GAP, HACCP 등임.
 - 이 요소들은 기존의 식품 안전성 기준들이 벤치마킹하고 있는 의무사항들이며 GFSI는 소매업체들이 공급자들에게 하나의 규칙이나 프로토콜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2. 법령에 의한 표준

2.1 축산법

○ 축산물의 등급화¹⁾

-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축산법에 근거하여 축산물의 국내산 축산물의 품질을 평가.
- 축산물의 품질향상과 유통의 원활 및 가축개량 촉진을 위하여 축산물의 품질에 따라서 거래하는 것으로 지역, 축산물의 종류, 형태 및 시행시기 등을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 축산물의 등급화 효과
 - 소비자; 사고자하는 고기의 품질을 식별할 수 있어 구입선택의 폭이 커짐.
 - 유통업자; 고객수준에 맞는 품질의 고기를 제공할 수 있어 소비자와의 신뢰 구축과 판매이익 등의 예측이 가능해 안정적 점포운영을 할 수 있음.
 - 생산자; 등급결과를 이용하여 품질이 좋은 가축 생산으로 소득증대를 할 수 있음.
- 축산법 제35조에 근거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의 품질을 높이고 유통을 원활하게 하며 가축 개량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에 대하여는 그 품질에 관한 등급을 판정 받게 할 수 있음.
 - 등급판정의 방법·기준 및 적용조건, 그 밖에 등급판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함.
- 쇠고기의 등급은 육질등급과 육량등급으로 구분
 - 육질 등급; 고기의 질을 근내지방도, 육색, 지방색, 조직감 및 성숙도에 따라 1⁺⁺, 1⁺, 1, 2, 3등급 및 등외로 구분하여 소비자의 선택 기준으로 활용.

1) 축산물품질평가원, <http://www.ekape.or.kr/view/user/institution/intro.asp> 2011.11.29. 접속

- 육량 등급; 도체에서 얻을 수 있는 고기량을 도체 중량, 등지방두께, 등심단면적을 종합하여 A, B, C로 구분.
- 돼지고기의 등급은 육질등급과 규격등급으로 구분
 - 육질 등급; 고기의 질을 근내지방도, 육색, 지방, 조직감에 따라 1⁺, 1, 2등급으로 구분하여 소비자의 선택 기준으로 활용.
 - 규격등급; 도체중, 등지방두께 및 비육과 외관상태를 종합고려하여 A, B, C등급으로 구분.
- 닭고기의 등급은 통닭과 부분육을 대상으로 1⁺, 1, 2등급으로 구분.
 - 통닭은 외관, 비육상태, 지방부착상태, 신선도, 깃털, 외상, 이물질로 판정
 - 부분육은 신선 원료육을 사용한 것을 대상으로 과도한 변색, 골절, 오염, 이물질로 판정.
- 계란의 품질 등급은 세척한 계란에 대하여 외관, 투광 및 할란 판정을 거쳐 1⁺, 1, 2등급으로 구분.
 - 외관판정은 전체적인 모양, 난각의 상태, 오염여부 등
 - 투광판정은 기실의 크기, 난황의 위치와 퍼짐정도, 이물질을 판정.
 - 할란판정은 난백의 높이와 계란의 무게, 이물질의 유무등으로 판정.
- 축산물의 표준규격은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하여는 축산물부분육상장표준규격(농림부 고시)에서 크기에 따라 위의 등급규격 이외에도 중량규격, 포장규격을 별도로 가지고 있음.

2.2 농산물품질관리법²⁾

2.2.1 인증제도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농산물품질관리법에 근거하여 농식품에 대하여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농산물 우수관리인증제도,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 가공식품산업표준 KS인증제도, 전통식품품질인증제도, 유기농식품인증제도, 우수식품인증기관지정제도, 지리적 표시제도, 술 품질인증제도 등을 실시하고 있음.
- 농산물 표준규격관리
 - 개념; 농산물 표준규격화란 농산물을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 즉 표준규격에 맞도록 품질, 크기, 쓰임새에 따라 등급을 매겨 분류하고 규격포장재에 담아 출하함으로써 내용물과 표시사항이 일치되도록 하는 것임.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http://www.naqs.go.kr/serviceInfo/service_20_01.jsp 2011.11.29. 접속

- 문제점 및 필요성
 - 농산물은 품종, 재배지역 등이 다양하여 생산물의 품질이 균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패, 변질 등으로 선도유지가 어려운 특성이 있어 시장거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없는 구조적인 제약이 있음.
 - 따라서, 유통능률을 향상시키고 신속·공정한 거래를 촉진하며 상품화 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유통농산물의 표준규격화가 바람직함.
 - ① 품질에 따른 가격차별화로 정확한 정보제공 및 공정거래 촉진
 - ② 수송, 적재 등 유통비용 절감으로 유통의 효율성 제고
 - ③ 선별·포장출하로 소비지에서의 쓰레기 발생 억제
- 농산물품질관리법 제4조(표준규격화)에서 농산물의 표준에 대하여 농림수산물부 장관이 표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목적은 상품성을 높이고, 유통능률을 향상시키며, 공정한 거래를 실현하기 위함.
 - 동법 시행규칙 제3조 표준규격의 제정에서 포장규격과 등급규격으로 구분.
- 표준규격의 구성
 - 등급규격
 - 품목 또는 품종별로 그 특성에 따라 필요 항목을 설정하여 등급별 규격을 정함(표 xxx).
 - 요소는 고르기, 선택, 모양, 당도 등의 다양한 품질요소와 크기, 무게에 의하여 특, 상, 보통의 3단계로 구분 고르기, 모양, 선택, 무게, 속도, 신선도, 당도, 맛, 향기, 꼭지, 가벼운 결점과 껍질뜯 것 등이 있음.
 - 크기는 무게, 직경, 길이를 계량기준으로 해서 L, M, S의 5~10단계로 구분.
 - 포장규격; 포장규격은 보관·수송 등 유통과정의 편리성과 폐기물 처리문제를 고려하고 물류표준화 기준을 반영하여 규정
 -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따름.
 -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한국산업표준과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관·수송 등 유통과정의 편리성, 폐기물 처리문제를 고려하여 규격을 따로 정할 수 있음.
 - 포장요소:포장재질, 포장치수, 거래단량을 규정하고 겉포장을 기준으로 속포장 거래단량 규정
 - 표시사항;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표시사항으로 규정.
 - 표시항목: "표준규격품" 문구와 함께 품목, 산지, 품종, 생산연도(곡류에 한한다). 등급, 무게 또는 개수,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명칭 및 전화번호

표 8 각종 농산물의 등급규격 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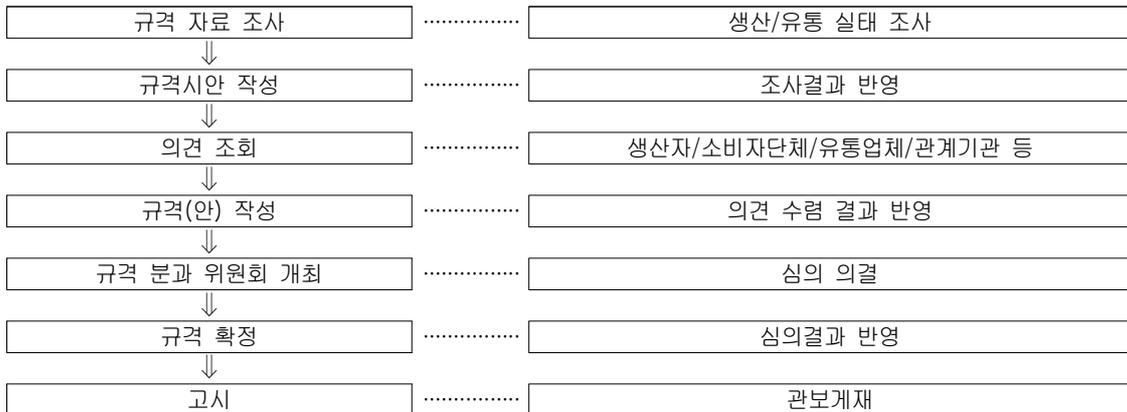
규격번호	품 목	항 목	비 고
과실류			
1101	사과	날개 무게, 선택, 신선도, 종결점과, 경결점과	
1021	배	날개 무게, 선택, 신선도, 종결점과, 경결점과	

규격번호	품 목	항 목	비 고
1031	복숭아	날개 무게, 색택, 신선도, 중결점과, 경결점과	
1041	포도	날개 무게, 무게, 색택, 낱알의 형태, 중결점과, 경결점과	
1051	감귤	날개 무게, 무게, 색택, 과피, 부피과, 중결점과, 경결점과	
1055	금강	날개 무게, 무게, 색택, 중결점과, 경결점과	
1061	매실	날개 무게, 무게, 속도, 중결점과, 경결점과	
1071	단감	날개 무게, 색택, 속도, 중결점과, 경결점과	
1111	자두	날개 무게, 색택, 중결점과, 경결점과	
1121	참다래	날개 무게, 무게, 색택, 향미, 털, 중결점과, 경결점과	
채소류			
2011	마른고추	날개 길이, 색택, 수분, 중결점과, 경결점과, 탈락씨, 이물	
2012	고추	날개 길이, 길이, 색택, 신선도, 중결점과, 경결점과	
2021	오이	날개 길이, 색택, 신선도, 중결점과, 경결점과	
2031	호박	날개 길이, 색택, 모양, 신선도, 중결점과, 경결점과	
2034	단호박	날개 무게, 모양·색택, 중결점과, 경결점과	
2041	가지	날개 길이, 색택, 신선도, 중결점과, 경결점과	
2051	토마토	날개 무게, 무게, 색택, 신선도, 꽃자리 흔적, 중결점과, 경결점과	
2053	방울토마토	날개 무게, 무게, 색택, 신선도, 속도, 중결점과, 경결점과	
2054	송이토마토	무게, 모양, 색택비율, 신선도, 중결점과, 경결점과	
2061	참외	날개 무게, 색택, 신선도, 중결점과, 경결점과	
2071	딸기	날개 무게, 무게, 색택, 신선도, 중결점과, 경결점과	
2081	수박	색택, 신선도, 속도, 중결점과, 경결점과	
2082	조롱수박	날개 무게, 무게, 모양, 신선도, 중결점과, 경결점과	
2091	멜론	날개 무게, 무게, 모양, 신선도, 중결점과, 경결점과	
2101	피망	날개 무게, 무게, 색택, 신선도, 중결점과, 경결점과	
3011	양파	날개 크기(지름), 크기, 모양, 색택, 손질, 중결점과, 경결점과	
3021	마늘	날개 크기(지름), 크기, 모양, 손질, 열구, 쪽마늘, 중결점과, 경결점과	
3041	무	날개 무게, 모양, 신선도, 앞길이, 중결점, 경결점	
3051	결구배추	날개 무게, 무게, 결구, 신선도, 다듬기, 중결점, 경결점	
3061	양배추	날개 무게, 무게, 결구, 신선도, 다듬기, 중결점, 경결점	
3071	당근	날개 무게, 색택, 모양, 손질, 중결점, 경결점	
서류			
4011	감자	날개 무게, 무게, 손질, 중결점, 경결점	
4021	고구마	날개 무게, 무게, 손질, 중결점, 경결점	
특작류			
5011	참깨	모양, 수분, 용적중, 이종피색립, 이물, 조건(특)	
5021	피땅콩	모양, 수분, 빈 꼬투리, 이물	
5022	알땅콩	날개 무게, 모양, 수분, 피해립, 이물	
5031	들깨	모양, 수분, 용적중, 피해립, 이종곡립, 이종피색립, 이물, 조건(특)	
5041	수삼	날개 무게, 무게, 모양, 육질, 색택, 손질, 신선도, 중결점, 경결점	
버섯류			
6011	느타리버섯	날개 갓 지름, 갓 크기, 갓 모양, 신선도, 이물, 중결점, 경결점	
6013	큰느타리버섯 (새송이버섯)	날개 무게, 무게, 모양, 색택, 신선도, 피해품, 이물	
6021	양송이버섯	날개 갓 지름, 갓 크기, 갓 모양, 신선도, 자루길이, 이물, 중결점, 경결점	
6031	팽이버섯	갓 모양, 갓 크기, 색택, 신선도, 이물, 중결점, 경결점	
6041	영지버섯	날개 갓 지름, 갓 모양, 절편의 넓이, 갓 크기, 갓 두께, 자루길이, 수분, 이물, 중결점, 경결점	
곡류			
7011	쌀	수분, 싸라기, 분상질립, 피해립, 열손립, 기타이물(양곡관리법 시행규칙 - 쌀 등급규격 기준 채택)	
7012	참쌀	모양, 냄새, 수분, 멍쌀혼입, 싸라기, 피해립, 열손립, 기타이물, 조건(특)	
7013	현미	모양, 용적중, 정립, 수분, 사미, 피해립, 열손립, 메현미 혼입, 돌, 누 - 이종곡립, 이물, 조건(특)	
7021	보리쌀	모양, 냄새, 수분, 메보리쌀 혼입, 열손립, 싸라기, 돌, 이물	

규격번호	품 목	항 목	비 고
7023	눌린보리쌀	모양, 냄새, 수분, 열손립, 찌라기, 돌, 이물	
7024	할맥	모양, 냄새, 수분, 열손립, 큰 찌라기, 작은 찌라기, 통보리쌀, 돌, 이물	
7031	좁쌀	모양, 냄새, 수분, 피해립, 이물, 메좁쌀 혼입, 이종 곡립, 조, 조건(특)	
7041	울무쌀	모양, 냄새, 수분, 정립, 열손립, 피해립, 피울무, 이종 곡립, 돌, 이물, 조건(특)	
7051	콩	모양, 수분, 발아율, 낱알 굵기, 정립, 피해립, 이종 곡립, 이종 피색립, 이물, 조건(특)	
7061	팥	모양, 수분, 정립, 피해립, 이종 곡립, 이종 피색립, 이물, 조건(특)	
7071	녹두	모양, 수분, 정립, 발아율, 피해립, 이종 곡립, 이종 피색립, 이물, 조건(특)	
7081	찰수수쌀	모양, 냄새, 수분, 피해립, 이종 곡립, 메수수쌀, 찌라기, 이물, 돌, 조건(특)	
7091	찰기장쌀	모양, 냄새, 수분, 피해립, 이종 곡립, 메기장쌀 혼입, 찌라기, 기장, 이물, 조건(특)	
7111	메밀	모양, 수분, 피해립, 미숙립, 이종 곡립, 이물, 조건(특)	
7121	옥수수(팝콘용)	모양, 수분, 정립, 피해립, 미숙립, 이종 곡립, 이물, 돌, 조건(특)	
7122	옥수수쌀	모양, 냄새, 수분, 정립, 피해립, 파쇄립, 메옥수수쌀 혼입, 이종 곡립, 이물, 돌, 조건(특)	

출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산물 표준규격(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10-41호)

○ 표준규격의 제·개정 절차



출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http://www.naqs.go.kr/serviceInfo/service_20_01.jsp 2011.11.29. 접속)

그림 2 표준규격의 제·개정 절차

- 규격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고시함
 - 국내에서 생산되어 유통되는 것으로 가공용·수출용에 미적용
 - 대부분 관능검사로 알 수 있는 항목임
 - 당도, 산도 등 맛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항목은 권장으로 표시로 관리함

2.2.2 신선편이농산물 표준규격

- 적용범위 및 대상
 - 적용범위;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적용되며, 포장 단위별로 적용함.
 - 농산물을 편리하게 조리할 수 있도록 세척, 박피, 다듬기 또는 절단과정을 거쳐 포장되어 유통되는 채소류, 서류, 버섯류 등의 농산물을 대상으로 함.

○ 품질(적합) 규격

- 색깔

- ① 농산물 품목별 고유의 색을 유지하여야 함
- ② 절단된 농산물을 육안으로 판정하여 다음과 같은 변색이 나타나지 않아야 함.
 - 엽채류는 핑크색 또는 갈색이 잎의 중앙부(엽맥)까지 확산되지 않아야 함.
 - 엽경채류는 육안으로 판정하여 심한 황색 또는 갈색이 나타나지 않아야 함.
 - 근채류 중 당근은 표면에 백화현상이 심하지 않아야 하고, 무·당근·연근·우엉 등은 절단면에서 갈변이 심하지 않아야 함.
 - 마늘은 녹변 또는 핑크색이 나타나지 않아야 하며, 양파는 색이 검게 나타나지 않고, 파는 황색으로 변하지 않아야 함.
 - 감자·고구마는 갈변과 녹변이 심하지 않아야 함.

- 외관

- ① 병충해, 상해 등의 피해가 발견되지 않아야 함.
- ② 엽채류 잎에 검은반점 또는 물에 잠긴(수침) 증상이 포장된 상태에서 육안으로 발견되지 않아야 함.
- ③ 엽경채류, 근채류, 버섯류 등이 짓물려 있거나 점액물질이 심하게 발견되지 않아야 함.
- ④ 과채류가 지나치게 물러져 주스가 흘러내리지 않아야 함.
- ⑤ 서류는 지나치게 전분질이 나와 표면에 묻어 있지 않아야 함.

- 이물질

- ① 포장된 신선편이 농산물의 원료 이외에 이물질이 없어야 함.

- 신선도

- ① 표면이 건조되어 마른 증상이 없어야 하며, 부패된 것이 나타나지 않아야 함.
- ② 물러지거나 부러짐이 심하지 않아야 함

- 포장상태; 유통 중 포장재에 핀홀(구멍)이 발생하거나 진공포장의 밀봉이 풀리지 않아야 함.

- 이취; 포장재 개봉 직후 심한 이취가 나지 않아야 하며, 이취가 발생하여도 약간만 느끼어 품목 고유의 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함.

○ 포장규격

- 포장재료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기구 및 용기 포장의 기준 및 규격과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

- 포장치수의 길이, 너비는 한국산업규격(KS A1002)에서 정한 수송포장계열치수 69개 모듈(1,100mm×1,100mm)과 표준파렛트(1,100mm×1,100mm)의 적재효율이 90% 이상으로 함. 단, 5kg 소포장 및 속포장 치수는 별도로 제한하지 않음.

- 거래단위는 거래 당사자간의 협의 또는 시장 유통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여 사용할 수 있음.
- 표시사항
 - 출하하는 자가 표준규격품임을 표시할 경우 해당 물품의 포장표면에 “표준규격품”이라는 문구와 함께 품목.산지.품종.등급.무게.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명칭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함. 다만, 품종.등급은 생략할 수 있음.
- 용어의 정의
 - 신선편이 농산물; 농산물을 편리하게 조리할 수 있도록 세척, 박피, 다듬기 또는 절단과정을 거쳐 포장되어 유통되는 조리용 채소류, 서류 및 버섯류 등의 농산물을 말함. 신선편이 농산물에 사용되는 원료 농산물의 분류는 다음과 같음.
 - 채소류; 엽채류(상추, 양상추, 배추, 양배추, 치커리, 시금치 등), 엽경채류(파, 미나리, 아스파라거스, 부추 등), 근채류(무, 양파, 마늘, 당근, 연근, 우영 등), 과채류(오이, 호박, 토마토, 고추, 피망, 수박 등)
 - 서류; 감자, 고구마
 - 버섯류; 느타리버섯, 새송이버섯, 팽이버섯, 양송이버섯 등
 - 변색; 육안으로도 쉽게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농산물 고유의 색이 다른 색으로 변해진 것을 말함.
 - 백화현상(white blush); 당근 절단면이 주로 건조되면서 나타나는 것으로 고유의 색이 하얗게 변하는 것을 말함.
 - 갈변; 절단 된 신선편이 농산물이 주로 효소작용에 의해 육안으로 판정하여 고유의 색이 아닌 붉은 색 또는 갈색을 띠는 것을 말함.
 - 녹색변; 마늘, 감자의 색이 육안으로 판정하여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녹색으로 변한 것을 말함.
 - 검은반점(brown stain); 엽채류에서 산소부족 및 이산화탄소 농도가 매우 높아 옆에 나타나는 것으로 처음에는 갈변의 반점이 나타내고 점차 면적이 커지면서 색이 검게되는 것을 말함.
 - 잠긴(수침) 증상; 신선편이 엽채류의 잎이 더운물에 데친 것 같은 증상을 나타내는 것을 말함.
 - 신선도; 신선편이 가공 직후 제품과 비교하였을 때 육안으로 차이가 없고, 말라서 농산물 중량이 감소하거나 부패된 것이 없는 것을 말함.
 - 마른 증상; 농산물 수분이 감소되어 당초보다 부피가 작아지거나 모양이 변형된 것을 말함.
 - 이취; 포장된 농산물을 개봉하였을 때 신선편이 농산물 고유의 냄새가 아닌 알콜취 등의 다른 냄새를 말함.

2.3 수산물품질관리법³⁾

- 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는 수산물의 품질에 대하여 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에 근거하여 품질인증을 실시하고 있음.

표 9 수산물의 품질인증 품목

구분	품 목	인증표지
수산물 품질인증 (78종)	-건제품(15품목): 마른오징어, 덜마른오징어, 마른옥돔, 마른멸치, 마른한치, 마른 꽃새우, 황태, 황태포, 황태채, 굴비, 마른홍합, 마른굴, 콩치과메기, 마른뱅어포, 덜마른 한치 -염장품(3품목): 간다시마, 간미역, 간고등어 -해조류(9품목): 마른김, 마른돌김, 마른가닥미역, 마른썰은미역, 마른실미역, 마른 다시마, 마른썰은다시마, 찐뚝, 마른김(자반용) -횃감용수산물(23품목): · 신선·냉장품(13): 넙치, 조피볼락, 참돔, 방어, 삼치, 농어, 오징어, 붕장어, 우렁 쉼이, 생굴, 홍어, 병어, 전어 · 냉동품(10): 새조개, 피조개, 새우, 북방대합, 한치, 참치, 학공치, 홍어, 병어, 키조개(개이지살) -냉동수산물(28품목): 고등어, 갈치, 삼치, 뱀장어, 붕장어, 대구, 꽃게, 가자미, 참 조기, 참돔, 눈볼대, 전갱이, 오징어, 문어, 콩치, 청어, 새우, 옥돔, 굴, 병어, 민 어, 홍어, 키조개(개이지살), 전복, 주꾸미, 명태, 붉은대게살(자숙, 각육), 붉은대 게살(자숙, 봉육)	
수산 특산물 품질인증 (11종)	-조미가공품(9품목): 조미취치포, 조미개량조개, 조미오징어, 조미썬은오징어, 조미 늘인오징어, 조미썬은취치포, 조미늘인취치포, 송어(훈제), 산천어(훈제) -해조가공품(2품목): 다시마환, 다시마과립	
수산 전통식품 품질인증 (47종)	-젓갈류(30품목) · 젓갈(24): 오징어, 명란, 창란, 조개, 꼴뚜기, 까나리, 어리굴, 소라, 곤쟁이, 멸 치, 대구아가미, 명태아가미, 토하, 자리, 새우, 오분자기, 뱀뎡이, 자하, 가리비, 청어알, 우렁쉼이(멍게), 갈치숙, 한치, 전복 · 액젓(4): 멸치, 까나리, 청매실멸치, 새우 · 식해(2): 가자미, 명태 -죽류(6품목): 북어, 대구, 전복, 홍합, 대합, 굴 -게장류(3품목): 꽃게, 민꽃게, 참게 -건제품(2품목): 굴비, 마른가닥미역 -기타(6품목): 조미김, 재첩국, 고추장굴비, 양념장어, 부각류(해조류), 어간장	

- 수산물의 표준은 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의 고시로서 수산물품질관리법 제5조에 근거하여 “수산물표준규격”으로 정하고 있음.
 - 포장규격과 등급규격(표 xxx)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음.
 - 포장규격은 한국산업표준에 의하나,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별도로 정함.

표 10 수산물의 표준 항목(등급 규격)

품 목	항 목	비 고
북어	길이, 다른 크기의 혼입율, 색택, 형태 및 크기, 공통규격(향미, 성분, 수분)	
굴비	길이, 다른 크기의 혼입율, 색택, 공통규격(향미, 크기 균일성)	
마른문어	형태, 공팡이·적분 및 백분, 색택, 향미, 공통규격(크기 균일성, 협잡물, 수분)	
생굴	무게, 다른 크기 및 외상 있는 것의 혼입율, 색택, 선도, 공통규격(색과 향미, 품종 혼 입, 부서진 패각 및 협잡물, 수질)	

3) 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 http://www.nfis.go.kr/certify/quality_law.asp 2011.11.29. 접속

품 목	항 목	비 고
바지락	크게, 다른 크기 혼입율, 손상 및 죽은 패각 혼입율, 공통규격(빨, 모래 제거, 크기 균질성 및 다른 종류 혼입, 냄새)	
고막	크게, 다른 크기 혼입율, 손상 및 죽은 패각 혼입율, 공통규격(빨, 모래 제거, 크기 균질성 및 다른 종류 혼입, 냄새)	
새우젓	육질, 숙성도, 다른 종류 및 부서진 것의 혼입율, 공통규격(향미, 변색 및 변질, 정미량)	
멸치젓	육질, 숙성도, 향미, 공통규격(다른 품종 혼입, 색, 변질, 냄새)	
냉동오징어	무게, 다른 크기 혼입율, 섹터, 선도, 형태, 공통규격(크기 균일성, 냄새, 온도)	
간미역	길이, 노시염·총해염·황갈색염 등의 혼입, 색깔, 공통규격(타 품종 혼입, 속줄기 제거, 적절한 자숙·염분 균등 및 물빼기 충분, 온도, 수분, 염분)	

2.4 축산물위생관리법 및 식품위생법

○ 법목적

- 식품위생법;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험을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
- 축산물위생관리법;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축의 사육·도살·처리와 축산물의 가공·유통 및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
-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의 목적과 기준·규격의 적용을 고려할 때 두 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부분의 기준·규격 등은 WTO TBT협정의 기술규정(technical regulation) 또는 위생조치(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 축산물 관련 기준 및 규격 등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제정

- 항생물질·농약 등 유해성 물질의 잔류허용기준, 첨가물의 사용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름
- 축산물의 가공·포장·보존 및 유통의 방법에 관한 기준(가공기준)
- 축산물의 성분에 관한 규격(성분규격)
- 축산물의 위생등급에 관한 기준
- 표시에 관한 기준

○ 식품 관련 기준 및 규격 등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제정

-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하여 제정
-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 성분에 관한 규격

2.4.1 축산물위생관리법

-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은 축산물에 대한 공통 기준·규격을 비롯하여 식품의 유형에 따른 기준·규격을 정하고 있음.
- 정하고 있는 축산물 군은 다음과 같음
 - 유가공품; 우유류, 저지방우유류, 유당분해우유, 가공유류, 산양유, 발효유류, 버터유류, 농축유류, 유크림류, 버터류, 자연치즈, 가공치즈, 분유류, 유청류, 유당, 유단백가수분해식품, 조제유류,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분말류, 아이스크림믹스류
 -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분쇄가공육제품, 갈비가공품, 식육추출가공품, 식용우지, 식용돈지, 포장육 및 공통사항
 - 알가공품
- 공통규격에는 가공기준, 성분규격, 보존 및 유통기준 등이 기술되어 있음.
 - 가공기준; 공통으로 기계·기구류 등 위생적 유지·관리, 먹는물관리법의 수질 기준에 적합한 물 사용 등이 있으며, 유형에 따른 개별 가공 기준을 추가로 제정.
 - 성분규격
 - 일반규격; 식품첨가물, 이물, 미생물, 항생물질 등 잔류허용기준, 방사선 조사기준
 - 병·통조림 축산물; 성상, 진공도, 주석, 납, 세균
 - 레토르트 축산물; 성상, 세균, 타르색소
 - 원유; 약재, 세균수 및 체세포수, 비중, 산도, 알콜, 진애, 관능, 가수 및 가염
 - 식용란; 잔류허용기준, 미생물
 - 기타 축산물; 성상, 이물, 대장균군, 세균수, 타르색소, 합성보존료, 산화방지제
 - 보존 및 유통기준

2.4.2 식품위생법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은 공통 기준·규격을 비롯하여 식품의 유형에 따른 기준·규격을 정하고 있음.
- 식품 일반에 대한 공통 기준 및 규격
 - 식품 원료 기준; 원료 구비요건
 - 제조가공 기준
 - 주원료

- 식품일반의 기준 및 규격; 성상, 일물, 식품첨가물, 식중독균, 중금속, 방사선 조사, 방사능, 곰팡이독소, 패독소, 농약 잔류허용,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 기타 유해물질, 다이옥신, 노로바이러스 등
- 보존 및 유통기준
- 장기보존식품의 기준 및 규격
 - 병·통조림 식품, 레토르트 식품, 냉동식품; 제도가공기준, 규격(성상, 진공도, 주석, 세균), 타르색소, 미생물
- 규격외 일반 가공식품의 기준 및 규격; 성상, 이물, 산가, 과산화물과, 중금속, 대장균군, 세균수, 타르색소
- 식품별 기준 및 규격
 - 식품군에 따라 과자류; 빵 또는 떡류;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잼류; 설탕; 포도당; 과당; 엿류; 당시럽류; 올리고당류; 식육 또는 알가공품; 어육가공품; 두부류 또는 묵류; 식용유지류; 면류; 다류; 커피; 음료류(과일·채소류음료, 탄산음료류, 두유류, 발효음료류, 인삼·홍삼음료, 기타음료); 특수용도식품(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기타 영·유아식, 특수의료용도등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임신·수유부용식품); 장류; 조미식품(식초, 소스류, 토마토케첩, 카레, 고춧가루 또는 실고추, 향신료가공품, 복합조미식품); 드레싱류; 김치류; 젓갈류; 절임식품; 조림식품; 주류(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 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큐르, 기타 주류); 건포류; 기타 식품류(땅콩 또는 견과류 가공품류, 캡슐류, 전분류, 과·채가공품류, 조미김, 튀김식품, 별꿀류, 모조치즈, 식물성크림, 추출가공식품류, 팝콘용옥수수가공품, 식염, 밀가루류, 전쌀, 생식류, 시리얼류, 얼음류, 즉석섭취·편의식품류, 버섯가공식품, 자라가공식품, 효모식품, 효소식품, 화분가공식품)으로 구분.
 - 각 식품군 별로 정의, 원료등의 구비요건, 제조·가공 기준, 식품유형, 규격, 시험방법으로 구성
 - 각 식품군마다 해당 식품의 특성에 따라 일반성분(수분, 회분, 질소화합물, 탄수화물, 지질, 물리적 시험, 화학적 시험), 미량영양성분(무기성분, 비타민류)등을 정하고 있음.
 - 또한, 식품첨가물에 대하여는 보존료, 인공감미료, 산화방지제, 착색료, 발색제 등을 정하고 있음.
 - 미생물에 대하여는 대장균, 유산균, 진균, 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장염비브리오,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대장균 O157:H7, 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 바실러스 세레우스, 캄필로박터 제주니, 클

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엔테로박터 사카자키, 탄저균, 결핵균, 브루셀라, 노로 바이러스 및 장출혈성 대장균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음.

- 수산물에 대한 규격
 - 수산물; 성상, 세균수, 대장균군, 미생물, 일산화탄소, 복어독
 - 한천; 수분, 조단백질, 조회분, 열탕불용해잔사물, 붕산
 - 냉동식용어류머리; 성상, 중금속, 대장균, 세균수, 방사능, 히스타민
 - 냉동식용어류내장; 성상, 중금속, 대장균, 세균수

-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 일반기준
 - 공통 제조기준
 - 용도별 규격
 - 재질별 규격

- 식품접객업소(집단급식소 포함)의 조리식품 등에 대한 기준 및 규격
 - 원료 기준; 원료의 구비요건, 보관 및 저장 등으로 구성
 - 조리 및 관리 기준; 산가 등
 - 규격
 - 조리식품등; 성상, 이물, 대장균, 세균수, 식중독균, 산가 및 과산화물가
 - 접객용음용수; 대장균, 살모넬라, 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
 - 조리기구등; 수족관물(세균수, 대장균군), 행주(대장균), 식기등(살모넬라, 대장균)

3. 민간표준과 정부 규정의 비교

3.1 민간표준과 정부 기준 비교

- 우리나라의 민간표준과 정부표준은 대부분 최종제품의 기준·규격을 정하고 있음.
 - 이러한 특성은 HACCP, GAP 등의 많은 국제적 민간표준이 절차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HACCP, GAP등 절차 기준의 경우 법률적 기준을 정하고 인증도 정부에서 실시하고 민간에게 구체적인 사안과 인증을 민간에게 위탁하고 있는 유럽 등 외국의 사례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다만 다음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별 기업의 표준은 정부표준보다 많은 사항(대부분 상업적 품질에 관한 사항)에 대한 것을 확인하고 있음.
 - 또한 민간단체의 표준은 개별 기업의 표준과 정부기준의 중간정도의 사안을 확인하고 있음.

- 이는 정부의 위생 기준은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민간표준은 지베렐린을 제외하고 식품위생에 대한 언급은 하고 있는 표준은 없음.

· 다만, 병·해충 입은 것, 생리장해 등 일부 관능적으로 판단 가능한 사안이 포함되어 있어 식물위생에 대한 것도 포함되어있다고 볼 수 있음.

표 11 농산물 민간표준과 정부기준 내역 비교

품 목	민간표준(대형유통업체)	민간표준(민간단체)	정부기준(위생기준 제외)
과실류			
사과	부패, 표시사항/포장파손, 냉해/품온, 중량, 과형, 신선도, 변색, 무른과, 상해과, 병/해충 및 생리장해, 열과, 미/과속과	무게기준, 속도, 당도(11브릭스이상-상품), 모양, 색택, 흠집정도, 수축현상, 지베렐린, 봉지재배	날개 무게, 색택, 신선도, 중결점과, 경결점과, 당도(12브릭스-상품)
배	부패/짓무름, 표시사항/포장파손, 냉해/품온, 중량, 과형, 신선도, 변색, 무른과, 상해과, 병/해충 및 생리장해, 열과, 미/과속과	무게기준, 속도, 당도(10.5브릭스이상-상품), 모양, 색택, 흠집정도, 수축현상, 지베렐린, 봉지재배	날개 무게, 색택, 신선도, 중결점과, 경결점과, 당도(10브릭스이상-상품)
감귤	부패, 표시사항/포장파손, 냉해/품온, 중량, 과형, 신선도, 변색, 상해과, 병/해충, 미/과속과	무게기준, 속도, 당도(11브릭스이상-상품), 모양, 색택, 결점과, 산도(2%미만-상품)	날개 무게, 무게, 색택, 향미, 털, 중결점과, 경결점과, 껍질, 꼭지, 당도(9브릭스이상-상품)
참다래	부패, 표시사항/포장파손, 냉해/품온, 중량, 과형, 신선도, 변색, 무른과, 상해과, 병/해충 및 생리장해, 열과, 미/과속과		날개 무게, 무게, 색택, 향미, 털, 중결점과, 경결점과
단감	부패/짓무름, 표시사항/포장파손, 냉해/품온, 중량, 과형, 신선도, 변색, 무른과, 상해과, 병/해충 및 생리장해, 열과, 미/과속과	무게기준, 속도, 당도(11브릭스이상-상품), 모양, 색택, 흠집정도, 수축현상, 지베렐린, 봉지재배	날개 무게, 무게, 색택, 향미, 털, 중결점과, 경결점과, 속도, 당도(11브릭스이상-상품)
복숭아	부패, 표시사항/포장파손, 냉해, 중량, 과형, 신선도, 변색, 무른과, 상해과, 병/해충 및 생리장해, 열과, 미/과속과		날개 무게, 색택, 신선도, 중결점과, 경결점과
채소류			
감자	부패/짓무름, 표시사항/포장파손, 냉해/품온, 중량/규격, 과형, 신선도, 변색, 무른과, 상처/상해, 병충해/생리장애, 발아/개화, 이물질		날개 무게, 무게, 손질, 중결점, 경결점
고추	부패/짓무름, 표시사항/포장파손, 냉해/품온, 중량/규격, 과형, 신선도, 변색, 무른과, 상처/상해, 병충해/생리장애, 발아/개화, 이물질		날개 길이, 길이, 색택, 신선도, 중결점과, 경결점과
호박	부패/짓무름, 표시사항/포장파손, 냉해/품온, 중량/규격, 과형, 신선도, 변색, 무른과, 상처/상해, 병충해/생리장애, 발아/개화, 이물질		날개 길이, 색택, 모양, 신선도, 중결점과, 경결점과
고구마	부패/짓무름, 표시사항/포장파손, 냉해/품온, 중량/규격, 과형, 신선도, 변색, 무른과, 상처/상해, 병충해/생리장애, 발아/개화, 이물질		날개 무게, 무게, 손질, 중결점, 경결점
당근	부패/짓무름, 표시사항/포장파손, 냉해/품온, 중량/규격, 과형, 신선도, 변색, 무른과, 상처/상해, 병충해/생리장애, 발아/개화, 이물질		날개 무게, 색택, 모양, 손질, 중결점, 경결점
대파	부패/짓무름, 표시사항/포장파손, 냉해/품온, 중량/규격, 과형, 신선		날개 크기(지름), 크기, 모양, 색택, 손질, 중결점구, 경결점구

품 목	민간표준(대형유통업체)	민간표준(민간단체)	정부기준(위생기준 제외)
	도, 변색, 무른과, 상처/상해, 병충해/생리장애, 발아/개화, 이물질		
새송이버섯	부패/짓무름, 표시사항/포장파손, 냉해/품온, 중량/규격, 과형, 신선도, 변색, 상처/상해, 병충해/생리장애, 이물질	저장능력, 저장온도, 모양, 선택, 흠집정도	
팽이버섯	부패/짓무름, 표시사항/포장파손, 냉해/품온, 중량/규격, 과형, 신선도, 변색, 상처/상해, 병충해/생리장애, 이물질	갓모양, 갓크기, 선택, 흠집정도	갓 모양, 갓 크기, 선택, 신선도, 이물, 중결점, 경결점
배추	부패/짓무름, 표시사항/포장파손, 냉해/품온, 중량/규격, 신선도, 변색, 상처/상해, 병충해/생리장애, 발아/개화, 이물질		날개 무게, 무게, 결구, 신선도, 등기, 중결점, 경결점
양파	부패/짓무름, 표시사항/포장파손, 냉해/품온, 중량/규격, 과형, 신선도, 변색, 무른과, 상처/상해, 병충해/생리장애, 발아/개화, 이물질		날개 크기(지름), 크기, 모양, 선택, 손질, 중결점구, 경결점구

- 우리나라의 민간표준과 정부 기준의 차이 요약.

표 12 우리나라의 정부기준과 차이가 있는 민간표준 현황 요약

품 목	민간표준(대형유통업체)	민간표준(민간단체)	비고
농산물	수입과실류: 바나나, 체리, 메론, 파인애플, 오렌지, 망고(6개 품목)	과실류: 배, 사과, 단감, 감귤, 딸기(5개 품목)	※실제 백화점과 대형유통업체의 민간표준은 대외비로 밝히지 않았을 뿐 대부분 농수축산물에 대해 정부기준보다 심화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국내과실류: 사과, 배, 수박, 머스크메론, 딸기, 참다래, 홍시, 복숭아(8개 품목)		
	채소류: 감자, 고추, 호박, 고구마, 당근, 대파, 브로콜리, 팽이버섯, 배추, 시금치, 양파(11개 품목)		
수산물	굴, 냉동낙지, 홍합살, 갈치, 바지락, 피황합, 삼치(7개 품목)		※수산물의 경우 협의회(민간단체)가 많지 않으며 자체 민간기준을 설정하지 않았음
축산물	삼겹살, 돈육등갈비, 수입육차돌박이, 우육안심, 계육(5개 품목)		※축산물의 경우 협의회(민간단체)가 많지 않으며 자체 민간기준을 설정하지 않았음

3.2 민간표준의 영향

○ 농산물

- 농산물의 경우 민간표준이 개별적인 협의회 형태로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어서 수출품과 내수용으로 구분되어 정하고 있음.
 - 그러나 많은 경우 내수용에 대한 별도의 검증 또는 인증 표시는 없음.
- 대형유통업체의 경우는 제품의 품질을 위하여 매우 세세하게 표준이 제정되어 있어, 정부의 품질기준보다 세밀하게 되어 있음.

- 수산물과 축산물의 경우 민간 협의회 구성이 어느 정도는 되어있으나 대체로 민간기준 규격은 미비하며 국가 정부 기준과 동일.
- 국제적으로는 민간표준의 장단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음.

표 13 민간표준의 장단점

단점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간표준은 항상 과학에 근거하지는 않는다. -국제적인 표준 혹은 공식적인 정부의 요구사항으로부터 벗어나있다. (예를 들면 maximum residue limits) -민간표준을 준수하는데 특별히 많은 수의 표준에 대해서 인증 받을 때 공급업자에게 민간표준을 준수하고 인증을 받는데 비용이 소요된다. -투명성, 협의, 혹은 시스템 없이 만들어진다. -다른 수단에 의해서 얻어진 동일 결과가 인식되어야만 하는 원칙을 무시하고 어떤 수단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미리 규정한다. -개발도상국에서 중소생산업자와 수출업자에게 불균형한 부담을 부과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간표준은 공급업자가 어떻게 이들 표준이 달성될 수 있는지 방법을 알고자 할 때 국가적, 국제적 표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돕는다. -민간표준은 최상의 실행을 증진하고 생산성을 개선시킬 수 있다. -민간표준은 브랜드에 더 나은 평판을 얻게 하고 공급업자가 시장에 접근하고 신뢰를 획득할 수 있도록 돕는다. -민간표준은 새롭게 빠르게 대두하는 위해를 강조하고, 부족한 자료를 채울 수 있도록 하며, 국제표준에 대해서 쉽게 채택할 수 있도록 한다.

- 개발도상국의 민간표준에 의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음.

표 14 개발도상국 입장에서 민간표준이 야기하는 문제점

문제점	세부적 문제	구체적 내용
경제적 비용	비지속적 비용	실험실 인프라 구조, 가공시설의 업그레이드, 새로운 절차, 관리 인력의 훈련, 새로운 관리 체계 설계
	지속적 비용	정기적 관리 체계 유지, 실험실 검사, 기록 유지, 이력 추적제 시행
기술·관리 복잡성	행정적 복잡성	기록유지 필요성 이해시켜야 함, 기록유지 교육에 시간과 인력 소요, 인증검사 수행에 시간 요구, 문서 종류 다양 기술 지원 필수
	기술적 어려움	BRC 예: 금속성분 추적, 상품리콜, 포장, 살균, 질병통제, 내부검사, 이력추적제, 품질 측정, 소비자 불만 접수 및 처리 등(포장센터 설비)
무역 장벽	소규모 농장(0.3-0.8ha)	무상지원 없을 때 자본 비용 58-160%, 즉 소규모 농장에 무역 장벽으로 작용
	중규모 농장(1-1.8ha)	무상지원 없을 때 자본 비용 26-41%
	대규모 농장(2-6ha)	무상지원 없을 때 자본 비용 8-23%
적법성	SPS	-EurepGAP이 SPS나 TBT보다 엄격하다고 2005년 7월 자마이카, 페루, 에콰도르, 아르헨티나는 SPS위원회에서 이의 제기 -이들은 SPS 협정문 제13조 ("협정 회원국들은 자국 영토안에 소재한 비정부 기구(non-governmental entities)나 그것들이 모여서 구성한 지역협의체(regional bodies)가 본 협정의 관련조항을 준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활용 가능한 합리적인 수단들을 취할 수 있다."수정 요구. -EurepGAP이 비정부적 실체인지 여부 해석에 따라 규제 근거가 달라짐.
	TBT	-TBT는 위해가 있는 제품에 대한 위생조치의 동등성을 요구하는데 EurepGAP은 생산체계에 대한 위생조치의 동등성 요구하므로 식품안전을 보장하는데 꼭 필요한 조치인가? 그리고 EurepGAP이 식품안전에 필요한 유일한 조치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

출처; EC, Private Food Standards and their Impacts on Developing Countries

- 이러한 문제점은 비록 개발도상국에 대하여 조사되었으나 소규모 농장에 대한 문제는 우리나라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특히, 경제적 비용과 기술·관리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와 같이 별도의 직원이 거의 없는 자영농의 경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4. 농식품의 수출입

- 농식품의 수출입 동향은 다음과 같음.(세부내역은 별첨)
 - 5년간 수출액이 가장 많은 품목은 어류이며, 다음은 연초, 연체동물, 과자류, 주류, 채소류, 기타조제농산물, 면류, 당류, 커피류의 순임
 - 5년간 수입액이 가장 많은 품목은 곡류이며, 다음은 포유가축육류, 어류, 박류, 기타목재, 과일류, 당류, 원목, 식물성유지, 두류의 순임
 - 5년간 수입대비 수출액 비중은 21.2%로 수입액이 수출액의 약 5배임.
 - 5년간 수입대비 수출비율이 가장 큰 품목은 인삼류로 약 23배의 수출을 하였으며, 다음은 한탄, 해조류, 기타수산물, 면류, 화훼류, 버섯류, 연초류, 빵류제조용, 과자류의 순임.
 - 과자류의 경우 수입대비 수출비율이 114%로 다음의 소오스류(86.0%)부터는 수입이 수출보다 많음
 - 한편 5년간 수입대비 수출비율이 가장 작은 품목은 양서류육류, 양서류, 기타수산물, 기타조류, 엽류, 환형동물, 기타산동물, 곤충류, 꿀류, 과충류, 등나무류, 칩·삭편상의 목재로서 수출은 없으며 미미한 양의 수입이 있었음.

표 15 농식품의 3년간 수출입 동향

(단위: 백만불, %)

	2008년			2009년			2010년		
	수출	수입	수출/수입	수출	수입	수출/수입	수출	수입	수출/수입
농림축수산물	4,496.50	23,198.60	19.4%	4,809.30	21,240.90	22.6%	5,880.00	25,787.20	22.8%
농산물	2,714.70	13,904.50	19.5%	2,990.80	11,753.60	25.4%	3,721.60	13,987.80	26.6%
축산물	215.1	3,352.20	6.4%	139.6	2,485.10	5.6%	146.1	3123	4.7%
임산물	118.5	2,863.60	4.1%	167.7	4,107.80	4.1%	214.1	5,219.10	4.1%
수산물	1,448.30	3,078.30	47.0%	1,511.20	2,894.40	52.2%	1,798.20	3,457.30	52.0%

자료: 농림수산물부, 농림수산물 주요통계(2011)

- 수출이 많은 품목 중 연초, 과자류 및 면류는 수출이 수입보다 많았으며, 나머지 품목들도 수입량 대비 수출량이 40%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표 16 5년간 수출상위 품목의 수출대비 수입액 비율

(단위: 백만불, %)

수출순위	품목	수출액	수입액	수출/수입
1	어류	4,197.6	8,503.8	49.4%
2	연초류	2,248.1	1,448.2	155.2%
3	연체동물	1,353.4	2,429.8	55.7%
4	과자류	1,219.4	1,068.2	114.2%

5	주류	1,175.7	2,877.8	40.9%
6	채소류	1,161.9	2,868.5	40.5%
7	기타조제농산품	1,043.6	1,575.4	66.2%
8	면류	993.1	414.1	239.8%
9	당류	954.8	3,919.1	24.4%
10	커피류	903.5	1,491.2	60.6%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 주요통계(2011) 자료 재구성

- 수입이 많은 품목중 어류, 과일류 및 당류만이 수입대비 수출액이 10%을 넘고 있으며, 곡류, 원목, 두류는 1%도 되지 않음.

표 17 5년간 수입상위 품목의 수출대비 수입액 비율

(단위: 백만불, %)

수입순위	품목	수출액	수입액	수출/수입
1	곡류	100.1	15,982.0	0.6%
2	포유가축육류	97.2	9,073.1	1.1%
3	어류	4,197.6	8,503.8	49.4%
4	박류	91.1	5,680.7	1.6%
5	기타목재	231.5	4,326.6	5.4%
6	과실류	766.2	4,052.0	18.9%
7	당류	954.8	3,919.1	24.4%
8	원목	1.3	3,854.4	0.0%
9	식물성유지	90.1	3,666.6	2.5%
10	두류	5.2	2,980.4	0.2%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 주요통계(2011) 자료 재구성

제Ⅲ장 민간표준의 국제 동향

1. 표준 등의 정의

1.1 WTO협정

-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중 본 연구과 관계있는 협정은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SPS협정)이나 이와 유사한 기술적 표준에 대한 협정은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협정)가 있음.

1.1.1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에서의 정의

- SPS협정에서의 SPS조치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 - 아래 목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조치(Sanitary or phytosanitary measure - Any measure applied)
 - 가. 병해충, 질병매개체 또는 질병원인체의 유입, 정착 또는 전파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회원국 영토내의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의 보호, ((a) to protect animal or plant life or health within the territory of the Member from risks arising from the entry, establishment or spread of pests, diseases, disease-carrying organisms or disease-causing organisms;)
 - 나. 식품, 음료 또는 사료내의 첨가제, 오염물질, 독소 또는 질병원인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회원국 영토내의 인간 또는 동물의 생명 또는 건강의 보호, ((b) to protect human or animal life or health within the territory of the Member from risks arising from additives, contaminants, toxins or disease-causing organisms in foods, beverages or feedstuffs;)
 - 다. 동물, 식물 또는 동물 또는 식물로 만든 생산품에 의하여 전달되는 질병이나 해충의 유입, 정착 또는 전파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회원국 영토내의 인간의 생명 또는 건강의 보호, 또는((c) to protect human life or health within the territory of the Member from risks arising from diseases carried by animals, plants or products thereof, or from the entry, establishment or spread of pests; or)
 - 라. 해충의 유입, 정착 또는 전파로 인한 회원국 영토내의 다른 피해의 방지 또는 제한((d) to prevent or limit other damage within the territory of the Member from the entry, establishment or spread of pests.)
-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는 모든 관련 법률, 법령, 규정, 요건 및 절차를 포함하며, 특히, 최종제품 기준, 가공 및 생산방법, 시험, 조사, 증명 및 승인절차, 동물

또는 식물의 수송 또는 수송중 생존에 필요한 물질과 관련된 적절한 요건을 포함한 검역처리, 관련 통계방법, 표본추출절차 및 위험평가 방법에 관한 규정, 식품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포장 및 상표부착을 포함한다.(Sanitary or phytosanitary measures include all relevant laws, decrees, regulations, requirements and procedures including, inter alia, end product criteria; processes and production methods; testing, inspection, certification and approval procedures; quarantine treatments including relevant requirements associated with the transport of animals or plants, or with the materials necessary for their survival during transport; provisions on relevant statistical methods, sampling procedures and methods of risk assessment; and packaging and labelling requirements directly related to food safety.)

- 국제표준, 지침 및 권고(international standards, guidelines and recommendations)
 - 가. 식품안전의 경우, 식품첨가제, 수의약품과 농약의 잔류물, 오염물질, 분석 및 표본추출방법, 위생 관행의 규약 및 지침에 관한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 의해 수립된 표준 지침 및 권고((a) for food safety, the standards, guidelines and recommendations established by the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relating to food additives, veterinary drug and pesticide residues, contaminants, methods of analysis and sampling, and codes and guidelines of hygienic practice;)
 - 나. 동물위생 및 동물성전염병의 경우, 국제수역사무국의 후원 하에 개발된 표준, 지침 및 권고((b) for animal health and zoonoses, the standards, guidelines and recommendations developed under the auspices of the International Office of Epizootics;)
 - 다. 식물위생의 경우, 국제식물보호협약의 틀내에서 운영되는 지역기구와의 협조와 국제식물보호협약 사무국의 후원 하에 개발된 국제표준, 지침 및 권고, 그리고((c) for plant health, the international standards, guidelines and recommendations developed under the auspices of the Secretariat of the 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 in cooperation with regional organizations operating within the framework of the 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 and)
 - 라. 위의 기구의 대상이 아닌 사항의 경우, 모든 회원국에게 가입이 개방된 다른 관련 국제기구에 의해 공포된 적절한 표준, 지침 및 권고로서 위원회에 의해 확인된 것((d) for matters not covered by the above organizations, appropriate standards, guidelines and recommendations promulgated by other releva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pen for membership to all Members, as identified by the Committee.)

1.1.2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 TBT협정에서 표준 관련 정의는 다음과 같음.

○ 기술규정(technical regulation)

적용가능한 행정규정을 포함하여 상품의 특성 또는 관련 공정 및 생산방법이 규정되어 있으며 그 준수가 강제적인 문서. 이는 또한 상품, 공정 및 생산방법에 적용되는 용어, 기호, 포장, 표시, 또는 상표부착요건을 포함하거나 전적으로 이들만을 취급할 수 있다. (Document which lays down product characteristics or their related processes and production methods, including the applicable administrative provisions, with which compliance is mandatory. It may also include or deal exclusively with terminology, symbols, packaging, marking or labelling requirements as they apply to a product, process or production method.)

주석(explanatory note)

국제표준화기구/국제전기기술표준위원회 지침서2에서의 정의는 자체로서 완비된 것이 아니며 소위 "단계적 구축방식"에 기초한다. (The definition in ISO/IEC Guide 2 is not self-contained, but based on the so-called "building block" system.)

○ 표준(standard)

규칙, 지침 또는 상품의 특성 또는 관련 공정 및 생산방법을 공통적이고 반복적인 사용을 위하여 규정하는 문서로서, 인정된 기관에 의하여 승인되고 그 준수가 강제적이 아닌 문서. 이는 또한 상품, 공정 또는 생산방법에 적용되는 용어, 기호, 포장, 표시 또는 상표부착요건을 포함하거나 전적으로 이들만을 취급할 수 있다. (Document approved by a recognized body, that provides, for common and repeated use, rules, guidelines or characteristics for products or related processes and production methods, with which compliance is not mandatory. It may also include or deal exclusively with terminology, symbols, packaging, marking or labelling requirements as they apply to a product, process or production method.)

주석(explanatory note)

국제표준화기구/국제전기기술표준위원회 지침서 2에 정의된 용어는 상품, 공정 및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 이 협정은 상품 또는 공정 및 생산방법과 관련한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판정절차만을 취급한다. 국제표준화기구/국제전기기술표준위원회 지침서 2에 정의된 표준은 강제적일 수도 있고 자발적일 수도 있다. 이 협정의 목적상 표준은 자발적인 문서, 기술규정은 강제적인 문서로 정의된다. 국제표준 공동체에 의하여 준비된 표준은 컨센서스에 기초한다. 이 협정은 컨센

서스에 기초하지 아니한 문서도 대상으로 한다.(The terms as defined in ISO/IEC Guide 2 cover products, processes and services. This Agreement deals only with technical regulations, standards and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related to products or processes and production methods. Standards as defined by ISO/IEC Guide 2 may be mandatory or voluntary. For the purpose of this Agreement standards are defined as voluntary and technical regulations as mandatory documents. Standards prepared by the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community are based on consensus. This Agreement covers also documents that are not based on consensus.)

1.1.3 WTO협정에서의 민간표준

- SPS협정은 민간 표준 관련하여 제13조에서 간단히 언급하고 있음

제13조 이행(implementation)

회원국은 이 협정에 따라 이 협정에 규정된 모든 의무의 준수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회원국은 중앙정부기관 이외의 기구에 의한 이 협정의 규정의 준수를 지원하는 적극적인 조치 및 제도를 입안하여 시행한다. 회원국은 자기나라의 영토내의 관련 기관이 회원인 지역기구 및 자기나라의 영토내의 비정부기구가 이 협정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이용 가능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 또한 회원국은 이러한 지역기구, 비정부기구 또는 지역정부기구가 이 협정의 규정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장려하는 효과를 가지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다. 회원국은 비정부 기구가 이 협정의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의 이행을 위하여 동 기구의 서비스에 의존한다는 것을 보장한다.

Members are fully responsible under this Agreement for the observance of all obligations set forth herein. Members shall formulate and implement positive measures and mechanisms in support of the observance of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by other than central government bodies. Members shall take such reasonable measures as may be available to them to ensure that non-governmental entities within their territories, as well as regional bodies in which relevant entities within their territories are members, comply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In addition, Members shall not take measures which have the effect of, directly or indirectly, requiring or encouraging such regional or non-governmental entities, or local governmental bodies, to act in a manner inconsistent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Members shall ensure that they rely on the services of nongovernmental entities for implementing sanitary or phytosanitary measures only if these entities comply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 TBT협정은 비정부 기관에 의한 표준의 준비, 채택 및 적용에 대하여 제4조에서 정하고 있음.

제4조 표준의 준비, 채택 및 적용

4.1 회원국은 자기나라의 중앙정부표준기관이 이 협정의 부속서 3의 표준의 준비, 채택 및 적용에 대한 모범관행규약(이 협정에서는 "모범관행규약" 이라 한다)을 수용하고 이를 준수할 것

을 보장한다. 회원국은 자기나라 영토내의 지방정부 또는 비정부 표준기관과, 회원국이나 자기나라 영토내의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기관이 회원인 지역표준기관이 이 모범관행규약을 수용하고 준수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능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 또한 회원국은 이러한 표준기관이 모범관행규약에 일치하지 않는 방법으로 행동하는 것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장려하는 효과를 갖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특정 표준기관이 모범관행규약을 수용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표준기관의 모범관행규약의 규정 준수와 관련된 회원국의 의무는 적용된다.

4.2 회원국은 모범관행규약을 수용하고 이를 준수하고 있는 표준기관은 이 협정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1.2 국제표준화기구의 정의

-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ISO)에서의 표준 정의는 Standardization and related activities - General vocabulary(ISO/IEC Guide 2:2004)⁸⁾에 기술되어 있음.
 - 우리나라는 '표준화 및 관련 활동 - 일반 어휘'(KS A ISO IEC Guide 2)⁹⁾에서 국제표준인 ISO 표준과 일치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있음.
 - 이 지침은 표준의 정의로 국제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음.
 - 주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 표준화(standardization)(1.1)
 -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주어진 범위 내에서 최적 수준을 성취할 목적으로, 공통적이고 반복적인 사용을 위한 규정을 만드는 활동.(activity of establishing, with regard to actual or potential problems, provisions for common and repeated use, aimed at the achievement of the optimum degree of order in a given context)
 - 비고; 1. 표준을 공식화 하고 발행하고 이행하는 과정들로 이루어진 활동 (In particular, the activity consists of the processes of formulating, issuing and implementing standards)
 - 2. 표준의 중요한 이익은 제품, 프로세스 또는 서비스를 본래의 의도된 목적에 적절하도록 개선하고, 무역에 대한 장벽을 방지하며 기술적 협력을 촉진하는 것이다.(Important benefits of standardization are improvement of the suitability of products, processes and services for their intended purposes, prevention of barriers to trade and facilitation of technological cooperation.)
- 합의(consensus); 핵심적인 문제 대한 주요 이해당사자의 지속적인 반대가 없으며, 관여하는 모든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아울러 모든 상충되는 논쟁요

소들에 대한 화합을 이룬 총괄적인 의견 일치(1.7)(general agreement, characterized by the absence of sustained opposition to substantial issues by any important part of the concerned interests and by a process that involves seeking to take into account the views of all parties concerned and to reconcile any conflicting arguments)

- 비고; 합의는 만장일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Consensus need not imply unanimity.)(KS 표준에는 없음)

○ 표준(standard)(3.2)

- 합의에 의해 작성되고 인정된 기관에 의해 승인되었으며, 주어진 범위 내에서 최적 수준의 성취를 목적으로 공통적이고 반복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규칙, 지침 또는 특성을 제공하는 문서(document, established by consensus and approved by a recognized body, that provides, for common and repeated use, rules, guidelines or characteristics for activities or their results, aimed at the achievement of the optimum degree of order in a given context)

- 비고; 표준은 과학, 기술 및 경험에 대한 총괄적인 발견사항들에 근거하여야 하며, 공동체 이익의 최적화 촉진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Standards should be based on the consolidated results of science, technology and experience, and aimed at the promotion of optimum community benefits)

○ 공적으로 이용 가능한 표준(Publicly available standards)(3.2.1)

- 비고; 표준은 그 지위로 인하여 그 공개적 가용성, 개정본 및 수정본이 필요한 경우, 지역, 국제, 국가 및 지방표준(3.1.1.1, 3.1.1.2, 3.1.1.3, 및 3.1.1.4)에 맞추어 최신을 유지되어야 하며, 이로써 인정된 기술규칙이 된다고 추정된다.(By virtue of their status as standards, their public availability and their amendment or revision as necessary to keep pace with the state of the art, international, regional, national and provincial standards (3.2.1.1, 3.2.1.2, 3.2.1.3 and 3.2.1.4) are presumed to constitute acknowledged rules of technology.)

- 국제 표준(international standard); 국제적 표준화/표준 기관에 의해 채택되고 공개된 표준(standard that is adopted by an international standardizing/standards organization and made available to the public)(3.1.1.1)

- 지역 표준(regional standard); 지역 표준화/표준 기관에 의해 채택되고 공개된 표준(standard that is adopted by a regional standardizing/standards organization and made available to the public)(3.1.1.2)

- 국가 표준(national standard); 국가 표준 기관에 의해 채택되고 공개된 표준 (standard that is adopted by a national standards body and made available to the public)(3.1.1.3)
 - 지방 표준(provincial standard); 한 국가의 특정한 영토 내에서 채택되고 공개된 표준(standard that is adopted at the level of a territorial division of a country and made available to the public)(3.1.1.4)
- 기타 표준(3.2.2)
- 비고; 표준은 또한 다른 근거에 의해 채택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부문 표준 및 회사 표준이 그것이다. 그러한 표준들은 몇몇 국가들을 포괄하는 지역적 영향력을 갖고 있다.(Standards may also be adopted on other bases, e.g. branch standards and company standards. Such standards may have a geographical impact covering several countries.)
- 기술 사양(technical specification); 제품, 프로세스 또는 서비스에 의해 충족되어야 하는 기술적인 요구사항들을 규정한 문서(document that prescribes technical requirements to be fulfilled by a product, process or service)(3.4)
- 비고; 1. 기술시방은 가능한 경우 언제나, 요구사항들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절차를 제시하여야 한다.(A technical specification should indicate, whenever appropriate, the procedure(s) by means of which it may be determined whether the requirements given are fulfilled.)
 - 2. 하나의 기술시방은 하나의 표준이 될 수 있으며, 아울러 표준의 일부 또는 표준으로부터 독립된 것이 될 수 있다.(A technical specification may be a standard, a part of a standard or independent of a standard.)
 - 3. 비고 3.은 러시아어 판에만 적용된다.(Note 3 applies to the Russian version only.)
- 관행 규약(code of practice); 장비, 구조물 또는 제품의 디자인, 제조, 설치, 유지 또는 활용을 위한 관행 및 절차를 제시해주는 문서(document that recommends practices or procedures for the design, manufacture, installation, maintenance or utilization of equipment, structures or products)(3.5)
- 비고; 관행규약은 표준이 될 수 있으며, 아울러 표준의 일부 또는 표준으로부터 독립된 것이 될 수 있다.(A code of practice may be a standard, a part of a standard or independent of a standard.)

- 강제 규정(regulation); 당국에 의해 채택되는, 법적으로 강제적인 규정을 제공하는 문서(document providing binding legislative rules, that is adopted by an authority)(3.6)
- 기술 규정(technical regulation); 표준, 기술시방 또는 관행규약의 내용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인용하거나 또는 포괄한 기술 요구사항을 제공하는 강제규정 (regulation that provides technical requirements, either directly or by referring to or incorporating the content of a standard, technical specification or code of practice)(3.6.1)
 - 비고; 기술규정은, 예를 들면 “규정을 만족하는 것으로 간주된다”라는 문구처럼 특정한 충족수단을 제시해 주는 기술적인 지침을 담고 있을 수 있다.(A technical regulation may be supplemented by technical guidance that outlines some means of compli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regulation, i.e. deemed-to-satisfy provision.)
- 표준의 강제규정 책임기관(Bodies responsible for standards and regulations)(4.)
 - 기관(body); 특정한 임무를 갖고 특정한 구조로 되어 있는(표준 및 강제규정에 책임이 있는) 법적 또는 행정적인 기관(<responsible for standards and regulations> legal or administrative entity that has specific tasks and composition)(4.1)
 - 비고; 기관의 예를 들면 조직, 당국, 회사 및 재단(Examples of bodies are organizations, authorities, companies and foundations.)
 - 조직(organization); 타 기관 또는 인원의 회원이며 자체 정관 및 행정조직을 갖춘 기관(body that is based on the membership of other bodies or individuals and has an established constitution and its own administration)(4.2)
 - 표준화 기관(standardizing body); 표준화에 있어서 인정된 활동을 하는 기관 (body that has recognized activities in standardization)(4.3)
 - 표준 기관(standards body); 국가적, 지역적 및 국제적 차원에서 안정되고, 정관에 따라 공개 대상 표준의 작성, 승인 또는 채택을 기본 기능으로 갖고 있는 표준화 기관(standardizing body recognized at national, regional or international level, that has as a principal function, by virtue of its statutes, the preparation, approval or adoption of standards that are made available to the public)(4.4)
 - 당국(authority); 법적 힘과 권리를 가진 기관(body that has legal powers and rights)(4.5)

- 비교; 당국은 지역, 국가 또는 지방별 당국이 있을 수 있다.
- 표준의 유형(types of standards)(5.)
 - 비교; 다음의 용어 및 정의는 표준의 체계적인 분류 또는 포괄적으로 가능한 유형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들은 단지 공통적인 유형들만을 제시한다. 이들은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다. 예를 들면, 특정한 제품표준은 제품의 특성을 위한 시험방법을 제공할 경우 시험표준으로도 간주될 수 있다.(The following terms and definitions are not intended to provide a systematic classification or comprehensive list of possible types of standards. They indicate some common types only. These are not mutually exclusive; for instance, a particular product standard may also be regarded as a testing standard if it provides test methods for characteristics of the product in question.)
 - 기본 표준(basic standard); 넓은 범위의 적용범위 또는 특정한 한 분야를 위한 일반적인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표준(standard that has a wide-ranging coverage or contains general provisions for one particular field)(5.1)
 - 비교; 기본 표준은 직접적인 적용을 위한 표준으로서 또는 타 표준을 위한 근간으로서의 기능을 가질 수 있다.(A basic standard may function as a standard for direct application or as a basis for other standards.)
 - 용어 표준(terminology standard); 용어에 대한 표준으로서 주로 정의를 수반하며, 가끔 설명적인 비교, 예시 및 예문 등을 수반한다.(standard that is concerned with terms, usually accompanied by their definitions, and sometimes by explanatory notes, illustrations, examples, etc.)(5.2)
 - 시험 표준(testing standard); 시험방법에 대한 표준으로서, 가끔 표본추출, 통계적 방법의 사용, 시험순서와 같이 시험에 관한 타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standard that is concerned with test methods, sometimes supplemented with other provisions related to testing, such as sampling, use of statistical methods, sequence of tests)(5.3)
 - 제품 표준(product standard); 목적에 대한 적합성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품 또는 제품그룹에 의해 충족되어야 하는 요구사항들을 규정한 표준(standard that specifies requirements to be fulfilled by a product or a group of products, to establish its fitness for purpose)(5.4)
 - 비교; 1. 제품 표준은 목적에의 적합성이라는 요구사항 이외에도 용어, 표준추출, 시험, 포장 및 라벨부탁 및 가끔 프로세스 요구사항들을 포함할 수 있다.(A product standard may include in addition to

the fitness for purpose requirements, directly or by reference, aspects such as terminology, sampling, testing, packaging and labelling and, sometimes, processing requirements.)

2. 제품 표준은 필요한 요구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규정하는냐에 따라 완전한 것이 될 수도 있고 불완전한 것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품 표준은 치수, 자재 및 기술전달 표준과 같이 표준들 간에도 상호 다를 수 있다.(A product standard can be either complete or not, according to whether it specifies all or only a part of the necessary requirements. In this respect, one may differentiate between standards such as dimensional, material, and technical delivery standards.)

- 프로세스 표준(process standard); 목적에 대한 적합성을 달성하기 위하여 프로세스에 의해 충족되어야 하는 요구사항들을 규정한 표준(standard that specifies requirements to be fulfilled by a process, to establish its fitness for purpose)(5.5)
- 서비스 표준(service standard); 목적에 대한 적합성을 달성하기 위하여 서비스에 의해 충족되어야 하는 요구사항들을 규정한 표준(standard that specifies requirements to be fulfilled by a service, to establish its fitness for purpose)(5.6)
 - 비고; 서비스 표준은 세탁, 호텔관리, 운송, 자동차 장비, 통신, 보험, 은행, 무역과 같은 분야에서 작성될 수 있다.(Service standards may be prepared in fields such as laundering, hotel-keeping, transport, car-servicing, telecommunications, insurance, banking, trading.)
- 인터페이스 표준(interface standard); 제품 또는 시스템이 상호 연결되는 시점에서 적합성에 관한 요구사항을 규정한 표준(standard that specifies requirements concerned with the compatibility of products or systems at their points of interconnection)(5.7)
- 제공 데이터에 대한 표준(standard on data to be provided); 제품, 프로세스 또는 서비스를 규정하기 위한 치수 및 기타 데이터를 기술하기 위한 특성의 목록을 가진 표준(standard that contains a list of characteristics for which values or other data are to be stated for specifying the product, process or service)(5.8)
 - 비고; 일부 표준은 전형적으로 공급자가 기술하여야 하는 데이터를 제공하며, 일부는 구매자가 기술하여야 하는 데이터를 제공한다.(Some standards, typically, provide for data to be stated by suppliers, others by purchasers.)

- 기타 용어의 정의
 - 표준의 조화
 - 인용문서의 내용
 - 인용문서의 작성
 - 인용문서의 이행
 - 강제규정에 있어서의 표준의 인용
 - 적합성 평가 일반
 - 특성의 결정
 - 적합성의 보증
 - 승인 및 인정 협약
 - 적합성 평가기관 및 인원의 인정

1.3 기타 국제기구 정의

1.3.1 국제식품규격위원회

-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Codex)의 사무국은 제33차 총회에서 민간표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문서를 제공함¹⁰⁾.
 - 민간표준은 영리(영업자) 또는 비영리 비정부 기구가 디자인하고 소유하는 표준으로, 개별 기업 표준, 종합적 국가 표준 및 종합적 국제 표준으로 분류하고 있음.
 - 이러한 표준은 목적, 범위, 표준을 소유한 자의 성질 등에 따라 매우 다를 수 있음.
 - 비영리 NGO(non government organization)가 개발하는 민간 표준은 노동과 사회적 이슈를 포함하며 지속발전과 윤리적 실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음.
 - 개별 기업 또는 협회 등의 식품영업자가 제정하는 표준은 제품의 차별화와 공급의 원활화를 위한 목적이 많음.
- 같은 문서에서 민간표준의 형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함.
 - 식품의 특정 특성의 측정과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을 포함하는 오염 한도 또는 최대잔류허용량과 같은 제품의 특성 요건을 정의하는 숫자 표준(numerical standard)
 - 숫자로 표현될 수도 있는 제품이 어떻게 가공되어야 한다는 확인 가능한 시행 실적을 포함하는 공정 표준(process standards)
 - 문서관련 요건을 포함하는 관리 시스템의 요건을 정의하는 공정 표준(process standard)

표 18 Codex 표준과 중요 민간 식품안전표준간의 주요 사안 비교

	GFSI 조사 표준 ¹⁾						국제표준	
	BRC	IFS	SQF 2000	FSSC 22000	GlobalGAP ²⁾	SQF 1000	ISO 22000	Codex 위생지침 및 기타 표준
해당 지역	영국시장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 호주	유럽	국제(유럽 이 주축)	미국, 호주	국제	국제
소유자	영국 소매업자 및 무역 협회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소매업자 협회	미국 소매업자 협회	Foundation for Food Safety Certification	유럽 소매업자 협회	미국 소매업자 협회	International Standards Organization	FAO/WHO
회원	Tesco, Sainsbury's, Marks & Spencers	Carrefour, Tesco, Ahold, Wal Mart, Metro, Migros 및 Delhaize	Ahold, Carrefour, Delhaize, Metro, Migros, Tesco 및 Wal-Mart	(ISO 22000 및 BSI PAS 220에 기초)	Ahold, Aldi, ASDA, COOP, Conad, Migros, Metro, Marks & Spencers, Sainsbury's, SPAR, Tesco, Tegelmann, US Food Service	Ahold, Carrefour, Delhaize, Metro, Migros, Tesco 및 Wal-Mart	공공 및 민간 부분으로부터 105개 회원기구(국가별 1개). 기타 회원	180개 회원 국가 및 옵서버
표준활용자	식품제조사	식품제조사	식품제조사	식품제조사	일차생산자	일차생산자	모든 식품체인	모든 식품체인
일반관리의 GAP/GHP, GAP, HACCP과 중복 여부 ³⁾	예	예	예	예	예	예	예	부분적
GMP, GHP, GAP의 중요 요소 ⁴⁾	예	예	예	예	예(GAP)	예(GAP)	부분적	예
HACCP의 중요 요소	예	예	예	예	HACCP 원칙	HACCP 원칙	예	예
인증시스템 /감사 및 감사요건	예	예	예	예	예	예	예	매우 제한적임
인증기관 숫자	107개(89개는 유럽)	60개(일부는 국제적)	20	23	97	20	자료 없음	해당 없음
인증받은 생산자	자료 없음	10,000	1,841	자료없음	100,000	156	자료 없음	해당 없음

1) The Global Food Safety Initiative(GFSI)은 2000년 소비자상품포럼(Consumer Goods Forum)에 의하여 설립됨. GFSI는 70여개국의 650개 소매업소의 대표이사 및 고위 관리자, 제조자, 서비스제공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가 회원으로 있음. GFSI의 목적 중 하나는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의 벤치마크를 통하여 식품안전표준의 조화(Convergence between food safety standards through maintaining a benchmarking process for food safety management schemes)'임. 벤치마크 절차는 GFSI 지침 문서에 의거하여 식품안전시스템과 식품안전관리 기준을 비교하는 것임. 2010년까지 13종의 GFSI에서 인증받은 시스템이 있음.

2) 과채류에 대한 Global Gap은 여러 Global Gap 중 하나이나 상업적으로 중요하지는 않음.

3) 문서화된 공정과 절차, 식품안전정책 및 매뉴얼, 관리 의무, 약속과 검토, 자원관리, 내부감사, 교정활동, 불만처리와 사고 관리, 추적성, 시설관리, 확인, 제품 분석을 포함

4) 지역, 시설, 조직, 기구, 관리, 종업원 시설, 오염 위해, 분리, 재고관리, 위생 및 청소, 수질, 폐기물 관리, 해충관리, 농약 관리, 이송, 개인위생, 훈련을 포함.

출처: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Consideration of the impact of private standards(CX/CAC/ 10/33/13) pp6-7

1.3.2 식량농업기구의 정의

- 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FAO)는 기구에서 정의된 민간표준(private standard)의 정의는 없음. 다만 민간표준에 대한 여러 보고서가 존재함.

가. The Impacts of Private Food Safety Standards on the Food Chain and on Public Standard-Setting Processes¹¹⁾

- Spencer Henson 및 John Humphrey는 보고서에 다음과 같이 정의함
- 공공과 민간표준의 구분
 - 공공(public) 및 민간(private) 표준
 - 일반적으로 민간표준과 임의 표준은 상호 교환이 가능하게 사용하고 있음.
 - 민간임의표준(private voluntary standards)은 민간부분의 합의에 의하여 제정된 표준을 의미함.
 - 표준은 공공과 민간에 의하여 제정될 수 있으며, 민간의 경우 기업들, 협회 및 NGO등과 같은 상업적 또는 비상업적 민간 기구에 의하여 제정 가능함. 이 경우 표준은 다른 기관에 의하여 인증되어 지고, 그 결과 타 기업/기관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이행되어질 수 있음.
 - 그러나 이러한 민간표준도 법률에서 인정되면 법률적 의무사항이 됨. 이러한 예는 유럽연합의 통신과 전기 분야의 CE표시관련 directive에서 ISO 9000을 참조하여 이 표준이 의무화된 사례가 있음.
 - 공공의 표준은 일반적으로 규정으로 인지되어 지며, 정부에 의하여 정해지고, 이행이 의무화 됨.
 - 표준의 형식은 표 18와과 같음.

표 19 표준의 형식

	공공(Public)	민간(Private)
강제 (Mandatory)	규정(Regulations)	법률적으로 의무화된 민간 표준 (Legally-mandated private standards)
임의 (Voluntary)	공공의 임의 표준 (Public voluntary standards)	민간 임의 표준 (Private voluntary standards)

출처: FAO, The Impacts of Private Food Safety Standards on the Food Chain and on Public Standard-Setting Processes(2009) 5쪽

- 민간표준의 구분
 - WTO에서는 민간표준을 개별 기업의 표준(individual company standard), 종합적 국가 표준(collective national standard)와 종합적 국제 표준(collective international standard)로 구분함.
 - 표준제정 단계와 기능(표 18); 집행(enforcement)은 각 표준의 차이를 확실하게 보임.

표 20 표준 제정단계와 기능

기능	규정	공공 임의 표준	법률적으로 의무화된 민간 표준	민간 임의 표준
표준제정	법률 또는 행정규제자	법률 또는 행정규제자	상업적 또는 비상업적 민간 기구	상업적 또는 비상업적 민간 기구
채택	법률/행정규제자	민간 기업 또는 기구	법률 또는 행정규제자	민간 기업 또는 기구
이행	민간 기업/공공기관	민간 기업	민간 기업	민간 기업
적합성 평가	공식적 검사	공공/민간 감사	공공/민간 감사	민간 감사
집행	형벌 또는 행정제재	민간/공공의 인증기구	형벌 또는 행정제재	민간 인증 기구

출처: FAO, The Impacts of Private Food Safety Standards on the Food Chain and on Public Standard-Setting Processes(2009) 8쪽

○ 정의

- 개별기업표준(individual company standards); 주로 대규모 식품유통업자 등 개별 기업에 의하여 정해지며, 공급자에 의하여 채택됨. 이들은 자체-민간 표시의 형태로 소비자와 자주 만나게 됨. 이러한 예로는 Tesco사의 “Nature”, Carrefour의 “Filières Qualité”가 있음. 이러한 표시는 상급 품질이나 공정의 특성을 주장함. 이러한 표시는 국가나 국제적으로 번지기도 함. 예로는 Carrefour의 여러 자회사들이 그대로 사용함. 비록 하나의 기업에서 사용하나 공급하는 여러 국가의 기업에 영향을 미침.
- 국가공동표준(collective national standards); 개별국가의 영토내의 운영되는 협회나 시민단체(non governmental organization, NGO) 등의 기구에 의하여 공동으로 제정된 표준. 이들 기구는 영업자의 상업적 가치 또는 NGO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음. 채택은 자유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표준은 나타나지 않으면서도 국내에 퍼질 수 있으며, 나아가 국제적일 수도 있음. 이와 같은 국가공동표준은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 대한 주장을 나타낼 수 있음. 예로 영국의 “Farm Assured British Beef and Lamb”이나 이탈리아의 “QC Emilia Romagna”등이 있으며 이들의 표시를 통하여 안전성, 품질, 환경영향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라고 주장함. 이들은 자신의 제품이 경쟁제품과의 차별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디자인됨. 따라서 이들은 소비자에게 보여질 수 있으며, 표시나 상표의 형태로 나타남.
 - 일부 국내 기관에 의하여 개발된 표준도 국제적으로도 영향을 미침. British Retail Consortium (BRC) Global Standard for Food Safety의 경우 원래는 영국 내의 교역을 위하여 개발되었으나, 영국에 납품하는 다른 국가의 공급자 이외에도 해당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면 영국에 판매되지 않는 제품에도 적용되는 사례가 있음. 따라서 표준이 국내에서 국제로 이동되어짐. 즉 국내를 위하여 개발된 표준이라도 국제적으로 관리기구를 만드는 경우 이를 국제적으로도 활용될 수 있음.

- 국제공동표준(collective international standards); 이러한 표준은 여러 국가의 기구가 채택하기 위하여 디자인 됨. 이러한 기구는 일반적으로 여러 국가의 회원을 가지고 있음. 예로 GlobalGAP(이전의 EurepGAP)은 원래 유럽의 판매업자 협회에서 개발됨. 이의 회원은 현재 보다 넓어져서 더욱 국제적이 됨. Safety Quality Food(SQF) 시리즈의 표준은 Food Marketing Institute(FMI)의 자회사인 SQF Institute에 의하여 제정됨. FMI는 여러 국가의 회원을 가지고 있음. 이러한 표준제정기구는 비영리업자(non-business actor)일 수도 있으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민간표준제정 기구는 영리 기업, 비영리기구 또는 NGO 일 수도 있어 여러 특성을 가질 수 있음. 이러한 표준은 국제적으로 제정되고 국제적으로 채택됨.

나. Private Standards in the United States and European Union Markets for Fruit and Vegetables - Implications for developing countries¹²⁾

- 제품 사양(product specification); 공급자와 구매자 간의 공급계약에 의한 사양. 표준을 참조할 수 있음.
- 규정(regulation); 정부기구에 의하여 정해지고 이행되는 강제 표준(standard)과 규칙(rule). 이러한 규정은 다른 기관에 의하여 제정된 표준을 참고할 수 있음.
- 표준(standards); 규칙, 지침 또는 정의 등과 같이 일관적으로 사용하고, 물품, 제품, 공정 또는 서비스가 목적에 부합함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술적 사양 또는 다른 정확한 기준을 포함하는 합의문서(documented agreements)
 - 기업 표준(corporate standards); 이 보고서를 위하여 영업자, 일반적으로 산업 협회에서 정한 표준. (하나의 기업의 요구 사양 문서는 일반적으로 표준으로 간주하지 않음. 그러나 다국적으로 여러 자회사와 공급자가 있는 경우는 이러한 구분은 명확하지 않음)
 - 환경 표준(environmental standards); 어느 제한 범위 내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물품, 제품 및 제조공정에 대한 표준
 - 식품 표준(food safety standards); 제품이 사용 목적에 따라 조리되어지거나 섭취하였을 때 식품이 소비자에게 위해하지 않음을 보장하기 위한 식품의 제조, 공정, 취급 및 유통 표준
 - 노동 표준(labour standards); 작업자의 권한 보장을 보장하기 위한 작업조건 표준
 - 유기 표준(organic standards); 유기 농산 제품의 생산과 공정을 위한 표준
 - 민간 표준(private standards); 민간 부분이 정한 표준. 이 보고서를 위하여 이에는 기업 표준과 비영리 비정부기구(non-profit non government organization, non-profit NGO)의 표준을 포함함.

- 사회 표준(social standards); 보통 노동 표준으로 할 수 있으나, 기구나 제조시설에 대한 다른 사회적 이슈를 포함할 수 있음. 주위 환경이나, 농민의 최소 수입 등을 고려할 수 있음.

1.3.3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정의

-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는 민간 표준과 식품의 무역에 대한 여러 편의 보고서를 낸 바 있음.
- OECD는 ‘식품체인에서의 공공 및 민간표준의 상호작용’¹³⁾에서 표준의 여러 특성에 대하여 비교하면서 민간표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함.
 - 민간 표준은 정의에 의하여 임의적(voluntary)이나 공공표준(public standard)은 임의 또는 강제일 수 있음.
 - 민간합의표준(Voluntary consensus standard)은 시장의 공적인 조정 절차를 통하여 작성되며 이때 정부는 관여할 수도 있으며, 아닐 수도 있음.
 - 일부 민간합의표준은 여러 제품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정부 표시 규정에 포함될 수도 있음[예, EU의 protected designation of origin 표시, 지역표시(geographical indication), 전통표시(traditional specialty guaranteed) 등].
 - 그러나 제품과 관련된 표준도 존재함(유기농산물 등)
 - 임의의 공공 또는 민간 표준은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합 여부를 표시로 나타냄
 - 국가는 민간 및 공공 부분의 표준이 제공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러 종류의 표시 시스템을 선택할 수 있음.
 - 이러한 여러 접근법은 다음 표와 같음.

표 21 식품품질 표시에서의 민간과 공공표준의 역할

역할	제도1	제도2	제도3	제도4
법적 지위	임의	임의	강제	강제
제정	민간분야	정부	정부	정부
특성	공정	내용물	공정	내용물
이행	제조공정에서 채택	제품 재조정	공정분리와 특성보존	제품 재조정
적합성 평가				
인정(accreditation)	민간분야			
인증(certification)	민간분야			
시험(testing)		민간분야		민간분야
문서화(documentation)			민간	
검사/감사(inspection/audit)		정부	정부	정부
법률적 이행	민간과 정부	정부	정부	정부
사례	지리적 표시	제품 특성	원산지 표시	영양표시

Based on Josling, T., Roberts, D., and Orden, D., (2004) Food Regulation and Trade op cit, page 131.
출처: OECD, Interaction of public and private standards in the food chain, p15

○ OECD는 같은 문서에서 표준의 패러다임에 대하여 다음 표로 정리함.

표 22 표준의 패러다임 비교

표준의 종류	기원	기능	적합성	이행
공공규격 (public regulation)	국가에 의하여 이행	소비자 보호, 허위방지	강제	공식 인증 및 검사
세미-공공/민간 규범 (semi-public/private norms)	민간과 공공분야 대표의 합의	HACCP같은 일반 공정	임의	당사자, 상대 또는 제삼자에 의한 적합성 인증
민간표준 (private standards)	기업이 내부용으로 만들거나, 또는 제조자 그룹이 만들고 국가에 의하여 인정	표준은 기존의 공공 규격을 반영하거나, 해당 제품 또는 관련 제조공정 기술	임의	내부관리 또는 독립기관 또는 공공 기관으로부터 인증으로 적합성 보증
상표등록 민간표준 (proprietary private standards)	공급을 관리·조절하기 위하여 소매업자, 접객업소 운영자, 또는 제조자에 의하여 작성	구매자와 민간 공급자간에 관계	임의, 단 일반적으로 계약적인 관계	상대에 의한 감사 또는 독립기관의 인증에 의해 적합성 보장

Source: Valceschini, E., and Saulis, L. (2005), Articulation entre réglementation, normalisation et référentiels privés dans les industries agroalimentaires. Rapport final. Rapport d'une étude financée par le Ministère de l'Agriculture et de la Pêche-Direction des Politiques Économique et Internationale (référence MAP 05 D1 05 01) I.

출처: OECD, Interaction of public and private standards in the food chain, p16

1.4 국가별 정의

1.4.1 우리나라

-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 정의에서 표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음.⁴⁾
 - "국가표준"이란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정확성, 합리성 및 국제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에서 통일적으로 준용하는 과학적·기술적 공공기준으로서 측정표준·참조표준·성문표준 등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표준을 말한다.
 - "국제표준"이란 국가 간의 물질이나 서비스의 교환을 쉽게 하고 지적·과학적·기술적·경제적 활동 분야에서 국제적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기준으로서 국제적으로 공인된 표준을 말한다.
 - "측정표준"이란 산업 및 과학기술 분야에서 물상상태(物象狀態)의 양의 측정단위 또는 특정량의 값을 정의하고, 현시(顯示)하며, 보존 및 재현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되는 물적척도, 측정기기, 표준물질, 측정방법 또는 측정체계를 말한다.
 - "국가측정표준"이란 관련된 양의 다른 표준들에 값을 부여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국가적으로 공인된 측정표준을 말한다.
 - "국제측정표준"이란 관련된 양의 다른 표준들에 값을 부여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국제적으로 공인된 측정표준을 말한다.

4)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접속 2011.11.23.

- "참조표준"이란 측정데이터 및 정보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과학적으로 분석·평가하여 공인된 것으로서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널리 지속적으로 사용되거나 반복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물리·화학적 상수, 물성값, 과학기술적 통계 등을 말한다.
 - "성문표준"이란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총체적인 이해성, 효율성 및 경제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강제적으로 또는 자율적으로 적용하는 문서화된 과학기술적 기준, 규격, 지침 및 기술규정을 말한다.
 - "산업표준"이란 광공업품의 종류, 형상, 품질, 생산방법, 시험·검사·측정방법 및 산업활동과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방법·절차 등을 통일하고, 단순화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표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음⁵⁾.
- 표준을 분류하는 데는 표준이 없다고 말하고 있음. 이는 표준이 그만큼 다양하고 형성의 역사가 오래되었음을 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표준을 분류하는 가장 포괄적인 분류체계는 표준을 인문사회적 표준과 과학기술계 표준으로 분류하는 것임.
 - 인문사회적 표준은 언어·부호·법규·능력·태도·행동규범·책임·전통·관습·권리·의무 등으로 나눌 수 있음
 - 과학기술계표준은 ① 측정표준(measurement standards), ② 참조표준(reference standards) 및 ③ 성문표준(documentary standards)등으로 구분
 - 측정표준(measurement standards); 길이, 시간 등과 같은 물리적 양의 크기를 나타내기 위해 국제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제단위계 (international system of units, SI)의 7개 기본단위와 2개의 보충단위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유도단위를 현시하기 위한 것으로, 표준기준과 측정계량단위 및 표준기준물 등을 말함.
 - 참조표준(reference standards); 준참조자료(standard reference data, SRD)가 대표적인 것으로, 이것은 데이터와 정보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분석 심사하여 참조표준으로 설정하고, 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공인함으로써,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믿고 널리 지속적으로 사용 또는 반복 활용이 가능토록 마련된 자료를 말함.
 - 성문표준(documentary standards);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생산, 유통, 소비, 교통, 통신, 무역, 서비스, 보건, 교육, 행정, 국방, 건설, 환경, 생활 등)에서 총체적인 이해성, 안전성, 효율성,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강제 또는 자율적으로 일정기간 적용하는 문서화된 규정, 사양, 용어, 부호, 기호 등을 말함. 이러한 과학기술계표준은 광의의 산업표준(industrial standards)이라고 할 수 있음.

5) 기술표준원, http://www.kats.go.kr/htm/business_01/standard_01_04_01.asp 접속 2011.11.23.

- 또한 표준의 주체가 누구이냐는 점에서 분류하는 사실상의 표준과 공적표준의 관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
 - 비지원적 표준(unsponsored standards); 고유의 관심을 갖고 있는 발제자를 확인할 수 없지만 공적으로는 이미 문서로써 잘 정립되어 있는 일련의 기술 명세임.
 - 지원적 표준(sponsored standards); 직·간접적으로 고유의 관심을 갖고 있는 하나 이상의 발원기관이 공급자, 사용자 및 민간의 협력업체가 다른 기업들로 하여금 기술명세를 채택하도록 유도하는 경우의 표준임.
 - ANSI등과 같은 기관들이 내부에서 자발적으로 표준을 제정하는 경우
 - 규제권한을 갖고 있는 정부기관이 발표하는 의무표준이다.
 - 첫째나 둘째는 시장 프로세스에 의해서 생성되는 경우로서 이를 사실상의 표준(de facto standard)이라고도 함.
 - 셋째와 넷째는 시장프로세스에 의해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반드시 반영할 필요는 없는 경우로서 행정절차 등의 프로세스에 의해 제정. 이 양자를 공적 표준(de jure standard)이라고도 함.
 - 공적표준은 책정과정의 투명하고 표준내용이 명확하고 개방적이며 원칙적으로 단일표준을 제공하며 멤버쉽이 비교적 개방적이나, 표준개발속도가 느리고 표준의 보급과 제품보급의 시간격차(time lag)가 발생하며 기술의 무임승차(free rider)가 발생한다는 약점이 있을 수 있음. 이에 반해 사실상의 표준은 책정과정속도가 신속하고 표준과 제품의 보급이 동시에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자신의 규격을 표준화할 수 있는 자가 시장을 독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정보의 공개가 불확실하고 멤버쉽이 폐쇄적이며 개정절차가 불투명하다는 약점이 있을 수 있음.
- 또한 기술규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함.
 - 기술규정의 제정 목적은 원칙적으로 공중위생, 안전, 환경보호, 소비자보호, 국방 등과 같은 공공이익의 추구에 있으며, 대부분 국가가 이러한 공익의 보호를 위해 독자적인 기술규정을 두고 있음. 일반적으로 기술규정은 정부에 의해 시행·감독되며, 기술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제품이 생산·유통될 경우 그 자체가 불법으로서 법적 제재의 대상이 됨.
 - 포괄적 기술규정(exhaustive regulation); 기술규정에 구체적으로 제품명세 전반을 모두 포괄시켜 이에 부합되는 제품만을 유통시키는 경우
 - 선택적 기술규정(optional regulation); 임의적으로 선택 가능한 구체적 모델을 복수로 제시하는 경우의 기술명세
 - 목적형 기술규정(purpose-oriented legislation); 목적형 기술규정은 일정 제품이 충족하여야 하는 일반적 기준만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핵심 필수 요건을 충족시키는 제품은 생산·유통될 수 있음.
 - 기술규정과 표준에 대한 요약은 다음 표와 같음.

표 23 표준과 기술규정의 비교

기술명세	표준	기술규정
제정목적	표준화에 따른 생산, 유통의 효율성 제고	공중위생, 안전, 환경보호, 소비자보호, 국방 등 공공이익의 추구
제정목적	-표준화기관, 생산자협회 또는 학술 전문 협회 등 이해관계자의 합의를 통해 제정 -시장에 의해 자발적(de facto)으로 생성	정부 주도로 제정, 시행
준수의무	대부분 자발적	강제적
행정조항	거의 포함치 않음	광범위하게 포함

출처; 기술표준원 http://www.kats.go.kr/htm/business_01/standard_01_04_03.asp 접속 2011.11.23.

1.4.2 유럽연합

- 유럽연합은 공통 표준화 기구로 European Committee for Standardization(CEN)가 있으며, CEN은 표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함⁶⁾.
 - 표준은 규정, 지침 또는 정의로 사용하기 위한 기술문서임. 이는 어떤 사항을 지속적인 방법으로 하기 위하여 합의에 의하여 제정함.(A standard is a technical document designed to be used as a rule, guideline or definition. It is a consensus-built, repeatable way of doing something.)
 - 표준은 특정 물품, 제품, 공정 또는 서비스에 대한 제조자, 소비자 및 규제자 등의 모든 이해관계자의 함께하여 제정함. 모든 부문은 표준화로 인하여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 및 비용 절감 및 가격에 의한 혜택을 받음.
 - 표준은 합의와 인정된 기구(recognized body)에 의하여 승인(approve)되어 제정됨.
 - CEN에서 제정하는 유럽표준(European Standard, EN)은 자동적으로 31개 회원국에서 국가 표준으로 채택됨.
 - 표준과 directive의 관계
 - 표준(standard)의 적용은 자발적(voluntary)임. 다만 법 또는 규정(regulation)에서 표준을 지정하여 의무화할 수 있음.
 - 유럽연합 일부 directive⁷⁾와 regulation⁸⁾은 표준을 지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표준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기본적인 요건(essential requirement)으로 간주됨.
 - 이 경우 표준을 적용하지 않은 생산자는 directive의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시킨다는 것을 증명할 의무가 있음.

6) CEN, <http://www.cen.eu/cen/Pages/FAQ.aspx#3> 접속 2011.11.17.

7) 유럽연합의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현실을 반영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규정

8) 유럽연합의 모든 회원국이 그대로 적용하여야 하는 규정

1.4.3 미국

- 미국은 표준관련 기관으로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NIST)를 상무부(Dept. of Commerce) 산하에 두고 있음.
 - 비영리 민간 기구인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ANSI)는 미국의 자발적 표준(voluntary standards)와 적합성 평가 시스템(conformity assessment system)을 조정함.
 - ANSI는 국가 표준개발기구를 인정하며 미국국가표준(American National Standards)을 승인(approve)하며 국제 표준제정기구에 미국을 대표함.
- NIST의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음⁹⁾
 - 기업 표준(company standards); 자체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개별 기업에서 개발한 내부 문서로서 제조공정, 물품의 특징, 구매 요건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음.
 - 문서화된 표준(documentary standard); 표준은 1) 제품, 관련 공정과 제조 방법 및 관련 관리시스템에 공통적이며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규정, 조건, 지침 또는 특성; 2) 용어의 정의, 부품의 분류, 절차의 기술, 크기, 물품, 공정, 제품, 시스템, 서비스 등에 대한 묘사, 시험법과 시료채취 방법 또는 강도나 크기에 대한 측정과 적합에 대한 기술을 구체화한 것임.
 - 조화 표준; 다른 표준화 기구에서 승인된 동일한 대상에 대한 동등한 표준. 이러한 표준을 통하여 제품, 공정 및 서비스의 상호 교환과 시험 결과와 정보의 상호 이해가 가능함.
 - 산업 표준(industry standard); 제품, 시행 또는 운영의 요건을 설정하는 자발적이고 산업계(industry)에서 개발한 문서
 - 강제 정부 표준(mandatory government standard); 안전, 건강 또는 환경 요건을 정하기 위하여 정부가 제정한 표준. 기술규정(technical regulation)이라고도 함.
 - 강제 표준(mandatory standards); 공공의 건강, 안전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법 또는 기술규정에 포함 또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구매 계약에 포함된 표준
 - 국가 표준(national standards); 우선적으로 국내에서 사용하기 위해 개발된 표준
 - 실적 표준(performance standards); 실적 표준은 제품이 어떻게 디자인 되어야 하는가가 아닌 제품의 성과 수준을 정한 표준. 이에선 실제 조건에서의 성과를 평가하기위한 모의 시험방법을 포함할 수도 있음.
 - 공정 표준(process standard);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공정을 포함하는 일련의 활동과 관련된 표준으로 공정을 수행하기 위한 방법을 제공하여 제품의 일관성과 반복성을 보장.
 - 제품 표준(product standards); 제품이 어떻게 작동하여야 하는가 또는 어떻게 디자인 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정한 표준

9) NIST, <http://gsi.nist.gov/global/index.cfm/L1-5/L2-44/A-87> 접속 2011.11.17.

- 지역 표준(regional standard); 라틴아메리카와 같이 세계의 특정 지역에서 개발된 표준으로 국제 표준으로 채택될 수 있음.
- 규정(regulation); 특정 법령을 적용하거나 관리하기 위해 연방 또는 주 정부의 기구에서 채택한 규칙
- 사양(specification, 시방서, 명세서, 규격); 제조 또는 조달을 위하여 작성된 절차, 공정, 물품,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묘사한 것으로 정확하고 제한된 적용의 조건과 요건 체제.
- 표준(standard); 제품, 공정 또는 서비스의 크기, 안전성과 성능 요건 등과 같은 특성을 정하는 문서.
- 기술규정(technical regulation); 제품의 특성을 기술하거나 관리조항을 포함하여 이와 관련된 공정과 제조방법을 기술한 문서로 적용은 의무사항임. 이에 해당 제품, 공정 또는 제조 방법에 적용하기 위한 용어, 심벌, 포장, 마크 또는 표시 요건을 포함하기도 하며, 이들만 다루기도 함.

1.5 사전적 정의

○ 표준국어대사전¹⁰⁾

- 표준01 (標準)

「1」사물의 정도나 성격 따위를 알기 위한 근거나 기준. ≒준거02(準據).

¶ 표준 시간/표준으로 삼다/과학이 정한 표준에 의해서 판단하다.

「2」일반적인 것. 또는 평균적인 것.

¶ 그 사람 정도의 키면 한국 남자의 표준은 된다./신생아의 몸무게가 표준에 약간 못 미쳤다.

「3」『물리』물리량 측정을 위한 단위를 확립하려고 쓰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기준적 시료(試料).

- 표준-적(標準的) 「관형사·명사」

「1」사물의 정도나 성격 따위를 알기 위한 근거나 기준이 되는. 또는 그런 것.

¶ 표준적 가치 || 표준적인 양식/그의 가족은 핵가족의 표준적인 모델이다.

「2」일반적이거나 평균적인. 또는 그런 것.

¶ 표준적 생각 || 표준적인 키/그의 소설에 나오는 인물은 대부분 표준적이지 못하다./동무처럼 당원으로서 늘 모범적이고 표준적으로 되려다가 보면 자칫 그런 형식적인 틀에 짜여 들어가지는 않을까요.《이호철, 남에서 온 사람들》

- 표준-화 (標準化) 「명사」

「1」사물의 정도, 성격 따위를 알기 위한 근거나 기준을 마련함.

10)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search/View.jsp> 접속 2011.11.17.

¶ 행동 양식의 표준화.

「2」자재나 제품의 종류, 품질, 모양, 크기 따위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통일함.

¶ 공산품의 표준화/설계의 표준화.

「3」『심리』어떤 검사가 객관적일 수 있도록 근거나 기호를 만드는 일.

- 표준화-되다(標準化--) [---되-/---뒀-] 「동사」

「1」사물의 정도, 성격 따위를 알 목적으로 근거나 기준이 마련되다.

「2」자재나 제품의 종류, 품질, 모양, 크기 따위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 통일되다.

¶ 표준화된 도량형 단위.

「3」『심리』어떤 검사가 객관적일 수 있도록 근거나 기호가 만들어지다.

- 표준화-하다(標準化--) 「동사」 【…을】

「1」사물의 정도, 성격 따위를 알기 위한 근거나 기준을 마련하다.

¶ 관리 체계를 표준화하다.

「2」자재나 제품의 종류, 품질, 모양, 크기 따위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통일하다.

¶ 자료 입력 방법을 표준화하다/제작, 공정, 생산, 공급, 판매 과정을 표준화하여 경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다.

「3」『심리』어떤 검사가 객관적일 수 있도록 근거나 기호를 만들다.

¶ 연령에 알맞게 지능 검사 방법을 표준화했다.

○ Oxford Dictionaries¹¹⁾

- standard

noun

1 a level of quality or attainment:

their restaurant offers a high standard of service

the government's ambition to raise standards in schools

· a required or agreed level of quality or attainment:

half of the beaches fail to comply with European standards

[mass noun] :

*their tap water was not **up to standard***

- standardize verb

[with object]

cause (something) to conform to a standard:

in quoting from the letters, I have standardized the spelling and punctuation

· [no object] (standardize on) adopt (something) as one's standard:

we could standardize on US equipment

· determine the properties of (something) by comparison with a standard.

11) Oxford Dictionaries, <http://oxforddictionaries.com/> 접속 2011.11.17.

- Oxford Advanced Learner's Dictionary¹²⁾

Level of quality

- 1 [countable, uncountable] standard (of something) a level of quality, especially one that people think is acceptable
 - a fall in academic standards
 - We aim to maintain high standards of customer care.
 - The standard of this year's applications is very low.
 - He failed to reach the required standard, and did not qualify for the race.
 - Her work is not up to standard (= of a good enough standard).
 - Who sets the standard for water quality?
 - A number of Britain's beaches fail to meet European standards on cleanliness.
 - In the shanty towns there are very poor living standards.
 - see also standard of living, substandard
- 2 [countable, usually plural] a level of quality that is normal or acceptable for a particular person or in a particular situation
 - You'd better lower your standards if you want to find somewhere cheap to live.
 - It was a simple meal by Eddie's standards.
 - The equipment is slow and heavy by modern standards.

Unit of measurement

- 4 [countable] a unit of measurement that is officially used; an official rule used when producing something
 - a reduction in the weight standard of silver coins
 - industry standards

2. WTO SPS위원회 논의

2.1 개요

- 2005년부터 SPS위원회에서 민간표준에 대한 문제제기부터 2011년까지 논의된 SPS 미팅에서의 논의 진행 사항은 아래의 표와 같음.
 - 연대기 역순으로 최근의 논의동향부터 기재함.
 - 세부 내용은 표 이하 각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문서로 정리한 보고서나 발췌내용을 WTO사무국에서 정리한 문서를 정리함.

12) Oxford Dictionaries, <http://oald8.oxfordlearnersdictionaries.com/dictionary/standard> 접속 2011.11.22.

표 24 민간표준에 대하여 SPS위원회에서의 논의 요약

SPS 위원회	민간표준 관련 논의 주요 내용
2011년 6월	WTO/SPS 정례회의 이후 회원국이 제출한 제안서 및 의견을 취합하였고 호주, 브라질, 캐나다, EU, 인도네시아, 일본, 뉴질랜드, 페루 및 미국에서 의견을 제출하여 5개 action에 대한 의견 제시
2011년 3월	SPS위원회는 다음의 5개 action 합의(G/SPS/55) -SPS와 관련된 민간표준의 실무정의를 개발하고 이들과 관련된 어떤 토론에 대해 정리 -SPS 위원회와 이들의 세 개 자매기구(3개 자매 기관이란 식품안전에 대한 Codex, 동물보건관련 OIE, 식물보호관련 IPPC)들이 서로 간에 정기적으로 정보를 교환 -WTO사무국은 다른 WTO이사회와 위원회에서 타당한 발전사항들에 관해 위원회에 정보를 제공. -회원국은 각국의 민간 영역의 기관을 도와주고 이들 국가가 SPS위원회에서 제기된 이슈를 이해하고 표준을 수립하며, Codex, OIE, IPPC의 국제표준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함. -국제적인 SPS표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정보 자료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위원회는 세 개의 자매기관과 협동함. 회원국들은 여전히 어떻게 여섯 번째 action을 부과할 수 있을지를 논의하고 있으며, 민간표준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국제 및 정부표준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2007년 2월	민간표준은 장단점이 모두 있어 SPS위원회는 민간표준운영기관에 의해 만들어진 표준이 무역을 증진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의 공급자에게는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는 장단점이 있음. WTO위원회는 식품안전, 동물과 식품위생에 하여 의견 들음.
2006년 10월	-SPS위원회에서 Saint Vincent and the Grenadines은 아직 EurepGAP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음을 표명. -SPS위원회는 2007.2월 개최되는 SPS위원회에 일반적인 민간 및 상업표준에 대한 논의를 하기로 결정함.
2005년 6월	-SPS위원회에서 민간표준 관련 사안이 처음 제기됨. -이 회의에서 Saint Vincent and the Grenadines은 영국의 상점에 바나나의 교역과 관련하여 EurepGAP의 운영에 대한 우려를 표명함. 다른 회원도 그들의 무역에 민간표준의 역할에 대한 우려를 표명함.

2.2 회의별 논의

2.2.1 2011년 6월 회의

○ SPS 관련 민간표준 회원국 의견 취합 ('11.9.27)

- '11.6월 제51차 WTO/SPS 정례회의 이후 회원국이 제출한 제안서 및 의견을 취합함.
- 이에 호주, 브라질, 캐나다, EU, 인도네시아, 일본, 뉴질랜드, 페루 및 미국에서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은 표와 같음.

표 25 각 국가별 민간표준 관련 작업에 대한 입장

국 가	의 견
호주	-민간표준은 SPS협정에 적용받지 않음. -Action 1~5: SPS 관련 민간표준의 정의가 가장 먼저 필요함. -Action 7~12: 합의에 이르기 힘들다고 판단, 새로운 임시작업반 구성 의견을 지지하지 않음.
브라질	-Action 1; SPS 관련 민간표준의 정의에 대한 제한서를 일정 기간내 제출토록 요구

	<p>해야 함.</p> <p>-Action 2~5: 자매기구가 SPS 관련 민간표준과 관련하여 취한 조치를 설명토록 요청.</p> <p>-Action 7~12: 비공식 그룹 구성.</p>
캐나다	<p>-Action 1~5: 근본적인 차이가 있던 부분에 합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지 않음.</p> <p>Action 6-12를 논의하자면 1-5에 대한 논의를 중단할 것을 지지</p>
EU	<p>-Action 1~5: SPS 관련 민간표준의 정의가 가장 먼저 필요, Action 6-12를 논의하자면 1-5에 대한 논의는 잠정 중단 바람직함.</p>
인도네시아	<p>-민간표준은 가변적임, 투명성 없이 설정되기도 함.</p> <p>-Action 2: 민간표준 제정기구는 SPS위원회 또는 자매기구와 소통해야 함.</p> <p>-Action 3: 민간표준은 선진국에서 많이 적용. 개도국이 적응할 수 있도록 민간표준 제정기구들이 capacity building mechanism을 이행해야 함.</p> <p>-Action 5: 민간표준은 국제기준을 준수하거나 과학적 정당성이 있어야 함.</p>
일본	<p>-Action 1~5: SPS 관련 민간표준의 정의가 중요. 효과적으로 논의하기위해서 정의 마련에 집중해야 함.</p> <p>-Action 7~12: 7-12 논의 개시하면, 모든 사항에 대해 처음부터 논의해야 함.</p>
뉴질랜드	<p>-Action 1~5: 1-4 이행 전 SPS 관련 민간표준의 정의가 가장 먼저 필요함.</p> <p>-Action 7~12: 과거 3년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함. Action 1-5번 논의에 집중할 것을 지지함.</p>
페루	<p>-Action 7-12번을 논의할 작업반 구성 필요함.</p>
미국	<p>-민간표준은 SPS 협정에 적용받지 않음.</p> <p>-Action 1~5 논의에 집중하는 것을 지지.</p>

2.2.2 2011년 3월 회의¹³⁾

- SPS위원회는 2011년 3월 30-31일에 식품안전과 동식물 건강에 대해서 민간표준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어떠한 활동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다섯 개의 action을 합의함(G/SPS/55)
- 민간 표준
 - 민간표준에 대해서 동의된 다섯 개의 action은 민간표준을 정의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WTO의 SPS 위원회와 다른 기구들 사이의 협력에 대해 포괄하고 있음.
 - 나머지 부분은 여전히 논의 중의 사안으로 가이드라인과 실행 코드의 개발, SPS협정 하에서의 정부들의 법적 의무를 명확히 하는 것들이며 이 부분은 여전히 회원국 간의 의견차이가 있음.
 - EU는 2008년 7월에 배부된 SPS위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문지에 답을 함. 그리고 특별 실무그룹을 만들어서 2008년 10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7회의 회의한 바 있음.
- SPS위원회가 동의한 다섯 개 action은 다음과 같음.
 - SPS와 관련된 민간표준의 실무정의를 개발하고 이들과 관련된 어떤 토론에 대해 정리를 하는 것
 - SPS위원회와 세 개의 자매기구가 서로 간에 정기적으로 정보를 교환함.

13) http://www.wto.org/english/news_e/news11_e/sps_30mar11_e.htm

- WTO사무국은 다른 WTO이사회와 위원회에서 타당한 발전사항들에 관해 위원회에 정보를 제공함.
 - 회원국은 자국의 민간 영역의 기관을 도와주고 이들 국가가 SPS 위원회에서 제기된 이슈를 이해하고 표준을 수립하며, Codex, OIE, IPPC의 국제표준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함.
 - 국제적인 SPS 표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정보 자료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위원회는 세 개의 자매기관과 협동함.
- 회원국들은 여전히 어떻게 여섯 번째 action을 합의할 수 있을지를 논의하고 있는데, 민간표준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국제 및 정부표준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정보를 교환하는 것에 동의를 하였지만 여전히 다른 시각이 존재하는데 이것이 SPS 위원회에서 결정되어야 함.
 - SPS협정이 정부의 조치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회원 국가는 위원회가 민간영역의 표준에 대해 행동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음.

2.2.3 2007년 2월 회의¹⁴⁾

- SPS 조치
 - 민간표준의 장단점에 대하여 위원회는 민간표준운영기관에 의해 만들어진 표준이 무역을 증진할 수 있지만 중소규모의 공급자에게는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음을 확인함.
- 민간표준
 - 칠레와 EU는 민간표준이 무역을 활성화 시킬 수 있었음. 그 이유는 수출국이 민간표준을 만족시키면 이들의 제품을 더 쉽게 판매할 수 있음.
 - EU는 페루의 아스파라거스가 EU에서 판매되는 것을 예로 들음.
 - St Vincent and the Grenadines, 바하마, 이집트, 쿠바, 브라질 등은 세계적으로 작은 경제주체와는 상의 없이 민간표준이 급증하고 있으며 민간표준은 정부 혹은 국제기구가 마련한 표준과도 상충하고 있음을 설명함.
 - 또한 표준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비용이 증가함.
 - 아르헨티나 등은 만약 공급자가 만족시키지 않는다면 시장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자발적인 민간표준은 점점 강제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함.
 - 많은 수의 국가들은 개발도상국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공적 요건을 만족시키는 것임.

14) http://www.wto.org/english/news_e/news07_e/sps_28feb_1march07_e.htm

- 만약 국가들이 너무 많은 민간표준에 집중하게 되면 공적 요건은 비활성화 되는 우려가 있음.
- 차기 회의에서 정보세션을 통하여 EurepGAP과 다른 기구의 발제할 예정임.

2.2.4 WTO사무국의 문서

- 다음은 사무국이 정리하여 배포한 민간표준과 SPS협정(Private Standards and the SPS Agreement)을 번역한 것임.

민간표준과 SPS협정¹⁵⁾

I. 서론

1. 2005.6월 개최된 SPS위원회에서 민간표준 관련 사안이 처음 제기되었다. 이 회의에서 Saint Vincent and the Grenadines은 영국의 상점에 바나나의 교역과 관련하여 EurepGAP의 운영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다른 회원도 그들의 무역에 민간표준의 역할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어 2006.10월 EurepGAP 과 UNCTAD에 의한 정보 제공세션을 개최하였다. 10월 개최된 SPS위원회에서 Saint Vincent and the Grenadines은 아직 EurepGAP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음을 표명하였다. 위원회는 2007.2월 개최되는 SPS위원회에 일반적인 민간 및 상업표준에 대한 논의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2. 사무국의 이 문서는 민간 및 상업표준(이하 '민간표준')에 대한 배경 정보를 제공하여 SPS위원회의 논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기록하였다. 이는 총체적인 분석이 아니다. 여기에 사용한 정보는 옵서버 기구, 학계 및 민간표준제정기구의 웹사이트로부터의 문서를 사용하였다. 정보는 이 문서의 뒤에 첨부로 제공하였다.

II. 국제무역에의 민간표준

3. 위원회에서 민간표준에 대한 논의는 한 회원국의 특정 민간표준에 대한 우려로부터 촉발되었다. 그러나 민간표준은 한 회원국 또는 한 종만 있는 것은 아니다. UNCTAD는 민간 표준은 약 400여종이 있으며 그 종류는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간표준은 개별 회사가 개발한 것으로부터 국제적으로 산업계에서 종합하여 개발한 것까지 매우 광범위하다. 또한, 민간 표준은 특정 회원국, 지역에 따라 배타적일 수 있으며 나아가 국가의 개발 정도에 따라도 대타적일 수도 있다. 비록 이들 표준의 목적이 다양하여도, 이 문서는 식품안전과 관련된 것만을 중점으로 하였다. 이에 관하여 민간 표준을 개발·활용하는 요소와 회사는 선진국, 개발도상국 및 최빈개발도상국이 동일하다.
4. 민간표준을 개발하는 여러 요소는 다음과 같다.
 - 식품안전에 대한 높은 관심과 규제기관에 대한 신뢰문제
 - 식품안전에 위해(risk)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야(due diligence)하는 기업에 대한 법률적 의무

15) WTO, Private Standards and the SPS Agreement, G/SPS/GEN/746 (2007)

- 기업의 사회적 의무(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¹⁶⁾에 대한 관심 증가와 기업의 평판에 대한 위험(reputational risks) 최소화
- 공급선(supply chains)의 세계화(globalisation)와 공급자와 소매자간의 직접적인 계약을 통한 수직적 통합 경향
- 식품 소매를 하는 슈퍼마켓의 국내 및 국제적 확장, 및
- 식품서비스 기업의 국제적 확장

5. 표 1은 민간표준의 예로서 표에서 제시한 표준은 일부의 사례이다. 제시된 13가지 표준은 400종 이상의 운영 중인 표준의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다.

표 1 민간 표준의 예

개별 기업 표준	국내 연합 표준	국제 연합 표준
Tesco Nature's Choice	Assured Food Standards	EurepGAP
Carrefour Filière Qualité	British Retail Consortium Global Standard - Food	International Food Standard
	QS Qualitat Sicherheit	Global Food Safety Initiative
	Label Rouge	ISO 22000: Food safety management systems
	Food and Drink Federation/British Retail Consortium	Safe Quality Food (SQF) 1000 and 2000
	Technical Standard for the Supply of Identity Preserved Non-Genetically Modified Food	ISO 22005: Traceability in the feed and food chain
	Ingredients and Product	

6. 표에서 사용한 개별 기업, 국내 및 국제 표준으로의 분류는 여러 가지 가능한 분류 방법 중 하나이다. 농장 출하 전·후로 나눌 수도 있으며, 또한 기업과 기업간의 표준 또는 소비자를 위한 표시 또는 로고와 관련된 표준 등으로도 분류할 수 있다. 또한 연합표준은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특정 공급체인 관련 사안 또는 목적에 대한 것일 수도 있다. 제시된 예는 이러한 모든 분류를 망라하고 있다. 예를 들어 EurepGAP은 원칙적으로 농장 출하 전 표준이며, 영국소매협회(British Retail Consortium, BRC)의 Global Standard and International Food Standard은 포장과 가공 설비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유사하게 Assured Farm and Label Rouge은 식품포장의 로고와 관련되어 있으며, EurepGAP은 그러하지 않다. 또한 Food and Drink Federation과 British Retail Consortium Technical Standard과 ISO 22005은 국내 및 국제적으로 특정 공급체인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7. 표 1은 민간표준의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는 특정 위해(risk)를 관리하기 위한 산업계의 조화를 위한 민간표준의 협력의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국내·외 표준의 증가는 요건(requirement)의 비교를 통한 벤치마킹(benchmarking)을 촉진하는 경향

16) “기업의 사회적 의무(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에 대한 합의된 정의는 없다. CSR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기업의 이해관계자와의 상호작용과 기업운영에 대한 사회와 환경에 대한 고려에 대한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지속발전에 대한 기업의 역할, COM(2002) 347 final, 유럽연합).

이 있다. 예를 들어 EurepGAP은 다른 표준에 대하여 벤치마크 하는 절차가 있다. 이 절차에 대한 다른 예로는 Global Food Safety Initiative(GFSI)이 있다. GFSI는 주요 요소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벤치마크하는 아이디어에 근거하고 있다. 예를 들어 BRC의 Global Standard and the International Food Standard (IFS)는 GFSI에 의하여 벤치마크 되었다.

8. 벤치마킹은 동등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EurepGAP과 QS Qualitat Sicherheit은 작년에 각각에 대하여 벤치마크하였으며, 동등한 표준으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BRC와 IFS 표준은 양쪽이 GFSI에 대한 벤치마크하였으나 동등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9. 민간표준은 강제가 아니다. 공급자는 민간표준에 부합하도록 법률적으로 요구되어지는 않는다. 민간표준에의 부합여부는 공급자의 선택이다. 그러나 민간표준이 산업계의 규범(norm)이 되었을 때, 공급자의 선택은 제한된다. 식품소매 연합은 이러한 정황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소수의 식품 소매상이 식품판매의 높은 비율을 차지할 때, 개별 또는 연합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공급자의 선택은 심각하게 축소될 수 있다. 나아가 소매상의 표준은 공급체인에 있는 모든 산업계의 사실상(de facto)의 표준으로 적용될 수도 있다. 따라서 자율적 표준의 부합 여부는 부합 또는 시장으로부터의 퇴출에 대한 선택이 된다. 이러한 경우, 자율적인 민간표준과 강제적인 “공식적” 또는 “공공”의 요건(requirement)간의 차이는 불분명해 진다.
10. 회원국과 옵서버로부터 SPS조치에 의해 관리되는 제품에 대한 민간표준의 형태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 앞서의 분석은 종합적이지는 않으나 다음을 강조하였다.
 - 운영 중인 민간 표준의 다양성
 - 국내 및 국제적 수준에서의 산업계 표준의 조화 경향
 - 민간요건이 산업계 규범이 되었을 때 공식적인 SPS조치와 자율적인 민간표준의 관계가 어떻게 모호해지는 가

III. 민간표준과 관련된 무역 사안

11. 민간표준에의 부합은 무역을 생성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민간표준이 국제적으로 활용되거나, 특정 기업이 국제무역에 활용할 때, 이 민간표준에 부합은 여러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민간표준은 무역을 발생시킬 수 있다. 나아가 자율적인 자기규제(self-regulation)은 소비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위험을 감소시킨다.
12. 민간표준에 대한 연구 주제는 개발도상국의 공급자에 대한 민간표준에 의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이 주요 경향이다. 특히 이들 표준이 과학적인 정당성을 초과하거나 적합하게 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문제로 제기된다. 쉬운 참조를 위하여, 민간표준과 관련한 문제점은 1) 민간표준의 내용과 2) 이를 만족시키기 위한 운영자의 능력으로 양분된다. 표 2는 이들 두 사안과 관련한 우려의 예를 보여준다. 이는 일레이며 전반적인 목록은 아니다.

13. 민간표준의 내용과 관련한 무역에의 우려사안은 민간표준의 내용이 제조·가공방법 (process and production methods, PPMs)에 중심을 두고 있는 경우이다. 민간표준에서 커버하는 PPM의 범위는 HACCP, 동물복지, 유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부재, 추적성, 환경 효과, 노동 표준 등 광범위하다.

표 2 민간표준과 관련된 우려사안의 예

민간표준에 대한 우려사안	민간표준의 적합과 관련된 우려사안
시장내 또는 시장간의 여러 민간표준	특히 개발도상국의 중소기업과 농장의 제삼자 인정 비용
민간표준과 공식적인 SPS조치의 불분명한 경계	일부 민간표준의 특정 인정기구의 활용 요건
SPS협정에서 지정한 국제표준제정기구와 민간표준과의 관계	표준간의 동등성 결핍으로 인한 인증을 위한 감사의 중복
일부 PPM요건에 대한 과학적 정당성	개발도상국의 인증의 불인정과 인증기구의 불인정

14. 민간표준에 부합하기 위한 운영자의 능력과 관련된 무역에의 우려 사안은 기업 또는 농장에서 이의 적용에 필요한 비용과 적합여부를 보이는 비용과 관계있다. 민간표준은 공급자에게 변형을 허용하지 않으나 동등한 식품안전 또는 기타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동등성은 가능한 규정적이고 구체적인 요건을 기술하는 경향이 있다. 적합여부는 일반적으로 제삼의 기구인 인증기관(certification body)에 의하여 판정된다.

IV. 민간표준과 SPS협정

15. 현재까지 민간표준이 SPS협정의 적용범위에 있는 SPS조치인지에 대하여 결정된 바 없다. SPS협정 제1.1조는 정부에 의한 SPS조치로 명시하지 않고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국제 무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SPS조치”에 적용된다고 되어 있다. 또한, 부속서 A(1)의 SPS조치의 정의와 SPS조치에 대한 실제 기술에서도 정부조치로 제한을 명시하지 않았다. 많은 기존의 민간표준은 예시에서 기술된 방법을 통하여 특히 부속서 A(1)(a)에서 기술된 인간의 건강에 대한 위해를 기술하고 있다. 한편, SPS협정의 다른 조항인 제2조 기본 권리와 의무는 “회원국”의 권한과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적합성을 보이는데 필요한 인증요건이 SPS협정 제8조와 부속서 C의 적용범위인가에 대하여도 명확하지 않다.

16. 이에 제13조가 관계있다. 제13조는 다음과 같다.

“회원국은 이 협정에 따라 이 협정에 규정된 모든 의무의 준수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회원국은 중앙정부기관 이외의 기구에 의한 이 협정의 규정의 준수를 지원하는 적극적인 조치 및 제도를 입안하여 시행한다. 회원국은 자기나라의 영토내의 관련기관이 회원인 지역기구 및 자기나라의 영토내의 비정부기구가 이 협정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이용 가능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 또한 회원국은 이러한 지역기구, 비정부기구 또는 지역정부기구가 이 협정의 규정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장려하는 효과를 가지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다. 회원국은 비정부 기구가 이 협정의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의 이행을 위하여 동 기구의 서비스에 의존한다는 것을 보장한다.”

17. SPS협정에서 제기된 의무를 SPS조치를 비정부기구에의 적용을 확보하는데 있어 다음의 의문이 제기된다.

- 중앙정부 이외의 기관에 의한 SPS협정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회원국의 긍정적 조치와 메커니즘은 무엇이 가능한가
- 비정부기관의 적합을 위한 합리적 조치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추가적인 의문으로는 이러한 표준이 진정한 민간인지 아니면 공식 표준인지 여부가 있다. 예를 들어 정부표준기관이 ISO 22000 식품안전관리시스템(Food safety management systems)에 기초하여 국가 표준을 개발하면 공식 SPS 조치와 민간표준간의 구분이 모호해 질 수 있다. 또는 회원국이 공적요건과 결합되어 있고 이를 초과하는 민간표준에 부합한다는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 수입을 허용을 결정할 수 있다. 회원국이 SPS조치의 이행과 관련하여 비정부기구의 서비스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될 수 있는가?

18. 기타의 WTO 협정도 관계가 있을 것이다. 예로 EurepGAP과 표 1에 나열된 표준은 SPS협정의 적용범위 이외의 요소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EurepGAP 표준은 다른 사안들과 함께 작업자의 건강, 안전, 복지와 폐기물과 오염관리를 포함하고 있다.

19. 일부 민간표준은 TBT협정의 적용범위에 부합한다. 이와 관련하여 표준, 적합성평가절차 및 비정부기구의 법률적 정의는 TBT협정 부속서 1과 특히 관계있다.

20. 특정 민간표준이 TBT협정의 표준의 정의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가 적용되어야 한다. 이 조항은 회원국이 비정부기구가 TBT협정 부속서 3(표준의 제정, 채택 적용에 관한 모범실행규범, the Code of Good Practice for the Preparation, Adoption and Application of Standards)에 부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이 규범에는 규범의 채택과 작업계획의 발간과 관련된 통보의무 조항이 있다. 작업계획은 WTO사무국이 아닌 ISO/IEC 정보센터(ISO/IEC Information Centre)에 있다. 적합성 평가와 관련하여, TBT협정 제5조와 제8조가 특히 관계있다.

21. TBT협정과 SPS협정은 모두 비정부기구¹⁷⁾의 활동에 대하여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차이에는 TBT협정에는 회원국은 비정부기구가 모범실행규범을 채택하고 적용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SPS협정에는 그러한 “합리적인 조치”가 없다.

22. TBT협정과 더불어 다른 WTO협정도 관계가 있다. 예를 들어 선적전 검사협정(Agreement on Preshipment Inspection)도 전문가 검사 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한 회원국의 인증활동과 관계있다.

17) 원문에는 “non-governmental bodies (as referred to in the TBT Agreement) and nongovernmental entities (as referred to in the SPS Agreement)” 되어 있다.

V. SPS위원회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사안

◦ SPS협정의 언급된 국제표준제정기구와 민간표준제정기구와의 관계

23. 식품안전을 언급한 민간표준의 경우, Codex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 개발된 표준, 지침 및 권고와의 관계가 중요하다. 표 1에 기술된 일부 표준(예를 ISO 22000 및 SQF)은 그들의 요건이 CODEX 지침에 근거(예, HACCP)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나아가 ISO의 경우는 CODEX와 정보교환 창구를 유지하고 있다. (ISO는 Codex와 SPS위원회의 옵서버 기구이다)

24. 민간표준의 개발과 활용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는 작업은 CODEX회원국과 옵서버의 관점에 대한 11가지 제안중 하나로서 현재 회람(circular letter)으로 의견수렴 중이다¹⁸⁾. 이에 대한 집행 여부는 제59차 집행이사회와 제30차 Codex 총회에서 결정되어질 것이다.

25. CODEX와 OIE의 의무는 식품의 품질 또는 동물복지 사안과 같이 SPS협정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대되어 있다¹⁹⁾. 다른 요소는 노동 표준과 같이 기업의 사회적 의무에 관한 것으로 이는 CODEX와 OIE의 관할 밖의 사안으로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와 같은 다른 기관의 관할이다.

비정부기구에 의한 부합을 위한 합리적 조치

26. SPS협정은 비정부기구가 SPS협정의 준수를 위한 합리적 조치에 대한 문구가 없으며, 이 사안에 대한 법률적 체계가 없다. 또한 위원회는 회원국이 채택할 수 있는 합리적 조치와 위원회의 활동에 대하여 논의하여야 할 것이다.

민간표준과 다른 WTO협정과 위원회의 관계

27. 위원회에서 St Vincent and the Grenadines의 EurepGAP에 대한 무역우려사안을 논의 중 한 회원국은 TBT협정의 모범실행규범의 검토를 제안하였다. 제21번 문항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TBT와 SPS협정의 차이인 “적합을 확보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는 TBT협정의 비정부기구가 모범실행규범을 채택하고 부합하게 하는 TBT협정의 회원국 의무를 참고한다.

동등성과 민간표준

28. 민간기구의 연합에 의한 조화노력은 다른 민간표준의 종종 벤치마킹이 관계된다. 그러나 이러한 벤치마킹은 항상 동등성을 부여하지는 않는다. 제4조의 이행을 위한 위원

18) Codex문서 ALINORM 06/29/9B, Part II, Add.1 참조. 제27번 문장은 민간표준에 대한 Codex 표준의 역할에 관한 것이다. "제안 11. 총회는 사무국에 FAO 및 WHO와 협력하여 ISO 표준 이외의 국제 수준이 민간표준의 개발과 활용에 관한 기초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2007년 집행이사회와 Codex 총회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

19) 세계수역사무국(World Organization for Animal Health, OIE)은 현재 동물복지에 관한 작업을 하고 있다. 2005.5월 제73차 일반회의(General Session)에서 4종의 동물복지를 OIE 육상동물보건규범(OIE Terrestrial Animal Health Code)으로 채택하였다. 현재는 추가 논의 중이다.

회 결정(the Committee's Decision on the Implementation of Article 4, G/SPS/19/Rev.2)이 이에 대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9. 앞에서 기술된 위원회에서 고려되어 질 수 있는 가능한 사안이 전부는 아니다. 민간 PPM 요건에 대한 과학적 정당성 또는 SPS협정 제5.1조 또는 5.6조와 민간표준의 관계 및 SPS협정 부속서 C의 인증 비용과 의무 등과 같이 다른 사안도 논의될 수 있다.

30. 이 문서의 목적은 민간표준에 대한 전반적인 취급에 대하여 언급한 것이 아니라 위원회의 논의를 촉진하기 위한 관련 배경 정보를 제공한 것이다. 배경 문서는 민간표준의 무역에 영향에 대한 회원국의 사례 제공과 옵서버 기구의 추가 정보에 의해 보다 알차질 것 있다.

2.3 각국의 및 국제기구 입장

2.3.1 각국 국가입장

- 국가별 입장은 다음과 같이 구분될 수 있음
 -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으로 크게 입장이 구분될 수 있으며 농산물 등 식품원료를 수출하는 국가와 수입국가로 입장이 나뉘고 있음.
 - 국가별 사정이 다르기에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기술 수준이나 소비자 안전 측면의 우려를 고려하여 구분하면 다음 표와 같음.
 - 일부 농산물 상황(바나나 등 열대과일)에 적용하여 해석한 것임.

표 26 민간표준에 대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입장

	수입국		수출국	
	선진국	선진국	선진국	개발도상국
국가 사례	EU	칠레,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케냐 등 아프리카 및 Saint Vincent and the Grenadines, 자메이카, 페루, 에콰도르, 아르헨티나 등	
민간표준 강화입장	찬성	찬성	반대	
이유	-소비자 안전 확보 -소비자 안전, 동물 복지, 환경 이슈 등에 소비자 의견 강함. -유통업자의 책임인 “상당한 주의(due diligence)” 충족	-자국내 엄격한 규격 보유 -대규모 농업화에 따른 기술력보유 -개발도상국이 배재 될 때 경쟁 유리	-기술, 자금부족, 소규모 영세농 다수 -민간표준 적용되어도 이전에 비해 투자비용이 커져서 이익 안 됨	

- 유럽연합⁶⁾
 - 유럽연합은 EurepGAP에 대하여 Private Food Standards and their Impacts on Developing Countries의 보고서를 제출함.
 - 두 가지 면에서 접근이 가능함

- EU의 식품안전규정은 제3국의 공급자로 하여금 법적 요건을 만족시키게 하나, 어떻게 하는지에 대하여는 특정하고 있지 않음. 이러한 점에 민간표준은 어떻게 법적요건을 충족시킬 것인가를 지정하고 있으며, 회원국은 법적 요건에 적합한 제품의 수입을 보장하게 됨. 결과적으로 민간표준을 통하여 개발도상국의 제품이 EU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도록 함.
- EU는 SPS협정과 TBT협정에 의거하여 “위해도 결과의 동등성(equivalence of risk outcome)”을 요구하고 있음. 동물성이 아닌 수입식품에 대하여 공적 관리는 단지 최종제품에 대하여만 실시하며, 제조국에서 공정 확인은 하지 않고 있음. 수출국의 관할기관의 농장 검사에 의지함. 그러나 원예작물의 경우 유럽연합에 수출할 수 있는 국가나 기업 목록은 없음. FVO(Food and Veterinary Office)는 제3국의 관할기관에 대한 EU와의 동등성을 확인할 의무는 없어, 제3국의 공적관리의 효과성을 검증할 방법이 없음. 많은 개발도상국은 건전한 국가 식품안전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못하며, 그중 일부는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관할 기관도 없는 경우도 있음. 이에 유럽연합의 수입업자는 민간인증에 근거하여 법률에서 정한 자기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함.
- 위해결과의 동등성이 제3국의 시스템의 동등성으로 확대될 필요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
 - SPS협정에 의거하여 유럽연합의 식품안전관리제도를 제3국에 적용할 수 없음. 나아가 SPS협정은 회원국에 대한 의무만을 정하고 있으며 영업자에 대한 의무는 정하고 있지 않음. 나아가 민간표준은 개발도상국의 공급자와 유럽연합의 유통업자와 상업적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짐. 유통업자는 식품안전 확보를 위하여 민간인증의 필요성을 주장함. 따라서 유럽연합의 시장에 대한 제한은 매우 제한되어 있음.
- Regulation EC/882/2004는 식품안전에 대한 민간과 공공의 협력 가능성을 열었음. 그러나 민간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유럽연합은 민간표준제도를 인정을 권고하지는 않음. 그러나 민간표준이 개발도상국의 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유럽연합은 민간표준제정기구와 지속적인 논의를 하여야 할 것임. 또한 유럽연합은 민간인증이 가격 상승요인이 될 수 있는데 관심을 가져야 하며, 지원이 가능함. 기술협력을 통하여 EurepGAP의 적용은 개발도상국의 식품안전관련 시스템을 상향 조정할 수 있음.

2.3.2 국제식품규격위원회

-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Codex)는 2009년 민간표준의 공공표준 제정과 식품체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¹⁴⁾

- 민간표준은 Codex 업무를 위협할 것인가? SPS위원회와 Codex는 민간식품안전 표준이 식품안전 영역에서 Codex의 업무를 약화시키는 작용을 하는가가 중요한 심사항목.
 - 일부 회원국과 기업, NGO들은 Codex가 민간표준을 개발하는데 가이드를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함.
 - 체계와 공통의 언어를 설정하면 민간표준의 개발자들과 채택하고자 하는 곳에서는 글로벌하게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고 이런 표준들이 달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임.
 - 이런 방식으로 국가의 규율이 Codex 지침을 달성할 수 있었고 표준체계로 들어갔듯이 민간표준 수립자들도 해석하고 Codex 표준, 지침과 권고를 설명할 수 있음. 어쩌면 이런 것들은 민간식품안전표준의 합법성을 증진시키는데 공헌하고 또한 표준 개발에 드는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을지 모름.
 - 많은 영역에서 Codex 표준은 최근의 식품안전이슈에 대체로 동의하는 경향이 있음. 그래서 민간표준의 수립자들은 Codex의 규칙을 표준으로 번역하여 충분한 가이드를 주어 부과하는 자들이 준수하는 것이 달성될 때 요구사항은 무엇이며 순행 여부의 평가를 수행하는 것을 볼 수 있음.
 - 이런 번역의 과정을 필요하며 감사될 수 있음.
 - 예를 들어서 Recommended International Code of Practice - General Principles of Food Hygiene of Codex에서는 예를 들어 BRC Global Standard for Food Safety and IFS와 같은 민간표준이 구체적 요소를 지목하고 어떻게 수행되며 시스템이 모니터링 될 수 있는지 식품안전시스템이 추적성을 가져야 한다고 함.
 - 이런 시스템은 수행되어야 하고 시스템의 효과를 모니터링될 수 있게 하는 방법까지 포함되어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Codex의 일반적 규칙이 표준으로 번역될 때 부과되는 자들에게는 지침이 공급되어 중요한 부분은 모호하지 않은 문장으로 어떻게 준수하였는지 평가하고, 동등성을 수립함에 있어서 배열이 다르거나 처방의 정도의 다름에 대한 범위가 있음을 언급하는 것 모두 중요한 일임.
 - 예를 들어 화학물질이 농장에서 안전하게 보호되어야만 하는데 이런 배열이 다른 방식으로 기술될 수 있음. EurepGAP 프로토콜의 2001년 버전은 농약은 “안전하고, 확실하고, 서리에 강하고, 화재에 강한, 잘 환기가 되며 밝은 위치에 있어야 한다 (EUREPGAP, 2001: item 8k)”라고 기술되어 있음. 반면에 SQF1000 표준의 수경재배준수에 관한 부분에서는 화학물질의 안전한 저장에 대해서 콘크리트 빌딩과 규정된 두께의 철문을 요구함. 이 후자의 규정은 너무나 특별한 처방으로 전자의 언급이 특별히 달성 가능한 수단여부를 판단하는데 감사에기 더 바람직한 결과물임.

- 이런 차이는 더 넓은 범위에 적용될 수 있음. 더 많은 민간표준은 접근에 동등성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더 분명한 과정을 허락하여 특정 지역의 환경에 더 맞출 수 있음.
- 많은 민간식품안전표준의 범위가 단일 Codex 표준, 가이드라인, 권고사항을 넘어서고 있음을 인식하는 것은 중요함. 이들 둘 사이에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정도와 어디에서 그런 일이 있는지 알아내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동시에 알아야 함. 그래서 민간식품안전표준이 실질적으로 여러 Codex 표준, 지침 및 권고를 패키지로 하여 국가적 제정과 부합하여 보는 것이 더 정확함. 예를 들어 GFSI 지침은 실질적으로 이 모든 것을 따르는 요소들을 포함함.
 - 식품위생의 일반원칙과 실행의 권고 국제 코드 (Recommended International Code of Practice-General Principles of Food Hygiene 1969 Rev 4 2003)
 - 식품의 수출입 감독과 인증의 원칙 (Principles for Food Import and Export Inspection and Certification, 1969)
 - 식품안전관리조치의 타당성에 대한 가이드라인 (Guidelines for the Validation of Food Safety Control Measures, 2008)
 - 식품감독과 인증 시스템 내 도구로서 이력추적제/제품추적의 원칙 (Principles for Traceability/Product Tracing as a Tool within a Food Inspection and Certification System, 2006)
- 민간식품안전표준은 이들의 실질적인 요소들 측면에서 중요 원칙들을 둘러싼 시스템을 규정하고 어떻게 이들을 관리하고 준수하였는가, 그리고 평가를 시스템에서 연관되는지를 규정해야 함.
 - ISO와 같은 국제적 표준은 많은 주요 원칙들을 제공함. 물론 민간식품안전표준은 Codex가 국제표준, 가이드라인 권고로 정의해온 영역으로 국한시키지는 않음.
- 여기에 민간표준이 국제적 규율에서 비워진 곳을 채워짐.
 - 예를 들어서 GlobalGAP 표준은 국제적 그리고 국가규격에서는 다루지 않는 일차 생산에서 GAP를 요구함. 주요한 동기가 되는 예를 들어 pre-farm-gate standards는 신선농산물에서 미생물학적 오염원과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에 대한 규정을 요구하고 있음.
- 특별히 집합적인 민간표준과 민간표준은 일반적으로 이런 한도를 정하지 않아서 잔류허용기준과 같은 농약의 잔류량의 목표수준을 Codex의 잔류허용기준에 근간하지 않는 기준을 명기하기도 함. 이런 관점에서 정부는 이들의 Codex 잔류허용기준에 기반하여 법적 요구사항을 요구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함. 민간표준도 Codex의 잔류허용기준을 준수하는 것을 목표로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게 될 것임.
- 식품가공에 대한 민간식품안전표준 예를 들면 BRC Global Standard for Food Safety and IFS는 Recommended International Code of Practice - General

Principles of Food Hygiene은 제품 분석, 매주 감사, 구매 과정 등과 관련되어서 통합하여 운영하지 않음.

- 민간식품안전 표준이 세계 공통적이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은 중요함. 많은 영역에서 Codex 표준, 지침, 권고, 그리고 국가별 제정된 요건보다 민간표준이 덜 중요하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 곳도 있음.
 - 그래서 민간식품안전표준의 중요성의 차이가 있음. 예를 들면 신선과일과 야채 대 낙농제품을 비교해 볼 수 있음.
 - 또한 제품가공 대비 (일차)생산품과 같이 수준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지리학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음. 또한 민간표준은 단지 value chain에서 채택할 때만 유용하다는 면을 잊지 말아야 함.
- 민간표준의 사용이 증가한다는 증거가 있지만 공통적이지는 않음. 전통적으로 Codex의 역할이 공적인 식품관리시스템을 부과하는 규율을 수립하는 것이고 이들의 주요 혜택을 받는 자는 정부임.
 - 민간식품안전표준이 더해지면 추가적인 식품안전관리가 생기는 것이며 Codex는 이것을 고려하여 실무프로그램을 만들 필요가 있음. 이것은 Codex의 영향력과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와 민간 모두에 의해서 이들의 표준과 가이드라인 그리고 권고를 채택하는데 의존하게 됨.
 - 민간그룹은 WTO의 규율에 의해서 묶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민간표준을 Codex에 근간하여 모범시행(good practice)을 반영하여야 함. 민간표준은 Codex로 하여금 더 영향력을 미치게 함.
- Codex는 식품안전과 관련되어 단하나의 표준, 지침, 권고를 수행하는 국제기구로 GlobalGAP와 GFSI와 같은 기구들의 등장은 Codex가 진정 전 세계적으로 특별히 개발도상국 내에서 이해집단을 대표하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음.
 - Codex의 정책결정(decision-making)과정은 특별히 정부에 의해서 유도가 되는데 여기에는 다양한 국가적 이해당사자를 고려하게 됨.
 - 국제적 NGO는 Codex의 읍저버로 인식될 수 있지만 결정권은 없음. Codex 회의에서 개발도상국의 목소리는 제한된다고 인식되기도 함.
- 민간식품안전표준의 정교함에 대해 본다면 이들 민간식품안전표준은 Codex보다 영역이 더 세분화되어 있고 범위가 더 좁음.
 - Codex는 더 오랫동안 개방되어왔고 넓은 범위의 흥미를 통합하여왔음. 역설적으로 민간영역은 국가정부나 국제적 표준보다 표준을 더 넓은 범위의 이해당사자들에게 개방하는 것에 더 흥미를 가지고 있음.

가. 민간 식품안전 표준의 특성

○ 민간식품안전표준 개요

- 최근 민간표준은 농식품 분야에서 시장접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민간표준은 개발도상국의 선진 시장 접근에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
- 제삼자 인증을 요구하는 민간표준의 특성과 체인의 여러 지점에서의 복잡한 요건을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소규모 농부에게는 너무도 복잡하고 많은 경비 소요.
- 세계의 농식품 시장의 작업과 구조에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주요 농장의 힘을 강화시키고, 합병과 통합을 촉진함.
- 역사적으로 공공의 규제에 대한 분야에서 공공의 정당성에 대한 도전함. 결과적으로 민간표준의 증가는 무역장벽과 관련한 WTO의 의무를 준수하는 WTO SPS협정과 Codex와 같은 국제기구의 위치에도 도전함.
- 민간표준의 공공이 아닌 특성은 일반적으로 이들이 위에서 아래의 방향으로 제정되며, 공공의 철저한 검토의 대상이 아님. 이는 공정성과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음을 시사.

나. 식품체인에 따른 민간표준의 영향

○ 개요

- 기존의 수출업자는 민간표준에 부합하기 위한 비용으로 인하여 경쟁력이 사라짐.
 - 모든 수출업자가 만족시켜야 하므로, 보다 효율적으로 표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수출업자가 유리하게 됨.
- 민간표준은 개발도상국의 신규 수출업자에 대하여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음.
- 그러나 민간표준은 지속적으로 변화하여, 영국의 경우 과거에는 여러 민간표준에 부합하여야 하였으나, 현재는 1-2개의 민간표준에만 부합하면 수출이 가능함.

○ 생산자에 대한 영향

- 이행의 복잡성; 소규모 농업인에게는 공정에 근거한(process-based) 식품안전 표준은 기존의 활동과 매우 큰 격차가 있음. 이러한 문제로부터 큰 예외는 이미 수출업자와 합병하고 기술지원을 받은 농업인임. 공정표준의 목적은 공정관리를 통하여 위해도를 제한하고, 검증과 일치시키는 것임. 이러한 관리와 절차의 사례는 다음과 같음.

※ 사례; EurepGap의 사용되는 농약 기준(제2판)

- 1) 작물의 보호가 작물보호제의 적절수준의 최소한의 양으로 실시되었다는 것을 증명(관리점 8.1.1). 이는 작물보호제의 사용 목적, 목표와 최저 적용량과 사용량에 대한 문서로 할 수 있음.
- 2) 농장의 기술 책임자로부터 문서로서 공식적인 훈련 또는 기술적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외부 자문을 받아 통합적인 해충관리 이행에 대한 지원을 받아야 함(관리점 8.1.4).
- 3) 적용하는 작물 보호제는 목표 작물에 적합하여야 함(관리점 8.2.1).
- 4) 등록된 작물 보호제만을 사용함(관리점 8.2.2).

- 5) 유럽연합에 판매하기 위하여 EuropGAP에 의하여 재배된 작물에 어떠한 작물보호제도 지난 12개월 동안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작물 보호제 적용 기록으로 증명함(관리점 8.2.5).
- 6) 작물 보호제의 선택이 권한이 있는 사람에 의하여 선택되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함. 권한이 있는 사람의 능력 또는 훈련을 문서로 증명하여야 함. 농부가 선택하는 경우 동일한 방법으로 증명하여야 함(관리점 8.2.6 및 8.2.7)
- 7) 작물 보호 기록은 처리한 작물의 종류와 이름, 지역, 정확한 날짜, 이름과 활성 물질명을 포함하고 있어야 함(관리점 8.3.1-8.3.4)
- 8) 수확 전 간격을 나타내기 위하여 수확일과 이전 사용간에 간격이 적절하여야 함(관리점 8.3.10)

출처; EurepGAP (2005)

- 위의 예는 EurepGAP의 많은 관리점 중 농약사용에 관한 작은 일부임.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농약 사용을 위하여도 농약의 사용방법 뿐만 아니라 결정 절차, 직원에 대하여 농장은 특정 절차를 준수하였는지를 보여야함. 그 결과 문서를 기록하고 보관하는 시스템이 구축되고 유지되어야함. GlobalGAP에서는 소규모 농장이 연합하여 인증받을 수 있게 하여 검사를 축소하고 있으나 품질 관리시스템(Quality Management System, QMS)이 추가적인 장애로 도입됨.

○ 이행 비용

- GlobalGAP를 달성하기 위하여 처음부터 드는 비용은 다음의 것을 포함함.

- 농장운영을 변경, 여기에는 화학적이 아닌 해충관리와 작물 교환이 포함됨.
- 농업인의 GlobalGAP 원칙에 대한 훈련
- 토양 및 수질 분석
- 인증 자체 비용
- 관리 제도를 위한 투자와 제도의 운영을 위한 비용(매일 모니터링, 관리, 및 기록에 필요한 비용 포함)

- 케냐에서 실시한 실험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농장에 따라 차이가 매우 큼(£100-£2,800; 약180,000원-5,040,000원). 이러한 차이는 수출업자의 준비 정도와도 관계가 있음.
- 많은 경우 시작을 위한 초기 비용을 지원함. 이러한 지원은 수출업자에 따라 초기 비용의 0-100%까지 다양함. 10개의 수출업자의 평균은 초기비용의 20%를 지원하며, 전체적으로 보면 농장은 36%, 수출업자는 44%를 지불함.
- 수출업자의 높은 지원율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농장에게는 장벽이며, 소규모 농장의 인증을 위한 비용은 £1,000임. 나아가 소규모 농장이 연간 수입은 노동력을 제외하고도 연간 £182임. 또한 GlobalGAP 인증을 수행한 경우

수출업자와 지원자에 의하여 감사, 인증, 훈련 및 토양분석등의 비용을 부담 하여도 연간 수입의 1/3이 지속적으로 필요함.

- 결과적으로 초기 비용을 완전히 지원하지 않으면 농장은 GlobalGAP 인증이 불가능함을 지적함. 또한 투자 비용을 회수하는 기간도 소규모 농장은 3년, 대규모 농장은 12개월, 수출업자는 1개월이 걸린다고 주장.
- 그러나 농약 사용비용이 감소되며, 농업인과 가족의 안전과 건강이 증진되는 장점은 있음.

○ 소규모 생산자의 제외 가능성

- 민간표준은 소규모 생산자를 제외시킨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음.
- 케냐의 경우 GlobalGAP의 도입은 소규모 농장을 수출전선에서 몰아내고 있음.
- GlobalGAP 또는 유사한 농장 수준에서의 공정에 기초한 기준의 적용은 소규모 농장의 경제적 상황을 변화시키며, 결과적으로 수출업자의 비용이 증가하며, 인정과 이의 유지를 위한 비용이 추가됨. 이와 같은 증가는 수출업자가 공급원을 소수의 대규모 농장을 선택하였을 때 보다 큼.
- 따라서 소규모 농장은 대규모로 가야 하나 이는 토지가 있는지 여부와 더불어 정치적인 결정이 있어야 함.
- 모로코의 경우 소규모 농장은 협회를 구성하여 이에 대응하기도 함.

○ 가공업자에의 영향

- 가공업자에 대한 영향 평가는 많지 않으며, 실제로 수출업자는 소규모 업자가 많으나, 적합을 위한 비용은 중소규모의 생가공자와 수출업자를 제외시킨다는 예측은 가능함.
 - 케냐의 경우 소규모 수출업자는 퇴출되며 대규모 업체가 대체됨.
- 수출체인에서 민간표준의 역할이 증가하면 공업화된 수입국과 생산자를 연결 하는데 수출업자의 역할이 증가하게 됨.
 - 수출업자는 생산자를 위하여 표준과 더불어 기술 및 재정지원을 하게 됨.
 - 또한 대규모 수출업자는 유럽연합의 농약이행프로그램과 같은 기부 프로그램의 연결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음.

○ 국내 소비자의 복지

- 일반적으로 개도국에서의 수출가의 인상은 전체 국내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음.
 - 혜택은 생산자와 근로자의 수입에 증가를 보여 이로 인한 국내 경제 활성이 도움이 될 수 있음.
- 표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제품이나 과다 생산품은 국내 시장에 들어갈 수도 있으나, 국내의 수요는 많지 않을 수 있음.

- 이러한 현상은 국내에서 높은 수준의 표준을 요구하여 일어날 수도 있음.

다. Codex의 대응

○ 알려진 논점

- 첫 단계로 Codex는 식품안전과 품질영역에서 민간표준이 권한과 실무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고 알려진 논쟁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 이 논쟁은 민간식품안전표준의 단점과 권리들을 확인하지 말고, 차라리 이러한 표준들이 Codex가 운영해야 하는 새로운 현실을 나타내고 있음으로 봐야 함.
 - Codex는 실질적으로 민간표준의 등장에 대응해야 하는가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를 시작하는 논점으로 시작해야 함.

○ 민간표준기관과 관계

- Codex는 주요한 민간식품안전표준기관 예를 들면 GFSI(이들은 단지 공식적인 옹저버임)와 같은 기관과 계약을 맺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점을 살펴보고자 함.
- 단기적으로는 민간표준기관과는 비공식적인 대화를 Codex사무국, 혹은 국가적 Codex 위원회와 대표, 혹은 FAO/WHO의 이해당사자 그룹과의 회의에서 이들 기관 사이에 대화를 통해서 넓혀갈 수 있음.
- 중기적으로는 Codex는 공공·민간 협의 플랫폼을 만드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음. 아마도 이사회에서 일 년에 한두번 만나서 민간표준기관에 의해서 Codex의 표준, 지침과 권고를 사용하는 것을 강화하도록 권하는 행동을 할 수 있는 영역을 찾아볼 수 있음.

○ 과정 운영, 행동, 우선적 사항

- 사무국은 민간표준의 부상에 의해서 나타나는 기회와 위협요인들에 대응할 수 있는지 방법을 찾아보아야 함.
- 궁극적으로 글로벌 농업·식품 라인에서 민간표준에 의해서 늘어나는 역할과 관련하여 Codex는 활동영역과 우선적으로 실행할 것을 알아보아야 함.
 - 예를 들어서 Codex는 민간표준이 식품 안전 분야에서 비워진 빈칸을 채우기 위해서 민간표준이 채우지 못하는 부분의 영역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 아니면 표준, 지침, 권고에서 계속하여 전체 스펙트럼을 채우면서 민간표준의 추가적 발전을 부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나은가? 민간영역이 더 많은 역할을 하는 곳에서 전 세계적으로 국제적 공식 기관들과 국가들의 역할에 대해서 현재 논쟁이 되고 있는데 쉽지 않은 질문에 답을 해야 함.

○ 사무국 강화

- Codex사무국의 활동에 대해서 살펴보면 사무국은 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민간표준을 만드는 기관과 계약을 맺고 민간표준의 증가하는 역할의 의미를 알아내도록 하며 사무국은 계속 Codex의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임. 만약 사무국의 계속적으로 직원채용이 강화되지 않는다면 그러나 이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임.

○ 제언

- 10-15년간 민간표준이 농업·식품 체인에서 식품안전규율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로써 등장함. 따라서 논쟁에도 나타난 것이 글로벌 농업·식품 체인의 방식과 절차 그리고 구조에 잠재적인 영향을 주는데 민간표준이 개발도상국에 위협이 되며 수익성이 좋은 잠재시장으로부터 더 많은 생산자를 배제시킨다는 논쟁임.
 - 이것은 의심할 수 없는 것으로 개발도상국들은 국가적, 국제적 수준에서 식품안전 규율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의 역할에 질문을 던지면서 의문을 제기함.
 - 동시에 많은 논쟁은 왜 민간표준이 등장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이들이 수행하는 기능, 그리고 정황적인 증거와 너무 철저한 분석은 오해로부터 벗어려 나왔다는 논쟁이 있었음.
 - 중요한 점은 민간식품안전표준은 공적강제표준의 요구사항을 넘어서지만 많은 경우에 이들의 주요기능은 구매업자들이 규율의 요구사항이 만족되었다는 것을 국제 농업·식품 체인에서 확신할 수 있는 사항을 제공하는 것임.
 - 더 나아가 기관형성, 범위, 존재 사실에서 민간식품안전표준의 다양성이 존재함.
- 민간식품안전표준은 만들 때 공적 규율보다 개방성과 투명성면에서 적합성이 낮다고 하지만 어떤 민간표준은 Codex나 ISO보다 더 나은 매트릭스를 가지고 수행하기도 함.
- 이렇게 증가하는 민간표준은 Codex와 SPS협정의 역할에 의문을 제기하게 되지만 확실하게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없음.
 - 민간식품안전표준이 존재하는 곳에서 민간표준의 시작점에서는 Codex 표준과 가이드라인 그리고 권고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이고 국가적 규율의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음.
 - 여전히 많은 품목에서는 민간표준이 정밀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고 이를 Codex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분명하게 Codex는 도전사항과 기회에 대해서 응답해야 하며 비공식적인 논쟁을 위원회 내에서 실시해야 함. 한편 Codex, 또한 FAO, WHO에서는 방법을 찾아서 더 효과적으로 상호간 신뢰를 증진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민간식품안전표준을 채택하거나 수립하는 기관을 포함하여 조직 내에서 더 효과적으로

계약을 맺어 일을 할 수 있음. Codex와 민간표준기관들과 같은 국제적인 표준 기관들 사이에 상호 연결시켜서 더 많은 것을 얻어낼 가능성이 있음.

2.3.3 국제수역사무국¹⁵⁾

- 제76차 OIE(World Organisation for Animal Health) 총회에서 Implication of Private Standards in International Trade of Animals and Animal Products을 발표(2008년).
- SPS위원회에서 민간표준에 대한 이슈가 제기되고 토의는 다음의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루어짐.
 - 시장접근성; 어떤 회원국은 민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표준이 공급자가 이들 제품의 품질을 개선하고 높은 품질의 시장에 접근할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고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음. 다른 회원국들은 민간표준들이 더 엄격하고 (예를 들어 낮은 수준의 농약 잔류성)과 더 지시하는 (예를 들어 하나의 바람직한 식품안전 결과물을 취득하는데 단지 하나의 방법만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측면이 공식적인 기준보다 더 많기에 추가적으로 시장에서의 접근을 막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함.
 - 발전; 많은 회원국들은 민간표준을 준수하는데 드는 비용, 인증에 필요한 추가 비용, 때로 다른 바이어들을 위해서 여러 개의 세트의 표준에 따르는 비용들이 문제가 되며 특별히 소규모 생산업자들과 특별히 개발도상국에게 문제가 된다고 함.
 - WTO 규정: 몇몇 회원국들은 표준을 마련하는데 적당한 민간영역의 구매 활동을 정부가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음. 반면에 다른 회원국들은 계속 SPS협정은 정부영역에서 수입 국가는 표준에 대해 책임이 있고 이 표준에는 이 협정과 민간영역에 의해 만들어진 범위까지 다 포함해서 수입국가 정부가 책임이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음. 후자는 이러한 민간표준이 SPS 조치 (주로 식품안전)의 투명성과 과학적 타당성 WTO 요구들을 만족시키지 않으며 보건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것 이상으로 무역에 제한이 되고 있다고 함.
- 민간표준과 SPS협정
 - 몇몇 WTO 회원국들은 우려를 표명하기를 민간표준의 확산이 결과적으로 공적 영역인 SPS협정을 부과하고 채택하는 것을 약화시킨다고 함. SPS협정에서 기본적인 요구사항에 따르면 건강보호에 필요한 만큼만 조치가 취해여야 하며 이 필요성을 설명하는데 과학적인 증거가 요구된다는 것임(응급상황에서 일시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만 제외).

- SPS협정에서 과학적인 타당성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방법으로 국제적으로 개발된 식품안전, 동물과 식물 보호 표준을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임. 이것은 OIE, Codex, IPPC에 의해서 채택된 것임. 국가의 요구사항과 이들 국제적 표준들의 조화는 뚜렷하게 국가의 요구사항들을 급증하는 것을 감소시켜서 무역을 촉진하게 될 것임.
- 반대로 정부들은 만약에 이들이 적절한 위해성평가에 기반을 두고 있다면 국가적 요구사항들을 정당화 할 수 있음. 하지만 부과된 조치들은 건강보호의 바람직한 수준을 달성하는데 요구되는 것만큼 무역을 제한하게 됨.
- SPS협정은 SPS조치에 대하여 투명성을 확신할 수 있도록 함. SPS 조치를 변형할 의도를 미리 정부가 감지해야만 할 뿐 아니라 무역의 파트너에 의해서 제기되는 사항들을 고려해야 함. 관련된 문서들을 제시하면서(위해성 평가와 과학적인 증거로 조치를 뒷받침하는 것 포함) 모든 조치들이 즉시 출판해야 함.
- WTO에서 SPS조치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조치를 채택하거나 품질과 환경의 조치에 응용하는 것보다 법적 의무사항에 달려있음. 이런 조치는 여러 다른 법적 체제, TBT협정에 의해서 다루어짐. 그리고 더 분명하게는 건강보호를 위해서 부과되는 요구사항들과 다른 목적을 위해서 부과되는 것들 사이에서 분명하게 구별됨.
- 마지막으로 WTO협정은 SPS 요구사항들이 다른 무역의 파트너에 의해서 WTO의 분쟁조정과정(WTO's unified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을 이용하는 것을 통해서 도전받을 수 있음.
- 반면에 몇몇 개발도상국 회원국들은 민간표준이 다른 방향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음. 민간표준이 SPS와 다른 목적들이 혼합되어 있다는 것임(식품안전 혹은 식품/동물 보건 보호와 관련되지 않은 사회적, 환경적 우려들을 포함하여). 이런 민간요구사항들은 과학적인 타당성이 없을지 모르며 소비자들의 어떤 것이 안전하고 안전하지 않은지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강조한 것인지 모른다는 것임. 다른 요구사항들은 선진국에서 일상적으로 생산 실행방식을 반영할 뿐 개발도상국가 생산업자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을지 모르며 알려지지 않은 방식들을 반영한다는 것임.
- 일부 개발도상국은 각기 개발되는 민간요구사항들이 조화 없이 증가하는데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 개인회사에 의해서 수행되는 인증서, 정부의 제도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며 어떤 인증서는 생산 조건이 변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정기적으로 새로이 갱신되어야만 하는 것도 있음.
- SPS협정은 개발도상국들이 국제표준을 준비하고 채택하는 것에 참여하는 것을 도와주는데 펀드(trust funds)를 만들거나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SPS협정의 제공사항은 개발도상국들의 특별한 부족사항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SPS협정은 타당하지 않은 테스트, 인증서 혹은 승인 과정에 소요

되는 비용들이 없기를 요구하고 이들은 무역에서 장벽으로 반드시 작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일부 개발도상국 회원 국가들은 민간표준운영기관들이 이들의 표준이 무역의 제한정도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이들 회원국들은 특별히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표준들을 달성하기 여전히 어려운 국가들에서 이들 국가의 민간영역에서 이들 민간표준들과 무역의 제한정도의 영향에 대해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음.
- SPS위원회에서 개최되는 정보세션들에서 어떤 민간표준 운영기관의 대표들은 이런 문제들을 인식하고 벤치마킹하는 노력 혹은 다른 표준 체계들을 받아들이도록 지적하고 있음. 어떤 노력들은 투명성을 증진시키고 있다. 여전히 어떤 WTO 회원국들은 정부규율에 기반하되 SPS협정에 비교하여 민간표준을 개발하는데 투명성이 없고, SPS위원회나 WTO의 분쟁 해결 절차에 상응하는 민간표준 포럼이 없음.
- 진행방향; SPS위원회는 민간표준을 강조하는 것을 계속할 수 있는 몇 가지 가능한 방법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지만 어떤 결정에 이르고 있지는 않음. 다음의 옵션들이 제안됨.
 - 특정 표준과 관련된 무역의 문제들에 집중; SPS 위원회의 의장은 회원국들이 민간표준이 무역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특별한 예를 찾아서 위원회가 이런 사례를 공부하고 가능한 해결책을 토론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함. 이런 접근방법은 더 나은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이해할 수 있고 수평적인 접근방법을 찾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 민간표준을 토론할 수 있는 또 다른 포럼을 찾는다; 많은 민간표준체계들은 SPS조치들을 넘어서는 이슈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회원국들은 다른 포럼들이 이런 토론에 더 적합할지 모른다고 주장함. 예를 들면 TBT위원회, UNCTAD, OECD, 세계은행(the Trade Standards Practitioners Network of the World Bank) 등임. 다른 회원국들은 SPS 위원회에서 민간표준을 계속적으로 토론하기를 바라고 있음도 분명함.
 - 정부의 규율기관들과 민간표준운영기관들 사이에 국내수준과 국제적 수준에서 대화를 실시; 비공식적인 정보세션과 SPS 위원회의 토론세션, 그리고 다른 포럼들을 통해서 이미 제기되었고 증가한 우려들을 양쪽에서 주제를 가지고 논의하는 것임. 이렇게 함으로써 연속되는 공식적 비공식적 의견교환이 강화될 것임.
 - SPS협정의 제13조에서 부과된 지침; SPS 위원회는 과거에 예를 들어서 동등성에 대한 제4조의 실행적 부과와 관련 부분을 결정하고 가이드라인을 채택함. 일부 회원국은 SPS위원회가 제13조에 대하여도 비슷한 지침을 개발하는 시도를 할 수 있다고 제안함. 회원국의 합의를 이끌기 어려운데 제12.7조에 따라서

위원회는 SPS협정의 본문을 개정하는 제안을 상세히 설명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개정과 같이 합의에 도달하는 가능성은 희박함.

- 분쟁 조정; 다른 회원국들이 WTO를 위반하였다고 믿는 회원국은 공식적인 분쟁조정 과정을 WTO에서 시작할 수 있음. 그러나 이런 경우에 특정 상황에 처한 이슈를 일반화하여 분명하게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음. SPS위원회의 2008년 4월 회의에서 소규모의 실무그룹이 진행할 수 있도록 토론하게 되고 위원회의 미래에 있을 미팅에서 민간표준을 계속적으로 의제로 하자는 제안이 있었음. 이런 제안은 SPS위원회 (2008년 6월 23일)전에 비공식 미팅에서 토의되며 포럼에서 실무그룹은 매우 작지는 않을 것임.

2.3.4 Standards and Trade Development Facility

- Standards and Trade Development Facility(STDF)는 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UNIDO)의 요구에 의하여 8개의 최빈개발도상국(베냉, 캄보디아, 라오스, 레소토, 모잠비크, 르완다, 세네갈 및 예멘)의 SPS분야에 대한 필요한 지원에 대하여 2009년 WTO SPS위원회에 보고함.¹⁶⁾
 - 이 보고서는 Integrated Framework(IF)의 Diagnostic Trade Integration Studies으로 알려진 방법에 의하여 STDF에서 평가한 보고서임.
- 이 연구는 최빈개발도상국의 농산물 생산성을 증가시키면서 농업과 식품의 안전성을 증가시키는데 목적이 있음. 이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위주로 조사함.
 - 가축과 축산물의 무역을 방해하는 질병의 존재 여부
 - 원예, 화훼 및 임산물의 무역을 방해하는 식물 질병과 해충의 존재여부
 - 수입국의 식품안전 요건을 부합시키지 못하여 수산물의 무역을 할 수 없는지의 여부
 - 공급선에서 적절한 SPS 위해도관리를 할 수 없어 고부가 가치의 가공품 대신에 저가의 상품을 수출하는지 여부
 - 유제품의 무역을 방해할 수 있는 냉장시스템과 살균시설의 미비 여부
- 최빈개발도상국의 주 산업이 농업인 점을 감안할 때 SPS관련 능력 배양은 국제 무역을 증가시켜 줄 수 있음.
 - 여러 기관에서 실시한 평가 보고서에 공공분야에 대한 사항을 보면 “...의 부족”이라는 말을 많이 발견할 수 있음.
 - 이에는 기본구조, 전문성, 직원의 기술, 신뢰할 수 있는 자료, 검사 및 관리 시스템 등의 자원 부족이 있음.
 - 이들 국가의 수출을 위하여 수입국의 법률적 기준·규격 이외에도 민간표준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

- SPS 관련 제도에 대한 대응은 선행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아닌 외국의 요구에 대하여 반응하여 변화하고 있음.
 - SPS 관련 제도에 대한 개선을 위하여 비용-효과 분석을 통한 활동계획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여야 함.
 - 우선순위에 따른 시행을 위하여 적절할 지원 기관을 발굴하여야 함.
- 각각의 최빈개발도상국에서 수집된 자료를 평가한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 가축 질병과 식물 해충과 같은 구조적 사안에 대한 투자를 고려.
 - 모든 단계에서 good agricultural practice와 good manufacturing practice 또는 국제적으로 알려진 시스템에 대한 적합 강화.
 - 제도 및 법적 기초구조에 대한 고려.
 - 계획적 또는 전략적으로 실험실에 투자하여 진단 능력 강화.
 - SPS 관리와 적합을 위한 민간부분의 역할을 확인하는 전략 계획
 - SPS 외교의 강화

2.3.5 국제표준화기구민간표준

- ISO는 국제표준과 민간표준(International Standards and “private standards”)라는 문헌을 통하여 민간표준에 대한 입장을 설명.¹⁷⁾
- 민간표준(private standard)은 정부 이외의 기관에서 제정한 모든 표준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나, 특징에 대한 오류가 있을 수 있음. 따라서 본 문서의 목적은 공적인 국제 표준 제정 기구(international standardizing organization)과 다른 민간 표준을 구분하기 위함.
 - ISO의 관점에서 최소한 세 분류의 민간표준이 있음.
- 소매 및 농식품 분야(retail and agri-food industry)의 민간표준
 - 소매 및 농식품 분야의 민간표준은 비록 표준 제정 동기가 다르더라도 초기 정보통신분야에서 나타났던 문제점과 유사한 많은 문제가 있음.
 - 예로 국제식품안전계획(Global Food Safety Initiative, GFSI)은 2000년에 식품안전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과 소비자에게 신뢰받고 일관성있게 안전한 식품의 공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식품소매업의 대표이사들의 요구에 의하여 설립됨.
 - GFSI는 선도 기업들에 의하여 관리되어 지며, 이들의 표준은 산업계의 전문가 요구가 반영되며, 일반적인 국제 표준 제정기구의 의무(예, WTO TBT협정의 투명성 원칙, 개방성, 공정성 및 합의 등) 뿐만 아니라 WTO TBT협정 부속서 3의 모범관행(Good Practice)에 부합할 필요가 없음.

-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일부 Global GAP(예전의 Eurep GAP) 등의 농식품 관련 민간표준에 대하여 국제표준에서 정한 규정보다 더 강력한(예, 잔류농약허용기준 등) 기준을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함.
 - 이러한 분야의 표준은 일반적으로 Codex에서 제정함.
 - 이 표준의 제정은 대부분에 적용되는 국제 표준화 절차에 부합하지 않으며, 국가 규율에 특정되지 않는 민간 표준은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효과적으로 채택되고 이행되기 위해서는 규제자와 기타 이해당사자로부터 지지를 받기 위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함.
 - 이 분야에서, ISO와 공식적인 표준화 시스템은 ISO 22000 시리즈를 통하여 기초적인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을 조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정보통신 분야의 민간표준 및 사회·환경 분야에 대한 민간표준이 있음.
 - 표준을 개발한 기구는 표준에 부합하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추가적으로 인증, 마크 및 표지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음. 그러나 모든 표준이 동일하게 개발되지 않음.
 - WTO의 SPS협정은 규제조치의 기초로 지정된 기구에 의하여 개발된 국제표준을 사용할 것을 권하고 있으며, TBT협정은 국제 표준 개발 원칙에 부합할 것을 권하고 있음.
 - 따라서, WTO협정에 부합하는 원칙을 가지고 제정되는 표준과 그러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여야 할 것임
 - 민간표준은 WTO협정에 부합하지 않는 표준으로 할 수 있을 것임.

2.3.6 유엔무역개발위원회

- 유엔무역개발위원회(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UNCTAD)는 2005년 기니, 모잠비크 및 탄자니아의 SPS 부합과 농식품의 안전에 관한 보고서를 WTO SPS위원회에 제출함(G/SPS/GEN/567).¹⁸⁾
- EUREP/GAP에 부합하기 위한 소요 비용을 보고함.
 - 공공 비용

국가	관련 기구/기관	비용(US\$)
탄자니아	TBS	870,000
	Ministry of Agriculture: Plant Health Division	1,090,000
	Ministry of Health: Department of Environmental Health	560,000
	TOTAL COSTS	2,520,500
모잠비크	INNOQ	5,590,000
	Ministry of Agriculture: Plant Health Division	2,840,000
	Ministry of Health: Department of Environmental Health	820,000

	TOTAL COSTS	9,250,000
기니	INNM	670,000
	Ministry of Agriculture: Plant Health Division	1,555,000
	Ministry of Health: Department of Environmental Health	570,000
	Division of Production	200,600
	Division of Seed and Seedlings	1,380,000
	CRAF	1,485,000
	CFC	76,000
	총 비용	5,936,600

Source: Abstract from Costs of Agrifood Safety and SPS Compliance, UNCTAD, DITC

- 개별 농장 비용

· EurepGAP에는 250개의 관리점이 있음.

EUREPGAP 요건	탄자니아		모잠비크		기니	
	개시비용	지속비용	개시비용	지속비용	개시비용	지속비용
1.Traceability	4,300	100	4,300	100	4,500	100
2.Record Keeping And Self-Inspection	6,000	3,600	7,000	3,300	5,000	3,500
3.Propagation material	0	0	0	0	50,000	
4.Site Management	900	0	900	0	0	900
5.Risk Assessments	1,500	300	1,500	300	1,500	300
6.Technical Services	0	2,000	0	2,000		2,000
7.Laboratory Analysis	0	3,000	0	3,000	5,000	5,500
8.Soil And Substrate Management	1,000	100	1,000	100	300,000	
9.Fertiliser Use	2,500	750	7,500	1,000	200,000	300
10.Crop Protection	10,400	1,250	23,900	2,200	210,000	1,500
11.Irrigation/Fertilization	600	0	600	0	300,000	400
12.Harvesting	9,800	200	12,000	800	5,000	500
13.Produce Handling	11,300	100	11,300	600	1,000,000	15,000
14.Waste & Pollution Management	800	50	5,800	300	300	0
15.Worker Health, Safety And Welfare	47,490	4,250	28,500	6,100	9,000	8,000
16.Environmental Issues	1,100	200	1,100	200	1,000	1,000
17.Certification Costs	1,000	2,000	4,000	1,000	10,000	5,000
18.Eurepgap Procedures	0	2,600	0	2,600	900	2,000
19.Establishment of farmers organisation	0	0	0	0	90,000	6,000
20.Establishment an Inter-professional Confederation of food chain actors	0	0	0	0	60,000	4,000
21.Train intermediary food chain actors	0	0	0	0	6,000	1,000
총 비용(USD)	98,690	20,500	109,400	23,600	2,197,200	27,000

Source: Abstract from Costs of Agrifood Safety and SPS Compliance, UNCTAD, DITC

○ 권고사항

- 국가 법령의 개정; CODEX, OIE, IPPC의 국제표준 및 수출 대상국의 법령과 조화 필요함.
- 표준의 개발; 열대과일에 대한 표준 제정이 필요함.
- 수출 인증 절차의 강화; 수출국의 식물 검역 증명서는 무역에 절대적으로 필요함. 수출국의 식물검역 기관의 신뢰도를 잃으면 통관을 위하여 보다 긴 시간이 필요하며 강화된 검역을 실시하여 무역이 어려울 수 있음.
- 수입을 위한 검사·검역 제도의 강화
- 국가 차원의 정보, 감시 및 경고시스템의 구축
- 시험기관의 능력 배양
- 농약의 사용과 잔류량에 대한 모니터링과 등록제도 강화
- 관리 대상 해충에 대한 정립.
- 식물과 식품안전 공공 표준의 촉진
- 국제 표준 제정 기구에서의 참여
- 정보 접근과 훈련
- 구조 조정
- 각 기관간의 협력

2.3.7 경제협력개발기구

- OECD는 Final report on private standards and the shaping of the agro-food system를 2006년 제출한 바 있음(AGR/CA/APM(2006)9/FINAL).¹⁹⁾
- 농식품 시스템을 형성하는데 있어 민간 자율 표준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제품의 대외구매에 집중하여 조사함.
 - 시장의 진입과 아울러 수익, 경쟁력, 농장의 노동자 안전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민간표준의 중요성에 대해서 농업생산자들의 견해에 대해서 조사.
- 지난 십여 년간 식품분야에서 민간표준 체계에서 3가지의 주요 현상을 확인
 - 제품과 가공과정에서 모니터링 등 식품산업에서 자발적인 관리시스템으로의 이동
 - 민간의 집합적 자발적 표준들을 수립하는데 대해서 회사들의 연합 등장
 - 글로벌 기업간 거래(business to business, B2B)에서 민간표준의 사용 증가
- 민간표준체계의 사용과 발전은 경제 환경과 회사를 운영하는데 법적 체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
 - 경제 환경을 특성화할 수 있는 주요 요소들 가운데에서 환경, 노동 조건, 동물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생산방법과 식품안전 분야에서는 특별히 식품과 관련하

여 소비자의 요구와 기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경제적 환경을 특성화하고자 하고 있음

- 민간표준을 발전시키는 요인들로는 민간표준을 준수하는 것을 확인할 때 제3자 감사와 인증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큰 요인으로 나타남.
 - 이들 시스템에서도 민간표준이 발전된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소매업자들끼리 경쟁이 증가하면서 자체 모니터링은 감소하고, 감시 비용을 낮추고, 대신에 전세계를 통해서 제품의 대외구매를 증가시키는 방법이 등장한 것으로 나타남.
 - 소매업자들의 주요 우려사항은 식품의 품질과 안전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회사의 평판으로 귀결됨.
 - 소비자의 기대를 부응하지 못할 때 식품안전 관련한 회사의 평판을 해치며 결과적으로는 이익과 소비자의 신뢰에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됨.

- 법적 체계에서 회사들은 민간표준체계를 개발하는 것을 주요한 것들로 고려하고 있는 이유는
 - 민간표준을 개발하면 주어진 식품안전 규칙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신할 수 있음.
 - 결과적으로 혹시 실패하더라도 방어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할 수 있음.
 - 따라서, 기업간 거래에서 민간표준을 개발하고 사용하는 것은 새로운 식품경제에 의해서 부과되는 요구사항들과 평판의 중요성 모두에 대응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고 공정관리를 강조하고 있음.

- 식품안전이 법적 체계는 모든 기업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어떤 기업도 식품안전의 실패 가능성으로부터 예외일 수 없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식품안전에 대한 이들의 견해는 경쟁적인 이슈가 아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음.
 - 민간표준을 개발하는 데 식품 안전 분야는 시스템에서 협동하는 것을 통해서 달성해야 함.
 - 표준을 조화시키는 것은 구매업자와 공급업자들에게 모두 거래비용을 감소시키고 대외구매를 촉진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 이런 부분들이 소매업자들이 협동을 촉진하는 주요한 동기라고 인식하고 있음.

- 식품안전표준을 개발하는 것과 관련된 첫 민간표준으로 유럽식품소매업자이 EurepGAP를 제정함.
 - 이는 Global Food Safety initiative(GFSI)를 설립하는 것으로 이어져, 민간표준의 발전을 위해서 요구된 기준들을 수립하게 하였고 다른 그룹들에 의해서 벤치마킹된 결과물임

- EurepGAP은 단지 일차 생산을 언급하고 있으나 표준인 GFSI의 표준은 농산품에 추가하여 가공 제품과 소매 유통 실행에 대한 표준을 포함하고 있음.
- 농식품 제품의 민간표준에 대해서 소매업자들에 의해 요구된 민간표준은 전통적인 최종 제품 관리에 더불어 원하는 결과물을 획득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관리공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요구사항들을 보고(reporting)하는 것과 연결하도록 한 이런 과정들은 정부의 요구사항들보다 민간표준을 더 많은 것을 요구하도록 만들고 있음.
 - 민간표준은 다른 분야들처럼 기술의 향상과 조화의 노력을 가지고서 식품안전 측면에서도 민간표준 증가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
 - 식품 분야에서 회사들 사이의 협력 다음으로 노동자의 사회적 조건과 노동 조건들은 중요한 이슈로 나타남.
- 농업조합 조사 결과 식품안전과 다른 생산 공정 특성에 대해서는 특별히 농업과 환경에 강조함.
 - 민간표준을 만족시키는 것은 제조업자와 소매업자 모두에게 영업을 실행하는데 중요조건으로 간주되고 있음.
 - 많은 응답자들은 표준들 간의 요구사항이 중복되어, 표준들 사이에 조화를 희망함.
 - 표준이 소득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모호한 것으로 보고서 결과 나타남.
 - 그러나 많은 응답자들은 물품 운송량과 시간에 맞춘 납품과 공급 실행계획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것은 후속 구매업자(downstream buyers)들을 위해서 시장진입을 확신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라 함.
- 민간표준의 체계가 식품시스템의 효율을 개선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특정 제품을 유통하고 확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공정은 소비자들에게 타당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표준들은 특정 생산자들을 배제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존재함.
 - 민간표준을 준수하는 것은 잠재적으로 경제 여건이 어려운 생산자 혹은 표준의 요구사항들을 쉽게 만족시킬 수 없는 공급자들을 배제 가능성이 있음.
 - 이런 이슈는 잠재적으로 물리적 사회기반 서비스가 잘 작동하기 어려운 개발도상국의 소규모업자들에게 더 중요할 수 있음.
 - 민간표준 개발은 민간표준체계 때문만이 아니라 산업화된 기구의 일반적인 흐름이며 이것은 경제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항임.

2.3.8 민간기구 입장 사례

- ICFAW(International Coalition for Animal Welfare)는 2010년 비정부 동물복지 관련 기구의 전 세계 연합체로 출범.

- ICFAW는 과학에 기반한 민간표준을 지지하고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에서 동물의 복지를 증진하는 통합 메카니즘이라고 믿음.²⁰⁾
 - ICFAW회원은 민간회사들과 기관들이 동물복지표준을 채택할 것을 강하게 권고하고 법제화와 함께, OIE기준에 대한 복지요구를 뛰어넘는 정책을 실시할 것을 지지함.
 - 본 보고서는 OIE와 민간표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농장가축의 복지를 개선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동물복지표준은 다른 수준에서 설정될 수 있음. 두 개의 사례를 제시함.
 - EU에서는 강제적 표시를 계란에 대해 실시하고 있음. 이에는 세 개의 다른 수준으로 동물복지 표준이 있는데 방사란(free range), 곳간 사육란(barn) 및 새장을 통해 생산된 계란(cage)으로 나눌 수 있음. 이것은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분명한 이익이 됨. 소비자에게는 그들이 구입하기를 원하는 수준을 고를 수 있고 생산자에게는 높은 표준에 대해서는 프리미엄을 얻을 수 있게 됨.
 - 소비자의 반응은 유럽국가에서 분명하게 나타남. 영국에서는 50% 이상의 판매가 cage에서 기르지 않은 닭에서 생산된 계란에서 일어남. 네덜란드와 오스트리아에서는 모든 주요한 소매업자는 단지 non-cage egg에 대해서만 판매하고 있음. 그러나 스페인에서는 free range란의 판매는 2%임.
 - 닭고기에 대해서는 강제적인 표시는 없지만 민간표준이 점점 중요한 메카니즘으로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시장을 구분하며 홍보를 촉진하고 높은 동물복지표준을 채택하도록 하고 있음.
 - 영국에서 높은 복지수준으로 생산하여 판매되는 닭고기는 2004년에 1.8%에 불과하였던 것이 2008년에는 17%로 늘어났으며, 18개월간 10%이상의 증가를 포함하여 증가한 바 있음. 이런 농장에서 닭의 복지의 증진은 민간표준과 뒷받침하는 인증 계획 없이는 발생하기 어려웠을 것임.
 - OIE는 아직 계란과 닭고기에 대해서 표준을 설정하지 않았지만 현재 실무그룹에서 토의하고 있고, 하나의 표준이 몇 년 내에 만들어질 수 있음. OIE가 수립할 표준의 수준이 현재 조화되어 있지는 않음. 따라서 동물복지와 동물보건에 대한 OIE 기준은 다른 특성을 보일 것임.

- 유럽의 6개국은 대다수의 계란은 non-caged가 판매됨. 모든 것은 유럽의 표시 시스템에 의해서 확인되지만 이들 중 대다수는 민간표준제도를 따름. 이런 제도는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여 cage system을 종식 시킬 수 있을 것임. 지속적인

연간 판매액은 소매업의 경향에 계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이런 민간표준이 cage system을 금지하게 되됨. 거의 유사한 경향이 영국에서 닭고기에서도 나타나서 민간표준을 활용한 식품이 마케팅에 사용됨.

- 미국에서 소비자의 복지의 이슈는 점차 증가하고 있어서 미국에서 가장 큰 돼지 생산업자인 Smithfield Foods는 2007년에 10년간 돼지의 사육상자를 사용하던 것을 하지 않게 됨.
 - Smithfield는 1.2백만두의 암퇘지를 키웠고 많은 소매업과 레스토랑의 주요 공급자로서 민간표준을 운영함.
 - Maple Leaf는 캐나다에서 가장 큰 돼지생산업자로서 마찬가지로 같은 시스템을 종식시킴.
 - Strauss Veal이라는 미국의 선두 송아지고기 생산업자와 Marcho Farms는 2007년 계약에 의하여 운영방식을 상자 없는 그룹 사육 시스템으로 2-3년 내 바꾸기로 함. 이런 운영은 송아지들이 거의 바깥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전환할 수 있게 된 것임.
 - 국가 소매 체인인 Whole Foods Market과 Wild Oats Natural Marketplace는 현재 cage-free egg 정책을 이들 상점에 민간표준으로 부과하고 있음.
 - Burger King은 2007년에 표준으로 많은 동물복지정책을 채택할 것을 발표함.
 - 이에 cage-free 계란을 쓸 것과 1년내에 사육상자(gestion crates)에서 돼지를 사육하도록 하지 않는 돼지 생산 업자에게 20%를 구입하기로 함.
 - 영국의 맥도날드에서는 민간표준을 위해서 단지 free range 계란만을 사용하고 non-intensive pigs만을 사용하도록 함.
 - Unilever는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식품제조업체이며 다국적 회사로써 영국에서 Hellmann's Mayonnaise에는 free range eggs만 사용하고 2012년까지 Unilever 브랜드의 마요네즈와 드레싱에는 모든 유럽에서 cage-free 계란을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개발도상국에 민간표준 가치
 - 민간표준에 반대하는 주요 세 가지의 이슈는 아래와 같음.
 - 투명성 부족
 - 비용 부과
 - 여러 표준을 부과
 - ICFAW는 이런 우려를 이해하고 있으며 민간표준이 가능한 투명해져야 한다고 믿음. 특히 모든 표준은 공개적이고 접근 가능하여야 하며 운영제도에서의 정보와 평가가 유용성이 있어야 함.
 - 더 나은 소비자정보는 개별 웹사이트를 포함하여 다양한 메카니즘을 통해 나타날 수 있음. 민간표준은 처음 표준을 부과하고 훈련하는데 드는 높은

- 비용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개발도상국을 특별히 기술은 전이할 수 있게 지원하여야 함.
- 추가로 높은 동물복지를 달성하는데 민간표준은 시장에 기회를 주고 개발도상국을 위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과정을 제공할 수 있음. 두 개의 예는 아래와 같음.
 - 나미비아에서 쇠고기 산업은 정부에 의해서 규제되고 재정과 소유는 Meat Board of Namibia에 의해 소유되고 개별적으로 재정이 조달됨. The Meat Board of Namibia는 표준을 설정하여 쇠고기 산업의 개발에 책임을 지고 이들의 건강과 복지에 대한 표준을 이들의 농장인증제도 FANMEAT을 설정함. 이것은 나미비아의 수출시장에서 긍정적 효과를 주어 무역 균형에서 중요한 부분이며 쇠고기 산업임. 육류 산업은 국가의 전체 수출에서 6% 이상을 차지하며 2001년에는 87백만불 이상을 수출함. 매해 생산되는 쇠고기의 80%는 수출되며 나미비아의 아프리카에서 영국으로 수출하는 쇠고기의 가장 큰 수출을 차지하며 전체 영국 쇠고기 수입의 3%를 차지함. 이것은 나미비아의 쇠고기관련 산업에 특성에서 기인하는데, 높은 품질을 가지고 있다는 점과 보츠와나의 구제역 문제에 기인함. 육류의 품질 이슈는 FANMEAT 인증제도와 연관되며 이것은 특정 동물 복지와 표준을 보증함.
 - 태국은 2005년에는 닭고기를 십만 톤을 해외(일본 55%, EU 40%)로 수출함. 태국은 가공된 닭 28만 톤을 수출하는데 805백만불에 해당하며 전년대비 40%의 증가를 보였음. 생산된 닭고기가 유럽으로 수출될 때 유럽의 소매상은 수출과 수입국 모두에게 기본적인 기준(baseline standards) 보다 나은 민간표준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아르헨티나에서 가장 큰 쇠고기 사육지역에서 동물 복지를 위해서, 그리고 또한 지역의 생산업자들에게 시장 기회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아르헨티나는 La Pampa에서 전의 생산부 장관이 동물 복지 표준을 그의 지역에서 개선할 의도가 있음을 확인함.
 - 동물복지를 위한 민간표준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모두에서 동물 복지를 증진시키는 중요한 메카니즘임.
 - 민간표준은 개발도상국에게 시장기회를 줄 수 있음.
 - 동물복지에 대한 민간표준 사이에 차이점이 존재함.
 - 민간표준은 투명하고 개발도상국이 표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제IV장 시사점 및 대응방안

1. 시사점

- 민간표준의 발전은 다분히 스스로를 보호하고 소비자의 요구에 의해서 유발된 초기 의도와 달리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다른 이해관계자로서의 입장, 즉 시장점유에 유리한가, 기술적 장벽으로 작용되지 않는가, 소비자의 입장을 과도하게 요구하고 있지 않은가, 국제적 표준을 무시하고 민간표준끼리도 조화하지 않고 요구되고 있지 않은가 등 많은 논점을 제시하고 있음.
 - 이해당사자의 입장에서도 부과하는 측면과 받아들이는 측면, 그리고 이러한 민간표준을 수용하여야 하는 수출국이나 생산자 입장에서도 기술적 수준 및 재정적 상황, 자국내 산업 여건에 따라서 입장들이 달라지고 있음.

- 우리나라의 민간표준과 정부표준은 대부분 최종제품의 기준·규격을 정하고 있음.
 - 이러한 특성은 HACCP, GAP 등의 많은 국제적 민간표준이 절차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HACCP, GAP 등 절차 기준의 경우 법률적 기준을 정하고 이러한 공정 또는 절차에 대한 인증도 정부에서 실시하여 법령의 요건의 만족시키기 위한 방법을 민간에게 위탁하고 있는 유럽 등 외국의 사례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민간표준은 최종제품의 상품적 등급을 나누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
 - 우리나라는 일부 민간표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민간표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상품적 가치를 판단하기 위한 최종 제품의 기준임. 다만 공적으로 정하고 있는 표준보다는 일부 강화된 면을 보이고 있음.
 - 민간단체의 표준은 개별 기업의 표준과 정부기준의 중간정도의 사안을 확인하고 있음. 이는 민간표준에서 위생 기준은 별도의 언급이 거의 없음.
 - 다만, 병·해충 입은 것, 생리장해 등 일부 관능적으로 판단 가능한 사안이 포함되어 있어 식물위생에 대한 것도 포함되어있다고 볼 수 있음.

- 우리나라는 조사 결과 국내에서 개별 기업(유통업자 포함)에서 구매표준은 가지고 있으나, 소비자 단체 또는 생산자 협회 차원의 민간표준은 아직 활성화되지 않음.
 - 이러한 현상은 KS 등 대부분의 민간표준이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법에 근거하여 제정하고 있는 것과 연계되는 것으로 판단됨.

- 민간표준의 영향
 - 민간표준의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투명성 결핍, 인증을 위한 고비용 및 관리의 어려움은 소규모 생산자에게 적용이 어려울 수 있음.
 - 다만, 대규모 생산자가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민간표준을 준수하는 경우 수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임.
 - 다만, 보다 안전하고 국내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우리나라만의 민간표준을 도입을 유도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보다 우수한 제품을 공급할 가능성은 있으나, 무역 장벽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나아가 국내 유통을 위한 생산자도 대규모 생산자에게 유리할 가능성이 있음.
 - 이 경우 수입업자는 수출국의 수준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수출업자와 생산자에 대한 지원도 고려하여야 할 것임.
 - 수입국에서 직접 민간표준의 부합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라도, 민간표준의 인증을 받은 경우 수출에 유리할 수는 있음.
 - 뉴질랜드의 일부 수입업자는 자체적으로 GlobalGAP를 요구하지는 않으나, 수출국이 GlobalGAP 등의 민간표준에 인증을 받은 경우 그러하지 않은 경우보다 보다 신뢰할 수 있음을 설명함.
 - 이 기업이 자체적으로 GlobalGAP를 요구하지 않는 이유는 뉴질랜드의 수입량은 수출국의 생산량의 매우 작은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표준에 부합하는 제품의 가격 상승이 많거나, 제품의 구매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로 요구하지는 않음.
- 현재는 민간표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므로 국제적 동향을 면밀히 지켜보고, 우리나라 국내의 사정이 어떤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음.
 - 그러나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산업정책이 특히 농업 및 식품 관련한 정책이 지향해서 나갈 방향을 우선 결정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국제기구에서의 논의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결정된 입장에 따라 대응이 가능할 수 있음.
 - 한편 우리나라의 소비자들의 요구사항이 어떤지를 국가적으로 알아야 함. 국내 소비자들의 요구가 있게 되면 민간에서도 이를 도입하지 않을 수 없음.
 - 현재 유럽 및 미국 등에서는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서 민간표준의 영역이 점차로 넓어져 환경, 동물 복지, 노동 부분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이의 표시를 통한 마케팅 전략으로 사용하고 있음.
 - 기업은 차별화된 상품의 판매를 위한 전략적 방법으로 민간표준을 도입하고 있으며 자유경제시장에서의 경쟁을 위한 소비자 요구를 수용은 점차 확대될 것임.

2. 대응방안

2.1 WTO SPS위원회에서의 대응방안

- WTO SPS위원회에서 민간표준에 대한 논의를 이미 개시하였으므로 우리나라의 바람과 무관하게 논의는 지속될 것으로 판단됨.
 - 이에 민간표준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 정립이 바람직함.
 - 민간표준은 WTO등 국제 무역이외에도 국내 유통에 대하여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우리나라는 개별 기업에서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민간표준 외에는 거의 대부분은 법률에 의한 표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단체가 제정한 표준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법률에 의한 표준은 이미 SPS협정에 대상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민간표준은 LOHAS 친환경식품 및 기타 친환경식품 등에 관한 표준이 있음.

- WTO협정의 대상은 조치(measure)로서 정부가 관여하여 제정한 모든 것으로 강제성 여부를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민간표준은 WTO이외에도 정부 간의 협상인 자유무역협정에서도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협상의 대상이 아니므로 민간표준을 활성화하여 과학적 근거가 없는 단순한 국민의 우려 사안에 대하여도 고려할 수 있도록 유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이 경우 SPS협정 제13조 네 번째 문장에서 회원국은 비정부기구가 SPS협정의 규정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장려하는 효과를 가지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음.

- 따라서 단체에 의한 민간표준의 활성화를 통하여 수출경쟁력 확보와 수입할 때에는 소비자의 요구에 맞추어 고품질 농식품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2.2 민간 표준의 정의

- 정의의 필요성
 - 민간표준에 대하여 WTO SPS위원회에서 논의하기 위하여 모든 회원국이 동의할 수 있는 표준의 정의 개발이 우선되어야 할 것임. 민간표준의 정의를 도출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가능함.
 - 정의를 개발함으로써 논의에서 서로 같은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 민간표준의 정의가 SPS협정의 “국제표준, 지침 및 권고”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아야 하며, SPS협정의 개정을 비롯하여 해석 등 어떠한 변화도 없어야 할 것임.
- 민간 표준의 적용 범위
 - WTO SPS협정 부속서 A의 SPS조치의 정의를 따르는 것이 바람직함.
 - TBT협정은 이미 회원국으로 하여금 지방정부와 영토내의 민간표준제정기구에 대한 TBT협정의 모범관행규정을 수용하고 준수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 비록 하나의 민간 표준에 SPS, TBT, 환경, 노동, 동물복지 등의 사회적 관심사에 대한 사안을 함께 포괄하고 있다 할지라도 SPS위원회에서의 논의는 SPS에 관한 민간표준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이와 같이 제한하여도 유기농 표시 등과 같은 일부 사안은 SPS와 TBT의 명확한 구분이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음.
 - 다만 이와 같이 각 항목별로 해당 협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각 협정별 접근방법에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음.
 - 현실적으로는 SPS위원회에서 타 WTO 위원회 소관 항목(예, TBT, 환경, 노동, 기타 사회적 이유 등)에 대한 논의는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투명성
 - 민간표준의 개발 단계와 최종 표준은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어야 함.
 - 이를 위하여 민간표준의 개발은 미리 정해져 있는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져야함.
 - 투명성을 정의에 포함시키는 경우 이미 적용되고 있는 일부 민간표준은 제외될 가능성이 있어, 투명하게 제정되지 않는 것도 민간표준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 민간표준의 개발(준비)
 - 민간단체가 주체가 되어 개발이 원칙임.
 - 실제 적용 받는 제품의 양(예 시장점유율)과 관계없이, 대형 유통체인의 표준 등 하나의 개인 기업(또는 그룹사 포함)이 내부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개발한 표준은 합의라는 절차가 결여되어 민간표준으로 보기 어려움
 - 동업자 조합 등의 단체, 소비자 단체에서 개발한 것은 비록 내부적으로 개발하였다 할지라도 합의를 걸쳐 준비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민간표준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 정부(중앙/지방 등)는 민간 표준의 개발에 참여는 가능하나 단순 참가 또는 참관이 바람직함. 정부는 경제적 지원을 포함하여 민간표준의 제정을 주도하여서는 않됨.

- 민간표준의 제·개정은 모든 관계자의 합의(만장일치로 제한하는 것은 아님)에 의하여서만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채택
 - 개발된 표준의 채택 여부는 개별 민간기업이 자발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함.
 - 개발된 표준을 정부가 채택하는 경우 강제조항이라면 SPS 협정상의 SPS조치에 해당하며, TBT협정에선 이행에 강제성이 부여되는 기술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이와 같이 법률과 연계된 표준은 SPS위원회의 논의에서 더 이상 민간표준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법률과 연계된 민간표준은 자율성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SPS협정의 대상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임.
- 적용
 - 개발된 표준을 특정 기업에서 채택하는 경우 모든 적용여부는 그 기업의 책임 하에서 자율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것임.
 - 적용여부의 감사는 정부의 개입이 없이 민간표준을 운영하는 민간인증기구 또는 자가 선언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적합성 평가
 - 적합성 평가는 자기 평가를 통한 자기 선언(self-declaration)과 민간의 제3자 평가를 활용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SPS위원회에서 논의 대상이 되는 민간표준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적용범위; SPS협정의 SPS조치와 상응하는 사안에 한함.
 - 민간표준의 개발; 상업 또는 비상업적 민간단체(단일기업 및 재벌 등 제외)에서 이해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채택한 표준
 - 채택; 민간이며 자율적(법률적 강제성이 없는 것)으로 채택하는 것으로 한정.
 - 적합성 평가; 자기 선언 또는 민간의 제3자에 의한 평가하는 것으로 모두 가능할 것임. 다만 정부기관이 관여하는 경우는 정부기관이 법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체 사업으로 시행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채택 및 이행; 민간 인증 기구를 통하여 실시.
 - 채택 및 이행은 상품에 표시 또는 마크의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며, 채택한 기업·단체의 광고와도 연계될 수 있을 것임.

2.3 WTO SPS위원회에서의 논의 대응방안

2.3.1 개별 회원국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 사안

- 다음의 사안은 SPS 사무국에서 제안하였거나 G/SPS/55로 합의된 향후 작업에 대한 내용으로 개별 회원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안전에 대한 것임.

- G/SPS/55로 향후 작업으로 합의한 내용

① 민간 SPS 기준의 정의 마련 및 논의 한정

- “2.2 민간표준의 정의” 참고

- 민간 SPS 표준으로 논의를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정의에서 개별 기업에 의한 표준을 민간표준에 포함시켜 합의되는 경우라도 논의는 합의에 의하여 개발되어지는 표준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사무국에서 제안한 작업

① 민간 SPS 표준의 정의 마련; “2.2 민간표준의 정의” 참고

⑦ SPS 협정이 민간표준에 적용되는지 검토

- 원칙적으로 SPS협정은 정부간 협정으로 정부의 조치만이 대상으로 판단됨.

- SPS협정에서는 SPS조치의 강제성 여부에 대한 차별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어 강제성을 가진 SPS조치 이외에도 강제적이 아닌 조치에 대하여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제13조 두 번째 문장에서 회원국은 중앙정부가이외의 기구(other than central government bodies)에 대하여 SPS협정을 협정의 규정의 준수를 지원하는 적극적인 조치 및 제도를 입안하여 시행을 의무화(shall)하고 있음.

- 또한 다음 문장에서 회원국은 역내의 비정부기구(non-governmental entities)에 대하여 이 협정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이용 가능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의무화(shall)하고 있음.

- 같은 조 네 번째 문장에서 회원국은 비정부기구가 SPS협정의 규정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장려하는 효과를 가지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도록 정하고 있음(shall).

- 이와 같은 협정문을 보아서는 민간 표준은 SPS협정의 직접적인 대상은 아니나 회원국은 영토내 또는 지역의 민간표준이 SPS협정의 의무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는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음.

- 민간표준의 활성화를 장려하되, 민간표준은 가능한 범위에서 SPS협정 준수를 장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민간표준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한 경우 외국에서 정부개입여부가 불분명해 지는 경우가 있어 SPS위원회에서 특정무역우려 안전(Specific Trade Concerns)에 논의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⑧ SPS 협정 제13조 이행 지침 개발

- SPS협정 제13조은 다음과 같음

회원국은 이 협정에 따라 이 협정에 규정된 모든 의무의 준수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회원국은 중앙정부기관 이외의 기구에 의한 이 협정의 규정의 준수를 지원하는 적극적인 조치 및 제도를 입안하여 시행한다. 회원국은 자기나라의 영토내의 관련기관이 회원인 지역기구 및 자기나라의 영토내의 비정부기구가 이 협정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이용 가능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 또한 회원국은 이러한 지역기구, 비정부기구 또는 지역정부기구가 이 협정의 규정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장려하는 효과를 가지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다. 회원국은 비정부 기구가 이 협정의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의 이행을 위하여 동 기구의 서비스에 의존한다는 것을 보장한다.

- 지침 개발에 대하여는 제4조 동등성 이행을 위한 지침 개발과 같은 선례가 있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지침은 SPS협정을 변경시키지 않아야 할 것임.

- 지침의 방향은 민간표준을 국내에서 활성화 여부를 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지침의 내용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을 개발할 수 있을 것임.

·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민간표준 대신 국내 민간표준을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침은 민간표준은 SPS협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국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제공한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할 것임.

·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민간표준의 적용을 활성화하려는 경우에는 국제 민간표준은 SPS협정의 준수를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음.

· 현재와 같이 민간표준이 미미한 경우는 민간표준은 SPS협정에 가능한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⑨ Code of Good Practice 개발

- Code of Good Practice는 TBT협정에 있으나, SPS협정에는 이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어 SPS협정상에서 이를 개발할 의무는 없음.

· 다만 제13조의 지침에 대한 우리나라 입장을 고려하여 대응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른 방법은 전반적인 방안은 제13조의 지침에서 결정하고 구체적인 것은 각 자매기구로 넘겨서 협의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SPS위원회 또는 자매기구에서 개발하는 Code of Practice가 실질적으로 민간표준을 제정하는 여러 기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SPS위원회와 자매기구는 국가간 협의체로서 민간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어려우며,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면 이는 자유경제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구체적인 Code of Good Practice의 개발보다는 제13조의 지침에서 국가의 의무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만, 국가의 시장개입이 없거나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치를 논의과정 중 예시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2.3.2 SPS위원회 전체를 위한 활동

- 다음의 사안은 SPS 사무국에서 제안하였거나 G/SPS/55로 합의된 향후 작업에 대한 내용으로 전체 SPS위원회 차원의 작업에 대한 사안으로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별도의 의견 없이 작업의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G/SPS/55로 향후 작업으로 합의한 내용
 - ② 타 국제기구에게 민간표준 검토사항 통보
 - ③ 타 WTO 위원회 논의사항 제공
 - ④ 민간표준과 관련된 기구와 의견교환 권고
 - ⑤ 국제기구와의 협력 가능성 모색
- 사무국에서 제안한 작업
 - ② 타 국제기구와의 협력,
 - ③ TBT 위원회와 공동작업반 구성;
 - 공동 작업반의 작업내용은 고려가 바람직함.
 - 작업 내용은 민간 표준으로 제한하되, TBT협정의 내용과 유사한 정도(회원국은 자국 영토내의 지방정부의 표준 또는 민간표준에 대한 SPS협정 이행(또는 TBT협정의 모범관행규약)을 수용하고 준수할 것을 보장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위한 내용으로 제한이 바람직함.
 - ④ 민간표준과 관련된 기구와 정기회의
 - ⑤ 국제기구간 민간표준 관련 진전사항 교류
 - ⑥ 민간표준관련 투명성 그리고/또는 모니터링 체계 개발
 - ⑩ 민간표준 기구와 정기회의
 - ⑪ 회원국이 민간표준 기구와 의견 교환하는 지침 마련

참고 자료

참고자료

1. WTO, Specific Trade Concerns (G/SPS/GEN/204/Rev.11/Add.2), (2011)
2. WTO, WTO seminar Eurep/GAP (2007)
3. WTO, Private Standards and the SPS Agreement (G/SPS/GEN/746) (2007)
4. WTO, Questionnaire on SPS-related Private Standards (G/SPS/W/232) (2008)
5. WTO, Effects of SPS-related Private Standards Descriptive Report (G/SPS/GEN/932) (2009)
6. EC, Private Food Standards and their Impacts on Developing Countries, (2006) http://trade.ec.europa.eu/doclib/docs/2006/november/tradoc_127969.pdf 2011.12.20. 접속
7. 농림수산물부, 농림수산물 주요통계(2011)
8. ISO, Standardization and related activities - General vocabulary (ISO/IEC Guide 2) (2004)
9. 한국표준협회, 표준화 및 관련 활동-일반 어휘(KS A ISO IEC Guide 2) (2002)
10. CODEX, Consideration of the impact of private standards(CX/CAC/10/33/13) (2010)
11. FAO, The Impacts of Private Food Safety Standards on the Food Chain and on Public Standard-Setting Processes(2009)
12. FAO, Private Standards in the United States and European Union Markets for Fruit and Vegetables - Implications for developing countries (2007)
13. OECD, Interaction of public and private standards in the food chain (AGR/CA/APM(2006)21/FINAL) (2006)
14. CODEX, The Impacts of Private Food Safety Standards on Food Chain and on Public Standard-Setting Processes (Alinorm 09/32/9D-Part II) (2009)
15. OIE, Implication of Private Standards in International Trade of Animals and Animal Products (2008) http://www.oie.int/fileadmin/Home/eng/International_Standard_Setting/docs/pdf/A_private_20standards.pdf 2011.12.20. 접속
16. WTO, Overview of SPS Needs and Assistance in Eight Least Developed Countries (G/SPS/GEN/900) (2009)
17. ISO, International Standards and "Private Standards" (2010)
18. WTO, Executive Summary of a Study on Agri-Food Safety and SPS compliance in Guinea Conakry, Mozambique, and Tanzania (G/SPS/GEN/567) (2005)

19. OECD, Final report on private standards and the shaping of the agro-food system (AGR/CA/APM(2006)9/FINAL)
20. ICFAW, ICFAW Position on Private Standards (2011) <http://www.icfaw.org/Documents/icfawPRIVATE%20STANDARDS.pdf> 2011.12.1 접속

참고 사이트

1. 축산물품질평가원, <http://www.ekape.or.kr/>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http://www.naqs.go.kr/>
3. 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 <http://www.nfis.go.kr/>
4.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5. 기술표준원, <http://www.kats.go.kr/>
6. CEN, <http://www.cen.eu/>
7. NIST, <http://www.nist.gov/>
8.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
9. Oxford Dictionaries, <http://oxforddictionaries.com/>
10. WTO, <http://www.wto.org/>
11. OECD, <http://www.oecd.org/>
12. FAO, <http://www.fao.org/>
13. CODEX, <http://www.codexalimentarius.net/>
14. OIE, <http://www.oie.int/>
15. EurepGAP, <http://www.globalgap.org/> (<http://www.eurepgap.org/>)
16. ICFAW, <http://www.icfaw.org/>

첨부 1.

농림축산물의 수출입

첨부 1. 농림축산물의 수출입

표 1 농림축수산물의 수출입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수출	수입	수출/수입												
농림축수산물	3,394.80	16,100.90	21.1%	3,759.30	19,242.30	19.5%	4,496.50	23,198.60	19.4%	4,809.30	21,240.90	22.6%	5,880.00	25,787.20	22.8%
농산물	2,008.20	8,117.20	24.7%	2,222.50	10,089.00	22.0%	2,714.70	13,904.50	19.5%	2,990.80	11,753.60	25.4%	3,721.60	13,987.80	26.6%
곡류	11.5	2116.1	0.5%	12.9	2,927.80	0.4%	18.4	4,477.30	0.4%	27.5	3,005.80	0.9%	29.8	3,455.00	0.9%
서류	0.3	78.1	0.4%	0.2	96.4	0.2%	0.5	261	0.2%	0.7	161.4	0.4%	0.8	127.1	0.6%
두류	0.9	360.6	0.2%	0.5	468.2	0.1%	0.7	855	0.1%	1.1	644.9	0.2%	2	651.7	0.3%
전분	19.5	56.4	34.6%	21.5	66.5	32.3%	12.9	70.9	18.2%	19.8	62.9	31.5%	38.8	68.6	56.6%
채유종실	0.8	163.3	0.5%	0.1	163.6	0.1%	0.1	235	0.0%	0.5	227.2	0.2%	1.7	247.8	0.7%
과실류	98.4	712.7	13.8%	144.9	851.7	17.0%	154.9	825.5	18.8%	172.6	717	24.1%	195.4	945.1	20.7%
기타과실류	1.8	61.2	2.9%	1.3	40	3.3%	0.8	48.2	1.7%	0.5	88.9	0.6%	0.8	110.6	0.7%
채소류	203.9	499.7	40.8%	196.4	576.9	34.0%	233.9	581.8	40.2%	250.9	490.6	51.1%	276.8	719.5	38.5%
화훼류	40.4	35.8	112.8%	58.1	41	141.7%	76.2	42.8	178.0%	77.2	38.1	202.6%	103.1	44.7	230.6%
버섯류	4.2	13.3	31.6%	8.6	15.8	54.4%	23.2	11.4	203.5%	33	7.9	417.7%	38.9	13.8	281.9%
기타산식물	1.3	18.5	7.0%	1	22.6	4.4%	1.8	18.4	9.8%	1.3	9.6	13.5%	1.5	7.8	19.2%
식물성유지	5.7	493.6	1.2%	10.4	647.2	1.6%	27.2	945.9	2.9%	14.3	715.5	2.0%	32.5	864.4	3.8%
유지가공품	13	43.3	30.0%	13.4	57.1	23.5%	14.2	88.2	16.1%	12.1	87.4	13.8%	21.8	111.2	19.6%
농산물납류	0	2.2	0.0%	0	2.6	0.0%	0	2.7	0.0%	0	3	0.0%	0.1	3.9	2.6%
식물성액즙	20	96.6	20.7%	22.3	107.1	20.8%	26.3	114.4	23.0%	25.4	117.6	21.6%	30.9	131.2	23.6%
박류	0.6	632.1	0.1%	0.6	895.3	0.1%	22.3	1,603.20	1.4%	40.2	1,243.10	3.2%	27.4	1,307.00	2.1%
사료	36	335.1	10.7%	33.3	448.3	7.4%	42.8	497.2	8.6%	54.9	397.8	13.8%	64	498.4	12.8%
기타식물성물질	5	74.8	6.7%	5.9	77.8	7.6%	4.7	87.5	5.4%	4.3	73.1	5.9%	5.6	85.2	6.6%
기타농산부산물	3.7	12.3	30.1%	1.5	7.4	20.3%	1	6.5	15.4%	0.8	5.1	15.7%	0.6	5.7	10.5%
빵류제조용	35.8	19.6	182.7%	32.6	26.2	124.4%	38.9	40.1	97.0%	38.4	28.6	134.3%	40.7	33.9	120.1%
효모류	4.5	32.2	14.0%	3.1	37.1	8.4%	3.9	42.6	9.2%	3.6	41	8.8%	4.6	44.1	10.4%
소오스류	95	102.6	92.6%	107.2	123.3	86.9%	121.7	140.2	86.8%	109.5	135.2	81.0%	129.7	153.1	84.7%
향신료	0.6	1.6	37.5%	0.6	2	30.0%	0.4	2.7	14.8%	0.4	2.9	13.8%	1	3.7	27.0%
지방성물질	0	2	0.0%	1.2	2.4	50.0%	1.3	4.2	31.0%	0.8	1.6	50.0%	1.4	0.5	280.0%
기타식물성재료	0.1	13	0.8%	0	0.2	0.0%	0	0.21	0.0%	0	0.21	0.0%	0	0.2	0.0%
커피류	125.2	190.4	65.8%	160.8	234.1	68.7%	198	336.3	58.9%	198.5	312.3	63.6%	221	418.1	52.9%
코코아류	29.8	165.2	18.0%	30.7	209.8	14.6%	27.2	190.8	14.3%	31.2	193.3	16.1%	40	258.4	15.5%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수출	수입	수출/수입	수출	수입	수출/수입	수출	수입	수출/수입	수출	수입	수출/수입	수출	수입	수출/수입
차류	4.4	6.5	67.7%	2.5	4.6	54.3%	1.9	3.1	61.3%	3.3	3.3	100.0%	4.4	4.2	104.8%
연초류	350.3	184.9	189.5%	413.7	222.2	186.2%	463.9	313.5	148.0%	478.1	346.6	137.9%	542.1	381	142.3%
인삼류	88.6	5.3	1671.7%	92.1	4.6	2002.2%	97.2	5	1944.0%	108.9	3.1	3512.9%	124.2	4	3105.0%
한약재	4.6	55.9	8.2%	0.9	18.2	4.9%	0	19.1	0.0%	0.3	15.8	1.9%	0.3	21.4	1.4%
주류	192.6	480.9	40.0%	191.6	616.6	31.1%	236.1	670.3	35.2%	242.1	509.9	47.5%	313.3	600.1	52.2%
당류	154.4	683.2	22.6%	155.3	578.2	26.9%	152.8	730.3	20.9%	181.3	824.2	22.0%	311	1,103.20	28.2%
음료	43.3	48.4	89.5%	56.2	95.7	58.7%	64.4	98.4	65.4%	73.9	92.2	80.2%	102.6	112.7	91.0%
과자류	205.8	167	123.2%	225.5	220.7	102.2%	248	235.6	105.3%	249.6	198.9	125.5%	290.5	246	118.1%
면류	166	60.2	275.7%	179.4	76.1	235.7%	200.3	92	217.7%	207.3	86.1	240.8%	240.1	99.7	240.8%
기타조제농산품	29.6	92.4	32.0%	36.8	102.5	35.9%	196.5	207.2	94.8%	313	528.3	59.2%	467.7	645	72.5%
축산물	172.2	2,748.50	6.3%	181	3,235.30	5.6%	215.1	3,352.20	6.4%	139.6	2,485.10	5.6%	146.1	3123	4.7%
포유가축류	0.4	38.4	1.0%	0.6	35.1	1.7%	0.9	25.7	3.5%	1.9	20.1	9.5%	0.5	29.4	1.7%
가금류	0.1	7.2	1.4%	0.2	6.8	2.9%	0.1	8.3	1.2%	0	8.4	0.0%	0	9.9	0.0%
기타포유류	0.2	4.2	4.8%	0.2	4.2	4.8%	0.3	5.3	5.7%	0.3	5.3	5.7%	0.4	5.8	6.9%
기타조류	0	0		0	0.03	0.0%	0	0.2	0.0%	0	0.03	0.0%	0	0.09	0.0%
파충류	0	1.8	0.0%	0	2.3	0.0%	0	2.1	0.0%	0	1.8	0.0%	0	1.9	0.0%
양서류	0	0		0	0.06	0.0%	0	0.05	0.0%	0	0.06	0.0%	0	0.07	0.0%
곤충류		0.6	0.0%		1.2	0.0%		1.4	0.0%		1	0.0%		0.7	0.0%
환형동물	0	0.1	0.0%	0	0.1	0.0%	0	0.13	0.0%	0	0.06	0.0%	0	0.09	0.0%
기타산동물		0.1	0.0%		0.6	0.0%		0.1	0.0%		0.04	0.0%		0.03	0.0%
포유가축육류	24.9	1,667.50	1.5%	25.8	1,953.60	1.3%	18.5	1,942.00	1.0%	19.6	1,588.50	1.2%	8.4	1,921.50	0.4%
가금육류	8.5	124	6.9%	9	132.4	6.8%	12.9	164.4	7.8%	18.4	142.4	12.9%	31.8	219.9	14.5%
양서류육류		0.1	0.0%		0.06	0.0%		0.05	0.0%		0			0	
기타육류	9.3	102.2	9.1%	8.7	77.1	11.3%	12.9	115.3	11.2%	9.5	72.1	13.2%	6.3	85.3	7.4%
동물성유지	2.7	58.3	4.6%	2.7	0		4.1	92.5	4.4%	1.7	70.7	2.4%	4	71.7	5.6%
동물성납	0.1	1.2	8.3%	0.1	1.4	7.1%	0.1	1.39	7.2%	0.1	1.16	8.6%	0	1.4	0.0%
꿀류	0	1.6	0.0%	0	1	0.0%	0	1.1	0.0%	0	1	0.0%	0	0.7	0.0%
한약재	2.3	32.3	7.1%	1.8	42.6	4.2%	1.9	29.1	6.5%	1.8	29.1	6.2%	1.8	33.3	5.4%
기타축산물부산물	75.2	268.2	28.0%	81.6	301.3	27.1%	92.2	350.9	26.3%	5	67.6	7.4%	8.8	101.2	8.7%
낙농품	31.2	330.2	9.4%	33.9	438.4	7.7%	49.1	441	11.1%	54.2	356.7	15.2%	58	501.2	11.6%
난류	0	5.9	0.0%	0.1	6.7	1.5%	0.2	5.6	3.6%	0.6	4.1	14.6%	0.7	6	11.7%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수출	수입	수출/수입												
단백질류	16.1	104.7	15.4%	16.1	124.6	12.9%	21	163.7	12.8%	25.9	113.7	22.8%	24.1	131.4	18.3%
임산물	124	2,461.60	5.0%	128.3	2,858.20	4.5%	118.5	2,863.60	4.1%	167.7	4,107.80	4.1%	214.1	5,219.10	4.1%
원목	0.2	755.7	0.0%	0.2	910.3	0.0%	0.6	838.8	0.1%	0.1	623.9	0.0%	0.2	725.7	0.0%
제재목	8.1	250.5	3.2%	8.2	305.2	2.7%	7.3	288.4	2.5%	5.8	249.8	2.3%	6.1	330	1.8%
합판	6.8	500.3	1.4%	4.9	595	0.8%	9.1	544.2	1.7%	6	471.3	1.3%	5	476.4	1.0%
단판	1.2	105.3	1.1%	1.4	139.8	1.0%	1.9	154.8	1.2%	2.7	110.9	2.4%	2.1	115.4	1.8%
섬유판	14.9	129.3	11.5%	15.7	128.2	12.2%	13.3	153.8	8.6%	10.6	61.7	17.2%	10.2	75.6	13.5%
파티클보드	0.8	137	0.6%	1.2	120.7	1.0%	0.7	140.2	0.5%	0.9	98.9	0.9%	2.4	132.8	1.8%
침·삭편상의목재	0	93.3	0.0%	0	82.9	0.0%	0	130.9	0.0%	0	65.6	0.0%	0	97.3	0.0%
목탄	0.1	49.7	0.2%	0.2	57.1	0.4%	0.2	62	0.3%	0.2	66.7	0.3%	0.3	70.3	0.4%
기타목재	20.1	204.5	9.8%	25.4	254	10.0%	26.4	262.7	10.0%	74.6	1,473.20	5.1%	85	2,132.20	4.0%
수목류	0.5	1	50.0%	0.5	1	50.0%	0.1	1.3	7.7%	0.2	3.3	6.1%	0.3	5.4	5.6%
종자류	0.1	2.9	3.4%	0.1	3.3	3.0%	0.1	3	3.3%	0.1	2.5	4.0%	0.1	2.3	4.3%
산채류	0.4	22.3	1.8%	0.1	31.1	0.3%	0.1	35.1	0.3%	0.2	36.9	0.5%	0.2	60.5	0.3%
버섯류	10.6	14	75.7%	16.9	15.2	111.2%	8.3	17.8	46.6%	9.7	20.3	47.8%	11.1	33.9	32.7%
견과류	33.7	112.2	30.0%	28.8	111.9	25.7%	27.1	118	23.0%	30.5	117.4	26.0%	31.2	162.4	19.2%
수지류	0.3	32.1	0.9%	0.4	25.6	1.6%	0.3	28.8	1.0%	0.2	31.1	0.6%	0.3	54.7	0.5%
수피류	0.6	2.4	25.0%	0.4	3	13.3%	0.4	3.3	12.1%	0.3	2.7	11.1%	0.3	3	10.0%
엽류	0	0.2	0.0%	0	0.1	0.0%	0	0.08	0.0%	0	0.04	0.0%	0	0.04	0.0%
죽재류	0.1	11.2	0.9%	0.1	17.2	0.6%	0.1	16.7	0.6%	0.1	12.8	0.8%	0.1	10	1.0%
등나무류	0	4.3	0.0%	0	5.5	0.0%	0	6.3	0.0%	0	4.4	0.0%	0	5.9	0.0%
기타편조물	0.1	7.6	1.3%	0.8	5.3	15.1%	0.7	6.8	10.3%	0.6	5.9	10.2%	0.5	6	8.3%
기타임산물	25.4	25.7	98.8%	23	45.6	50.4%	21.7	50.7	42.8%	16.5	45.5	36.3%	48.9	79.3	61.7%
수산물	1,090.40	2,773.60	39.3%	1,227.50	3,059.80	40.1%	1,448.30	3,078.30	47.0%	1,511.20	2,894.40	52.2%	1,798.20	3,457.30	52.0%
어류	589.1	1,557.60	37.8%	717.6	1,752.00	41.0%	864.7	1,735.80	49.8%	929.3	1,567.40	59.3%	1,096.90	1,891.00	58.0%
갑각류	65.7	511.1	12.9%	59.1	584.3	10.1%	76.3	520.3	14.7%	71	478.2	14.8%	77.2	503.6	15.3%
연체동물	202.4	448.9	45.1%	254.1	481.6	52.8%	280.2	480.2	58.4%	284.6	446.9	63.7%	332.1	572.2	58.0%
수생동물	9.2	21.9	42.0%	9.8	16.5	59.4%	9.9	32.2	30.7%	9.6	30.1	31.9%	16.2	34.1	47.5%
환형동물	0.1	2.2	4.5%	0.1	1.8	5.6%	0.1	1.9	5.3%	0	1.8	0.0%	0	2.5	0.0%
기타수산동물		0.1	0.0%		0.1	0.0%		0.01	0.0%		0.01	0.0%		0.09	0.0%
해조류	125.1	21.6	579.2%	113.7	16.5	689.1%	145.4	20.6	705.8%	139.4	15.2	917.1%	171.9	18.1	949.7%
수산부산물	51.8	123	42.1%	20	104.9	19.1%	24.9	75.7	32.9%	31.6	78.6	40.2%	44.9	87.3	51.4%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수출	수입	수출/수입	수출	수입	수출/수입	수출	수입	수출/수입	수출	수입	수출/수입	수출	수입	수출/수입
한천	18.5	1.7	1088.2%	10.8	1.4	771.4%	10.3	1.1	936.4%	8	0.6	1333.3%	9.7	1.2	808.3%
기타수산부산물	2.8	0.4	700.0%	2.7	0.7	385.7%	3.1	0.9	344.4%	2.5	0.9	277.8%	2.7	0.6	450.0%
비식용수산물	24.1	79.6	30.3%	38	82.9	45.8%	31.9	83.8	38.1%	26.2	92.4	28.4%	36.9	117.2	31.5%
기타수산물	1.5	5.5	27.3%	1.7	4.7	36.2%	1.7	125.6	1.4%	9.1	182.2	5.0%	9.7	229.6	4.2%